民間防犯力量強化를 위한 私警備制度 發展方案

지 도 : 이 백 철 (경기대교수)
연 구 : 한 병 락 (총 경)
이 강 덕 (경 정)
주 희 종 (범죄사회학박사)
박 병 식 (법 학 박 사)
임 형 진 (경기대강사)

目　　次

Ⅰ. 序　論 …… 129
1. 問題의 所在 및 硏究의 意義 …… 129
2. 硏究의 課題 및 方法 …… 130
가. 重點硏究課題 …… 130
나. 硏究의 方法 …… 131

Ⅱ. 私警備業의 現況 및 立法 …… 132
1. 韓國의 現況 및 立法 …… 132
가. 私警備業의 現況 및 問題點 …… 132
나. 私警備業 立法 槪觀 …… 137
2. 美國의 現況 및 立法 …… 143
가. 私警備의 現況 …… 143
나. 私警備業法의 立法 槪觀 …… 151
3. 日本의 現況 및 立法 …… 152
가. 私警備業 發展史와 現況 …… 152
나.『私警備法』의 立法 槪觀 …… 157
다. 警備業界의 動向 …… 159

Ⅲ. 二元的 運用體制(請願警察法, 用役警備業法)의 現況과 問題點 …… 162
1. 二元的 運用體制의 現況 …… 162
2. 二元的 運用體制의 問題点 …… 164
가. 指揮體系 …… 164
나. 配置와 費用 …… 166
다. 身分 …… 168
라. 武器携帶 …… 168
3. 二元的 運用體制의 改善方案 …… 170
가. 統合·單一化의 必要性 …… 170

나. 統合·單一化 方案 및 方法論 ····· 172

Ⅳ. 警備員의 敎育·訓練 ····· 176
1. 敎育·訓練의 強化: 警備産業의 專門化를 위한 捷徑 ····· 176
2. 韓國의 敎育·訓練 現況 ····· 178
3. 美國의 敎育·訓練 現況 ····· 183
가. 基本的인 敎育·訓鍊 프로그램 ····· 183
나. 機械 警備員에 대한 敎育訓練 프로그램 ····· 184
다. 武裝警備員에 대한 敎育訓鍊 프로그램 ····· 186
라. 一般的 特徵 및 顧慮事項 ····· 189
4. 日本의 敎育·訓練 現況 ····· 190
가. 警備員敎育에 대해서 ····· 190
나. 警備員指導敎育責任者 制度 ····· 192
다. 警備員檢定 制度 ····· 193
라. 問題點 ····· 194
5. 小結論 및 提言 ····· 196

Ⅴ. 機械警備業의 現況과 立法 ····· 199
1. 韓國의 現況 및 立法上의 問題點 ····· 199
가. 機械警備業의 現況 ····· 199
나. 機械警備業에 대한 法規定의 未備 ····· 201
2. 美國의 現況 및 立法 ····· 202
가. 機械警備業의 現況과 展望 ····· 202
나. 機械警備業에 대한 法規定 ····· 206
3. 日本의 現況 및 立法 ····· 212
가. 機械警備業의 現況과 展望 ····· 212
나. 機械警備業에 대한 法規定의 補完 ····· 213
다. 機械警備業者의 義務 ····· 213
4. 提 言 ····· 217

Ⅵ. 誤報對策과 卽應體制構築 ····· 221

1. 美國의 誤報問題點과 對策 ····· 221
가. 誤報問題 ····· 221
나. 警報에 대한 對應과 그 請負 ····· 222
다. 誤警報의 原因 ····· 223
라. 誤警報에의 對處 ····· 224
2. 日本의 誤報對策과 卽應體制의 構築 ····· 225
가. 誤報對策과 卽應體制의 整備 ····· 225
나. 警察廳의 "運用要領" ····· 226
다. 警視廳의 "誤發報 狀況調査" ····· 230
라. 警視廳의 "誤發報 抑止策" ····· 234
3. 提 言 ····· 235

Ⅶ. 認許可 및 行政指導 ····· 236
1. 認許可 및 法的規制의 必要性 ····· 236
2. 韓國의 認許可 및 法的規制 ····· 237
3. 美國의 認許可 및 法的規制 ····· 241
가. 認許可 基準 및 法的規制의 強化 ····· 243
나. 기타 自律的 規制方案 ····· 245
다. 免許의 等級化(Licensure Gradations) ····· 246
4. 日本의 認許可 및 法的 規制 ····· 250
가. 警備業의 要件 ····· 250
나. 認定制 ····· 251
다. 行政指導監督 ····· 253
5. 提 言 ····· 254

Ⅷ. 民間警備의 健全育成과 警察의 役割 ····· 256
1. 民間警備와 警察과의 役割分擔 ····· 256
2. 民間警備 健全育成의 理念 ····· 257
3. 警察組織의 改編과 地域警察의 觀點 ····· 258
4. 共同住宅의 防犯能力 提高 ····· 259
Ⅸ. 結 論 ····· 262

1. 提　　言 …… 262
가. 二元的 運用體制의 改善方案 …… 262
나. 警備員의 敎育과 訓練 …… 263
다. 機械警備業에 대한 法規定의 補完 …… 264
라. 誤報問題와 卽應體制의 構築 …… 265
마. 警備業의 認許可 및 行政指導 …… 265
바. 私警備의 健全育成과 警察의 役割 …… 266
2. 맺는 말 …… 268

參考文獻 …… 270

표 목 차

〈표 2-1〉 한국 민간경비업체 및 경비원의 년도별 증가현황 ····· 133
〈표 2-2〉 한국 민간 경비업체의 경비실시 형태 (94. 6.) ····· 133
〈표 2-3〉 용역경비업 허가업체 지역별 현황 (94. 6. 1) ····· 134
〈표 2-4〉 용역경비업 허가현황 (94. 6. 1) ····· 135
〈표 2-5〉 경비업체의 규모별 민간경비원 보유현황 (94. 6) ····· 136
〈표 2-6〉 경비원의 시설별 배치현황 (94. 6. 1) ····· 136
〈표 2-7〉 범인 검거 실적 (94.1.1 - 9.30) ····· 137
〈표 2-8〉 한국사경비원의 경비대상 시설물별 분포현황 (93. 12. 31 현재) ····· 137
〈표 2-9〉 한국 청원경찰의 현황 (90. 12. 31) ····· 138
〈표 2-10〉 사경비 서비스 근무자 현황 ····· 144
〈표 2-11〉 사경비 서비스 총지출 비용 현황 ····· 145
〈표 2-12〉 Hallcrest 보고서가 추정 및 예상하는 사경비의 총 매출액/지출액: 1980-2000 ··· 146
〈표 2-13〉 Hallcrest 보고서가 추정 및 예상하는 사경비회사의 수: 1980-2000 ····· 147
〈표 2-14〉 Hallcrest 보고서가 추정 및 예상하는 사경비원의 수: 1980-2000 ··· 147
〈표 2-15〉 경비업자수 및 경비원수의 추이 ····· 153
〈표 2-16〉 경비원의 남여별, 고용형태별 상황 ····· 154
〈표 2-17〉 경비원수별 상황 ····· 154
〈표 2-18〉 매상고별 상황 ····· 155
〈표 2-19〉 경비업종별 상황 ····· 155
〈표 2-20〉 경비원의 인원구성 ····· 157
〈표 2-21〉 경비원의 근속년수 ····· 157

〈표 3-1〉 한국의 경찰·청원경찰·용역경비의 비교 ····· 163

〈표 4-1〉 용역경비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와 실시 주체 ····· 179
〈표 4-2〉 용역 경비원 신임교육의 교육과목과 교육시간 ····· 181

〈표 4-3〉 청원경찰 기본교육과목 및 시간표 ····· 182
〈표 4-4〉 3 단계 경보기술자 과정과 목표 ····· 185

〈표 5-1〉 기계경비 대상시설수 ····· 200
〈표 5-2〉 대처요원과 순찰차량 ····· 200
〈표 5-3〉 미국의 기계경비분야의 년 매출액:Hallcrest의 추정치(1980-2000) ··· 204
〈표 5-4〉 기계경비업자 현황 ····· 213

〈표 6-1〉 발보상황 (기계경비 대상시설 66,630 개소) ····· 231
〈표 6-2〉 무인센서에 의한 오경보상황 ····· 231
〈표 6-3〉 경비회사측에 기인하는 오보원인(무인센서의 경우) ····· 232
〈표 6-4〉 유저측에 기인하는 오보원인(무인센서의 경우) ····· 232
〈표 6-5〉 유인센서에 의한 오발보상황 ····· 233
〈표 6-6〉 유인센서에 있어서의 오보원인 ····· 233

Ⅰ. 序　　論

1. 問題의 所在 및 硏究의 意義

오늘날 한국 사회는 급속한 근대화 및 산업화에 따른 인구 및 주요시설의 대도시 집중, 사회조직과 기능의 급속한 분화, 전통적인 윤리규범의 와해, 배금주의 사상의 팽배, 국제화 등 사회의 제반변화와 더불어 각종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강력범죄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험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범죄의 양적 증대와 그 유형의 다양화, 수법의 흉포화, 조직화 등으로 인한 治安需要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민생치안에 대한 경찰의 對處能力은 人力 및 裝備의 부족과 業務量의 과중 등으로 인하여 그 수요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경찰의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를 위한 효율적인 방범활동이 점차 어려워지게 되었고 경찰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불신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력의 한계와 그에 따른 민생치안의 부족현상은 우리 사회만의 특수현상은 아니며,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도 이미 오래전부터 당면해온 문제이다. 단지 주목할 사실은 상기의 국가들은 사회질서의 유지와 범죄예방에 많은 인력 및 재원을 투입해 왔으며 私警備(Private Security)의 건전육성과 효율적 활용을 통해 다양한 경비수요를 충족시키면서, 경찰과 사경비와의 相互協力 및 相補關係의 구축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다는 점이다. 한 예로서 미국의 경우 사경비업체는 100년 이상의 성장과정을 거치면서 민생치안의 일차적인 담당기관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구축하여왔다. 1980년에 사경비업체에 대한 년지출액은 이미 경찰조직과 같은 공적인 법집행기관의 총지출액보다 57%나 더 많았고, 1990년에는 총지출액은 73%가 더 많았으며, 인력고용규모에 있어서도 2배 반이나 더 많은 것으로 집계 되었다(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1991).

물론 우리나라도 請願警察法과 用役警備業法을 비롯한 사경비 관련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機械警備業을 중심으로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는 등 나름대로의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럼에도 韓國 私警備 業界의 전체적인 현실은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많은 문제점을 露呈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경비업계의 진정한 문제점은 단지 경비업체수나 경비원수와 같은 數量面이나

장비수준등 하드웨어적 측면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한 외형적인 열세부분은 사경비의 日淺한 역사와 변천과정, 인구규모 및 사회환경 등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결과이며 또한 앞으로 시장 수요와 방범의식의 변화, 장비개발등에 따라 급속히 발전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문제점으로 인식되는 것은 본 연구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경비제도의 건전한 육성과 효율적 운영과 관련된 제반 법적.제도적 장치와 같은 소프트웨어적 측면이다. 운용주체로서의 사경비업계의 초보적인 질적 수준, 불완전한 법제도, 그리고 행정감독기관의 무관심 및 소극적 대응 등이 사경비의 육성과 활용을 통하여 다원화된 사회 각 부문들의 다양한 경비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하다는 점이다.

오늘날 민생치안에 있어서 사경비업체의 역할의 중요성이 각국에서 나날이 증가함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는 현행 한국의 사경비업체에 대한 현황파악 및 이용실태,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미국, 일본 등 외국 사경비업계의 현황, 운용체계, 육성과정 등을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의 사경비 육성을 위한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민간방범역량을 증대하며, 나아가서 경찰과 사경비업체간의 긴밀한 상호협력체제속에서 사회전체적인 방범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사경비업계의 현황을 파악하고 사경비의 건전 육성과 경찰과의 상호협조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시도는 民生治安의 確保라는 국가적 과제와 私警備業界의 發展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특히 UR 개방과 더불어 1997년에는 사경비 부문의 국내시장 개방이 예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외국 선진업체들의 국내진출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금번의 연구는 비록 사경비라는 특정분야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21세기를 맞이하는 세계화시대의 國際競爭力提高라는 緊急課題에 一助한다는 점에서도 그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2. 研究의 課題 및 方法

가. 重點研究課題

본 연구는 국내외 사경비업체와, 청원경찰, 경찰, 또한 사경비 이용단체 등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사경비의 실태파악, 제도적·법률적 사항, 관리 및 운용상의 문제 등을 집중검토 하였다. 다음의 4가지 사항을 주요 연구목표로 삼았다 ① 국내 사경비업체

장비수준등 하드웨어적 측면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한 외형적인 열세부분은 사경비의 日淺한 역사와 변천과정, 인구규모 및 사회환경 등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결과이며 또한 앞으로 시장 수요와 방범의식의 변화, 장비개발등에 따라 급속히 발전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문제점으로 인식되는 것은 본 연구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경비제도의 건전한 육성과 효율적 운영과 관련된 제반 법적.제도적 장치와 같은 소프트웨어적 측면이다. 운용주체로서의 사경비업계의 초보적인 질적 수준, 불완전한 법제도, 그리고 행정감독기관의 무관심 및 소극적 대응 등이 사경비의 육성과 활용을 통하여 다원화된 사회 각 부문들의 다양한 경비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하다는 점이다.

오늘날 민생치안에 있어서 사경비업체의 역할의 중요성이 각국에서 나날이 증가함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는 현행 한국의 사경비업체에 대한 현황파악 및 이용실태,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미국, 일본 등 외국 사경비업계의 현황, 운용체계, 육성과정 등을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의 사경비 육성을 위한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민간방범역량을 증대하며, 나아가서 경찰과 사경비업체간의 긴밀한 상호협력체제속에서 사회전체적인 방범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사경비업계의 현황을 파악하고 사경비의 건전 육성과 경찰과의 상호협조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시도는 民生治安의 確保라는 국가적 과제와 私警備業界의 發展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특히 UR 개방과 더불어 1997년에는 사경비 부문의 국내시장 개방이 예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외국 선진업체들의 국내진출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금번의 연구는 비록 사경비라는 특정분야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21세기를 맞이하는 세계화시대의 國際競爭力提高라는 緊急課題에 一助한다는 점에서도 그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2. 研究의 課題 및 方法

가. 重點研究課題

본 연구는 국내외 사경비업체와, 청원경찰, 경찰, 또한 사경비 이용단체 등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사경비의 실태파악, 제도적·법률적 사항, 관리 및 운용상의 문제 등을 집중검토 하였다. 다음의 4가지 사항을 주요 연구목표로 삼았다 ① 국내 사경비업체

(청원경찰 포함)의 현황파악 및 문제점 분석 ② 외국 사경비업체의 실태파악 및 육성과정, 법적·제도적 운용상의 장단점 비교분석 ③ 방범능력 강화를 위한 사경비부문의 법적·제도적 활성화방안 제시 ④ 경찰과 사경비간의 효율적인 상호협력체제 증진방안 모색.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다음에 열거한 사항을 중점 연구과제로 삼아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1) 韓美日의 私警備業 現況 및 立法

(2) 請願警察法과 用役警備業法에 의한 二元的 運用體制와 改善方向

(3) 機械警備業에 대한 法規定의 補強

(4) 警備員의 敎育·訓練

(5) 誤報對策과 卽應體制構築

(6) 警備業 認許可 및 行政指導 監督의 強化

(7) 民間警備 健全育成과 警察의 役割

한 가지 주목할 사항은, 사경비업계의 건전육성이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상기 연구대상 이외에도 기타 많은 중요한 연구과제가 있으나, 본 연구에 주어진 시간적 제약을 감안할 때 기본적으로 "방범능력의 제고"라는 기본명제를 설정하여 그와 관련된 범위내에서 연구대상을 한정시키기로 하였다.

나. 研究의 方法

상기의 연구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법과 사경비 관련기관의 방문 및 면담, 설문조사 등을 통한 실증적 접근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우선 국내에서 발간되는 사경비 관련 문헌을 모두 섭렵함과 동시에, 사경비 분야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미국과, 일본의 제도 및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우리의 실정과 비교검토하기 위하여 외국의 관련문헌을 다수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이론과 현실과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 용역경비업협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사경비용역업체(인경비업체와 기계경비업체 및 청경업체)를 직접 방문하였고, 행정지도 감독기관 및 일선 파출소를 초치 및 방문하여 문헌적 검토를 통해서 파악할 수 없는 부분들을 보충하고 실제의 운용실태를 파악하는 작업도 병행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고찰 및 현장답사에서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사경비업체 및 사경비원, 청원경찰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참고자료로 이용하였다.

상기의 과정을 통해서 한국 사경비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외국의 사례등을 상

호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에서 나타난 법률적, 제도적, 경비조직의 운영상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각 부문별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개선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외국의 사경비 체제 및 운용실태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점은, 단지 선진제도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의 현재와 가까운 장래의 실정에 얼마만큼 적합한 제도인가를 검토하는, 그 '적용가능성'을 검증하는데 있을 것이다.

또한, 어느 특정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라도, 단기간에 실현가능한 것과 중장기적인 계획하에 실현가능한 것을 구분하는 '시의 적절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각에 입각하여 미국과 일본의 제도에 대한 한국에서의 '현실적용성'에 크게 역점을 두었다.

Ⅱ. 私警備業의 現況 및 立法

1. 韓國의 現況 및 立法

가. 私警備業의 現況 및 問題點

한국에서의 사경비는 1960년대 초 미군부대의 용역경비를 실시함으로써 시작되었다.[1] 이후 차츰 민간경비분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소수의 사경비회사가 설립되었고 1973년 청원경찰법과 1976년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인 성장의 단계에 돌입했다. 그러나 한국의 사경비제도는 70년대의 국가근대화사업에 수반되는 주요시설의 경비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안된 청원경찰제도와 순수 민간경비제도와의 이원적인 운영체계라는 특성을 가지고 출발했다. 이러한 이원적인 한국사경비제도는 초창기 각기 고유의 특성과 영역에서 나름대로 발전을 거듭했으나 시대가 흐르고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오늘날에는 그 전환의 시기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다.[2]

순수 민간경비업의 발전은 경비업체의 단합 및 제반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1978년

1) 1960년대 초 和永企業, 慶元企業의 2개 회사가 미8군부대의 용역경비를 담당했으며 1962년 汎亞實業公社가 한국석유저장 주식회사와 용역경비를 체결함으로써 최초의 민간차원의 사경비업이 시작되었다.

2) 청원경찰제도와 용역경비제도의 이원적 운영체제에 따른 문제점은 Ⅲ. 이원적 운용체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참조바람.

호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에서 나타난 법률적, 제도적, 경비조직의 운영상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각 부문별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개선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외국의 사경비 체제 및 운용실태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점은, 단지 선진제도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의 현재와 가까운 장래의 실정에 얼마만큼 적합한 제도인가를 검토하는, 그 '적용가능성'을 검증하는데 있을 것이다.

또한, 어느 특정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라도, 단기간에 실현가능한 것과 중장기적인 계획하에 실현가능한 것을 구분하는 '시의 적절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각에 입각하여 미국과 일본의 제도에 대한 한국에서의 '현실적용성'에 크게 역점을 두었다.

Ⅱ. 私警備業의 現況 및 立法

1. 韓國의 現況 및 立法

가. 私警備業의 現況 및 問題點

한국에서의 사경비는 1960년대 초 미군부대의 용역경비를 실시함으로써 시작되었다.[1] 이후 차츰 민간경비분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소수의 사경비회사가 설립되었고 1973년 청원경찰법과 1976년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인 성장의 단계에 돌입했다. 그러나 한국의 사경비제도는 70년대의 국가근대화사업에 수반되는 주요시설의 경비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안된 청원경찰제도와 순수 민간경비제도와의 이원적인 운영체계라는 특성을 가지고 출발했다. 이러한 이원적인 한국사경비제도는 초창기 각기 고유의 특성과 영역에서 나름대로 발전을 거듭했으나 시대가 흐르고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오늘날에는 그 전환의 시기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다.[2]

순수 민간경비업의 발전은 경비업체의 단합 및 제반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1978년

1) 1960년대 초 和永企業, 慶元企業의 2개 회사가 미8군부대의 용역경비를 담당했으며 1962년 汎亞實業公社가 한국석유저장 주식회사와 용역경비를 체결함으로써 최초의 민간차원의 사경비업이 시작되었다.

2) 청원경찰제도와 용역경비제도의 이원적 운영체제에 따른 문제점은 Ⅲ. 이원적 운용체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참조바람.

내무부장관의 승인으로 사단법인 한국용역경비협회가 설립되었고, 80년대 초 외국기술과 자본의 도입으로 활기를 띄었으며, 80년대 중반 이후의 몇차례에 걸친 국제행사를 통해 급속한 성장을 거듭해 오늘에 이르렀다. 즉,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던 1976년 첫해에 9개 업체, 5천여명의 경비원에서 1994년 6월 1일 현재 613개 업체, 41,757명의 경비원으로 증가한 것이다 (〈표 2-1 참조〉). 제도시행 18년 동안에 업체수에서는 약 60배의 성장과 경비원수는 약 8배의 성장을 보인 것이다.

〈표 2-1〉 한국 민간경비업체 및 경비원의 년도별 증가현황

년 도	76	77	78	79	80	81	82	83	84
경비원수	5,022	5,484	4,876	5,012	5,632	5,800	6,396	7,812	8,631
경비업체수	9	11	13	15	18	24	30	37	39

년 도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6
경비원수	8,631	12,625	16,078	19.455	21,990	25,559	29,000	31,341	37,607	41.757
경비업체수	71	37	109	150	160	294	320	420	539	613

자료: 한국용역경비협회

이들 업체를 경비실시 형태별로 구분해 보면 〈표 2-2〉에서 보듯이 인력경비가 수적으로는 압도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경비 위주업체의 상당수가 소규모 영세기업임을 감안했을 때 매출액에 있어서는 오히려 거대자본과 기술이 결합된 기계경비회사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3]

〈표 2-2〉 한국 민간 경비업체의 경비실시 형태 (94. 6.)

계	인력경비	무인기계 경비	인력+기계 경비
613	590	10	13

자료 : 경찰청 경비과

3) 현재 한국 사경비업계의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정확한 총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각 업체별로 정확한 도급액이 파악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 용역경비협회에서는 경비원 1인당 약 월 75만원, 기계경비시설물 당 월 10만원의 경비료를 책정해 막연하게 계산하고 있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 민간경비업은 초창기의 단순한 인력경비 위주의 시설경비업무에서 차츰 과학화된 경비기기가 도입되고 보급됨으로써 어느 정도는 인경비와 기계경비가 혼합된 혼합경비형태로 나아가고 있다. 이것은 기계경비를 보다 강조하는 10여개의 대규모업체가 경비업계의 총시장점유율에서 약 60-70%를 차지한다고 보았을 때 그 성장속도와 규모를 알 수 있다.[4]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경비업체는 인경비 위주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업계의 난립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이들 업체의 허가업체별 지역구분을 보면 〈표 2-3〉과 같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한국 민간경비업체는 극심한 수도권 집중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역적, 문화적,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수도권에 70% 가까운 경비업체가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한국 사경비업의 저변확대 및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상품개발의 부족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건전한 사경비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 대책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표 2-4〉는 민간경비업체의 허가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용역경비업법 제4조 1항에 의거해 경비업체는 영업구역이 2개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 구역에 걸칠 때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요하며 그 이외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표 2-3〉 용역경비업 허가업체 지역별 현황(94.6.1)

구 분	계	시 도 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업체수	613	342	57	29	17	47	5	7	43	11	23	9	19	4
경비원	41757	27206	2258	1903	3815	1722	24	597	1309	509	932	275	1011	196

한국 사경비업은 그 긍정적인 출발만큼이나 사회적 기여도가 대단히 크다고 인정된다. 부족한 경찰력과 늘어나는 범죄율, 그리고 시민 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될 때마다 사경비업의 존재의의와 중요성은 커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사경비업의 일천한 역사와 더불어 아직도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 현재 한국 민간경비의 모습이다.

4) 한국사회의 급속한 근대화, 산업화는 그에 따르는 사회적 문제들을 수반했으며 특히 심각한 범죄문제의 발생은 국민들로 하여금 그 예방의 중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하였다. 따라서 국민들의 범죄예방에 대한 인식이 방범기기에 대한 관심과 민간경비업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했으며 최근의 몇몇 기계경비업체에 의한 TV 방송광고는 그러한 기계경비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7년 우루과이라운드에 따른 사경비업계의 시장개방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업체는 상당한 고전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한국의 사경비업계가 처한 문제점들을 질적인 측면에서 면밀히 분석.검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완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현재까지 나타난 한국 민간경비업의 문제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표 2-4〉 용역경비업 허가현황(94.6.1)

구 분	총 계	현 본 사 소 재 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613	342	57	29	17	47	5	7	43	11	23	9	19	4
본 청	478	333	45	27	10	35	0	0	15	2	5	1	5	0
지방청	135	9	12	2	7	12	5	7	28	9	18	8	14	4

자료 : 경찰청 경비과

첫째, 법적·제도적 차원의 문제들이다. 특히 한국사경비업의 가장 큰 현안이라 할 수 있는 청원경찰법과 용역경비업법의 양립에 따른 이원적 운영체계로 인한 문제점들을 들 수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청원경찰의 존재의의와 독자적인 고유영역이 점차 축소됨으로써 그 혼선의 폭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경비업체의 인허가 규정 미흡으로 인한 수준이하 업체의 폭증현상, 감독기관이라 할 수 있는 경찰청 경비과의 지도감독의 한계 그리고 경비원 임금과 경비용역계약기간의 제도화 필요성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둘째, 민간경비업의 발전상이라 할 수 있는 기계경비업에 관한 문제이다. 3D업종의 증가에 따른 인건비상승과 인경비업계의 구인난 및 점차 지능화되는 범죄에 대비한 기계경비업의 활성화가 예상되는데 우리의 경우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 즉, 현행 용역경비업법은 완전히 인경비 위주의 법률이기에 기계경비에 관한 규정이 부실할 뿐 아니라 기계경비에 관한 지원 등이 전무하다. 경비협회를 통한 신기술의 공동개발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적인 지원도 없는 실상이다.

셋째, 경비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문제점이다. 경비원의 교육훈련은 어느 특정회사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경비업계 전반적인 문제이며, 경비업계의 신용.신뢰 획득은 경비원 교육에 걸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야말로 경비원의 질은 방범.방재활동이라는 "安全産業"의 수준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 한국 사경

비원의 교육실태는 70년대식 교재와 내용에서 벗어나지 못해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은 전체적으로 교육훈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더욱이 교육장과 교관요원의 부족문제까지 가중되고 있어 교육의 질을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

넷째, 경찰과의 상호연계체제의 미흡문제이다. 사경비업의 존재이유가 방범력 제고에 있다고 했을 때 업계와 경찰과의 연계체제는 그 핵심통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방범정책은 모두 경찰조직 위주로 되어 있으며 민간경비부문과의 연계가 부족한 상태이다. 이는 상호간의 인식과 노력의 부족에서 파생된 문제로 특히 기계경비에서 발생하는 오보현상은 경비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에서도 모두 격고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방범력제고를 위한 상호연계체제의 형성 및 재조직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외에도 한국사경비업은 용역경비협회의 역할 강화문제, 건축법상의 방범기기설치의무화의 문제, 책임보험의 개발문제, 경비원의 범죄피해에 대한 법적 보장의 문제, 사경비분야 전문교육 및 연구기관의 설립 필요성, 경비업종의 등급화 문제들이 노정되고 있다.

○ 기타 주요 통계자료

〈표 2-5〉 경비업체의 규모별 민간경비원 보유현황(94.6)

경비원 수	0	1 | 10	11 | 20	21 | 50	51 | 100	101 | 200	201 | 500	501 | 1000	1001 | 이상	
계	603	47	87	164	157	86	27	17	10	8

자료: 한국용역경비협회

〈표 2-6〉 경비원의 시설별 배치현황(94.6.1)

구 분	산업시설	빌 딩	주 택	금융기관	외국기관	정유및석유비축시설	백화점상 가	기 타	계
개 소	4,970	1,182	1,237	2,488	75	58	570	3,512	14,092
인 원	14,176	4,337	2,497	5,245	1,996	402	1,036	3,758	33,447

자료 : 경찰청 경비과

〈표 2-7〉 범인 검거 실적(94.1.1 - 9.30)

계		살 인		강 도		절 도		폭 력		강 간		방 화		기 타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23	27					11	13	9	11					3	3

자료: 경찰청 경비과

〈표 2-8〉 한국사경비원의 경비대상 시설물별 분포현황(93.12.31 현재)

구분 / 시설별	계		용역 경비원		청원경찰		비 고
	인원	시설물	인원	시설물	인원	시설물	
계	37607	6611	32376	5895	5231	716	
국 가 기 관	435	50	435	50			
외 국 기 관	1997	21	1997	21			
국영기업체	1396	119	1309	116	87	3	
산 업 시 설	14361	2989	13234	2925	1127	64	
금 융 기 관	3203	881	1916	354	1287	527	
언 론 기 관	318	54	293	50	25	4	
학 교	660	119	658	118	2	1	
공 항	942	9	37	6	905	3	
항 만	198	19	198	19			
빌 딩	5498	1102	5260	1075	238	27	
주 택	1400	268	1383	264	17	4	
백화점 상가	1802	126	1769	120	33	6	
정유및석유	1736	162	722	128	1014	34	
기 타	3661	692	3165	649	496	43	

자료 : 한국용역경비협회

나. 私警備業 立法 槪觀

1) 請願警察法

① 제정 배경

請願警察이란 國家機關 또는 公共團體와 그 管轄下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事業場, 國內駐在 外國機關, 기타 內務部令으로 정하는 중요시설 事業場 또는 장소 등의 長이

나 시설사업장의 經營者가 所要經費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관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기관시설 또는 事業場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이 制度는 1973년 12월 31일(법률 제2666호)에 제정되어진 國家公警備 차원의 경찰제도와 民間警備 차원의 사경비제도의 과도기적 시기에 조직되어진 제도로서, 민간인 신분으로 근무지역내에서 경찰관의 職務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되어진 準警察制度 또는 私警察制度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일제시대에 전쟁준비를 위한 산업시설의 경비문제를 해결하고자 필요경비를 기업이 부담하고 경찰력의 상주파견을 구하는 "請願巡査" 제도에서 기인된 독특한 사경비제도이다.[5]

1960년대 이후 본격적인 국가경제건설에 들어선 우리나라는 산업국가로 진입하기 위하여 정부주도의 강력한 산업화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전국 각지에 국가중요산업시설이 산재하게 되었고, 이 시설물에 대한 경비문제가 뒤따르게 된 것이다. (〈표 2-9 참조〉)

〈표 2-9〉 한국 청원경찰의 현황(1990. 12. 31)

年 度	國家施設		國營施設		個人企業		計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78	596	4,382	325	2,874	553	3,046	1,474	10,302
79	676	5,385	465	3,174	787	4,028	1,928	12,587
80	788	6,218	598	3,916	1,102	5,034	2,488	15,168
81	794	5,990	724	4,396	1,234	5,779	2,752	16,165
82	753	6,062	880	4,949	1,416	6,627	3,049	17,638
83	772	6,225	924	5,528	1,510	7,188	3,206	18,941
84	806	6,713	1,041	6,444	1,884	8,857	3,731	22,018
85	812	7,463	1,097	7,152	1,964	8,950	3,873	23,565
86	827	7,931	1,263	7,695	1,970	9,760	4,060	25,386
87	871	8,396	1,294	7,995	2,143	10,024	4,308	26,415
88	888	8,898	1,364	8,404	2,314	11,066	4,566	28,368
89	910	9,246	1,427	8,589	2,303	10,963	4,640	28,798
90	1,043	10,842	1,447	9,349	2,977	11,386	5,467	31,577
91.10							5,743	31,651
94. 6	1,269	13,044	1,840	8,403	2,970	11,015	6,079	32,462

자료 : 경찰청 경비과 경비3계

5) 全國ビルメンテナンス協會, 『施設警備の研究と實務』, 1985, p.23.

그러나 당시의 경찰력 수준은 국내 치안질서 유지에도 벅찬 상황이었고 더욱이 북한의 대남전술이 유격화된 시점에서 각 중요산업시설의 효과적인 방호에 큰 문제가 제기되었다. 결국 1970년대 들어서 더욱 늘어난 경비영역에 경찰인력만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근무지역내에서만 警察官職務執行法에 의거하여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請願警察制度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같은 배경하에서 출발된 請願警察制度는 이후 점차 확대되어 산업시설 뿐만 아니라 국가공공기관, 국영기업체, 금융기관, 선박 항공 등 수송시설, 방송국 등 언론기관 그리고 방위산업체와 핵발전소 등이 請願警察에 의한 경비활동영역이 되고 있다.

請願警察은 초창기인 1978년 당시 1,474개소의 중요산업시설물에 청원경찰수 10,302명이었던 것이, 1994년 6월 현재 6,079개소의 시설물에 32,462명의 請願警察이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위의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請願警察의 인력은 17년동안 약 3배의 증가를 보였고 경비대상 시설물은 약 4배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결국 請願警察制度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國家經費의 소비없이 경찰력이 강화되는 한편, 신청자의 입장에서는 일정비용으로 경찰공무원에 준하는 請願警察의 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시설경비에 효과적이라는 이점이 합치되어 발전을 거듭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성공적 완수와 북한의 방해책동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경비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아직 민간경비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는 시기적 문제가 부합되어 請願警察制度는 그 과도기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만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

2) 請願警察法의 內容

청원경찰법은 본문 12개조와 부칙, 시행령 21개조와 부칙 그리고 시행규칙 18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76년, 1980년, 1981년, 1983년의 네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請願警察의 직무는 청원주와 배치된 機關施設 또는 事業場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내에 한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도록 되어있다(請願警察法 第3條). 또한 請願警察의 임무는 안보적 경비와 방범을 주임무로 하며, 배치대상은

① 國家機關,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事業場

② 국내 주재 외국기관

③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 事業場 또는 장소이다(請願警察法 第

2條).

그리고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 또는 事業場은

① 선박 항공기 등 수송시설

② 금융 또는 보험을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事業場

③ 언론 통신 방송 또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事業場

④ 학교 등 육영시설

⑤ 기타 公安의 유지와 국민경제상 고도의 보호를 요하는 重要施設 또는 事業場을 말한다(請願警察法 施行規則 第1條).

請願警察의 임용은 배치결정을 받은 청원주가 행한다 (請願警察法 施行令 第4條). 그리고 임용자격은 18세이상 50세 미만의 자로 남자의 경우 현역복무를 필했거나 보충역으로서 보궐입영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자에 한하며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자이다(請願警察法 施行令 第3條).

請願警察의 배치는 배치를 받고자 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請願警察法 第4條). 이때 배치장소가 2개 이상의 도(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주된 事業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일괄 신청할 수 있다(請願警察法 施行令 第2條). 그리고 지방경찰청장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請願警察의 배치를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 즉,

① 請願警察을 계속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② 請願主가 請願警察警備의 부담의무를 태만히 할 때

③ 請願警察이 배치된 시설이 축소되거나 당해 시설의 중요도가 저하되는 등 배치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이다(請願警察法 第9條).

請願警察은 근무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무기를 대여받아 휴대할 수 있다(請願警察法 第8條, 請願警察法施行令 第12條, 請願警察法 施行規則 第8條). 그리고 請願警察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정의 제복을 착용해야 한다(請願警察法 第8條, 請願警察法施行令 第11條, 請願警察法 施行規則 第9條, 第10條). 請願警察官의 복무에 관하여는 경찰공무원법의 일부가 준용되는 외에 그 배치된 시설 또는 기관의 복무규율에 따라야 한다(請願警察法 施行令 第10條).

이같은 請願警察의 직무에는 몇가지 한계가 따른다. 즉 첫째, 장소적 한계로 請願警察의 직무는 배치구역내에서의 경비목적을 위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사항적 한계로 警察官職務執行法에 의한 직무 이외의 직무를 행하여 직권남용으로

국민에 해를 끼치면 請願警察法 第10條 職權濫用禁止條項의 적용을 받는다. 세째, 직무보고로서 업무수행중 특이한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청원주 또는 관할경찰서장에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기관리는 내무부장관이 정한 請願警察武器管理守則을 준수하여야 한다.

한편 관할경찰서장은 항상 請願警察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여 경비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월 1회이상 請願警察을 배치한 경비구역에 임하여

① 복무규율 및 근무상황

② 무기관리 및 취급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請願警察法 施行令 第18條).

3) 用役警備業法

용역경비업법은 1976년 12월 31일 法律 제2946호로 입법되었으며 한국민간용역경비는 이 법에 의거해 실시되었다. 용역경비업법은 본문 19조와 부칙 그리고 시행령 21조와 부칙, 시행규칙 1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81년, 1983년, 1989년, 1991년의 네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이 법이 제정되었던 당시에는 9개의 민간경비업체가 5,022명의 경비원을 고용하고 있었으며 사회적으로는 4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계획으로 조국근대화의 기치하에 급속한 산업발전과 이에 수반되는 민간경비업무의 수요가 증대되었던 시기였다. 그러나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듯 용역경비업법은 단순한 인력경비 위주의 입법이었기에 미국이 포함하는 사설탐정업 또는 일본경비업법이 수용하고 있는 경호경비의 문제는 포함하지 못하였다. 지금까지 네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아직도 그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여 기계경비부문, 인허가부문, 교육제도부문에서는 미흡한 실정이다.

민간경비업체의 건전한 육성과 경비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원체계로서 용역경비업법 제15조에 의거 1978년 9월 21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으로 사단법인 한국용역경비협회가 설립되었다. 협회에는 사경비업체의 대표들이 모여 임원진을 구성하고 산하에 총무부, 기획부, 교육부를 두고 있으며 7개의 전문분과위원회를 두어 활동하고 있다. 협회의 임무는

1. 용역경비업무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2. 경비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경비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4. 경비소요 진단에 관한 사항

5. 손해배상기준의 연구발전과 쌍방당사자의 신청에 기한 손해배상책임등의 분쟁에 관한 화해의 권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용역경비업무의 건전한 운영과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용역경비업법제15조 4항)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공탁금, 이행보증보험 및 공제조합운영, 경비요금의 적정요율산정으로 과당경쟁·덤핑등 불공정계약행위 예방 및 규제, 경비장비의 구입과 개발에 관한 임무, 회원의 권익보호와 친선유대 강화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용역경비협회는 설립이후 사경비발전에 많은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경비발전을 위한 각 분야별 업무수행 실적은 부진한 상태이다. 이는 제도적으로 용역경비회사 설립과 동시에 협회가입을 의무화 했으나 강제력이 없기에 다수의 무허가, 비회원 업체의 무질서행위에 대한 제재장치가 없음에 기인하지만 협회 스스로의 노력부족에도 그 한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6] 따라서 현대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적인 경비서비스 제공과 그에 따른 민간방범역량의 제고를 위해서는 협회의 적극적인 노력과 활동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용역경비업법에서 규정하는 용역경비업은 다음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행위를 말한다. (용역경비업법 제2조 2항)

1. 국가중요시설·산업시설·공공시설·사무소·흥행장·주택·창고·주차장·행사장·유원지·항공기·선박·차량 기타 경비를 요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기타 혼잡 등으로 인한 위해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다만,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선박경비업무는 제외한다.
2. 운반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기타 물건의 도난.화재등 위해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용역경비업자가 채용한 사용인으로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경비원이라 칭한다. 용역경비업은 일정한 업무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으로서 이를 영위하는 자는 상법상의 擬制商人(상법 제5조 1항)이라 할 수 있다.[7] 그리고 용역경비업법 제3조 (용역경비업체의 제한)에 의해 그 영업행위는 법인만이 할 수 있으

6) 협회 임원들은 지금의 용역경비협회가 '의무만 있고 권한이 없는 곳'이라고 자탄하고 있다. 이 말은 어느정도 타당한 듯 하면서도 협회 스스로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전개가 부족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회원 상호간의 보다 강력한 구심점 역할의 부족과 연구개발의 부진, 경찰청과의 상시연락체계 구축미흡 등은 협회의 노력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7) 의제상인이란 점포 또는 비슷한 설비 등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손주찬, 『전정증보판 상법 上』, (박영사, 1985), 73쪽.

며 동법 제15조 5항으로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용역경비원의 법적 지위는 사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용역경비원의 법적 지위가 사인이기 때문에 형사상의 법적 문제에 있어서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의 정당방위"(형법 제21조), 형법상 긴급피난(형법 제22조), 자구행위(형법 제23조), 현행범의 체포 등만 인정될 뿐 기타 사법경찰관의 권한은 부여되지 않고 있다.

2. 美國의 現況 및 立法

가. 私警備의 現況

미국 사경비의 역사는 영국의 통치하에 있었던 17, 18세기무렵 신개척지에 거주하던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밤에 활동하였던 야간 경비원(night watchmen)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사경비업체가 출현하기 시작한 것은 1800년대의 중반이었고, 1850년에 시카고에서 최초의 사설탐정업소가 영업을 시작하였다. 뒤이어 철길을 경비하는 사설감시원들과 사설탐정원들이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 당시에는 이러한 사설탐정과 보안관 등의 공적 경찰과의 업무성격과 역할은 매우 비슷하였고 사경비업체는 종종 전직 경찰들에 의해 조직되었다.

이 무렵 중앙감시방식의 강도예방 경보서비스(centralized burglar alarm services)와 무장차량 호송서비스 등도 탄생되었다. 즉 1858년에 에드윈 홈즈(Edwin Holmes)가 최초의 중앙감시방식 경보서비스 사업을 시작하였고 19세기 말에는 이미 많은 도시에 있어서 중앙경보기지국(central alarm station)이 널리 보급되었다.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개입됨과 동시에 사경비업은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기업체들을 파업이나 적군의 탐정으로 부터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게 되었고 군수산업의 성장으로 인하여 경비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였다. 연이은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은 사경비업의 또다른 붐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고 국가 중요산업과 주요 군수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의 시설, 인원, 장비, 물자 등을 지키는 사경비원들에게 예비헌병적인 지위에 상당하는 권한이 주어지기도 하였다(Timm and Christian, 1991:34-40).

이처럼 미국의 사경비는 오랜 역사와 많은 사건들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발달되어 왔다. 미국 노동통계국(U.S. Bureau of Labor Statistics)의 자료에 의하면 1950년에 이미 사경비원(사경찰과 탐정 그리고 경비원)의 총 인원이 공식적인 법집행공무원의 수

며 동법 제15조 5항으로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용역경비원의 법적 지위는 사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용역경비원의 법적 지위가 사인이기 때문에 형사상의 법적 문제에 있어서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의 정당방위"(형법 제21조), 형법상 긴급피난(형법 제22조), 자구행위(형법 제23조), 현행범의 체포 등만 인정될 뿐 기타 사법경찰관의 권한은 부여되지 않고 있다.

2. 美國의 現況 및 立法

가. 私警備의 現況

미국 사경비의 역사는 영국의 통치하에 있었던 17, 18세기무렵 신개척지에 거주하던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밤에 활동하였던 야간 경비원(night watchmen)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사경비업체가 출현하기 시작한 것은 1800년대의 중반이었고, 1850년에 시카고에서 최초의 사설탐정업소가 영업을 시작하였다. 뒤이어 철길을 경비하는 사설감시원들과 사설탐정원들이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 당시에는 이러한 사설탐정과 보안관 등의 공적 경찰과의 업무성격과 역할은 매우 비슷하였고 사경비업체는 종종 전직 경찰들에 의해 조직되었다.

이 무렵 중앙감시방식의 강도예방 경보서비스(centralized burglar alarm services)와 무장차량 호송서비스 등도 탄생되었다. 즉 1858년에 에드윈 홈즈(Edwin Holmes)가 최초의 중앙감시방식 경보서비스 사업을 시작하였고 19세기 말에는 이미 많은 도시에 있어서 중앙경보기지국(central alarm station)이 널리 보급되었다.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개입됨과 동시에 사경비업은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기업체들을 파업이나 적군의 탐정으로 부터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게 되었고 군수산업의 성장으로 인하여 경비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였다. 연이은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은 사경비업의 또다른 붐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고 국가 중요산업과 주요 군수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의 시설, 인원, 장비, 물자 등을 지키는 사경비원들에게 예비헌병적인 지위에 상당하는 권한이 주어지기도 하였다(Timm and Christian, 1991:34-40).

이처럼 미국의 사경비는 오랜 역사와 많은 사건들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발달되어 왔다. 미국 노동통계국(U.S. Bureau of Labor Statistics)의 자료에 의하면 1950년에 이미 사경비원(사경찰과 탐정 그리고 경비원)의 총 인원이 공식적인 법집행공무원의 수

보다 많아서 1.42:1의 비율이 되었고, 1960년에는 공적 부문의 경찰력 및 경호원과 사경비 부문의 경찰력 및 경호원의 비율이 1.52:1이 되었다. 또한 연방사법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1991), 1980년에는 사경비업체에 대한 년 지출액이 $217억(17조 3600억원)으로 이미 경찰조직 등 공적인 법집행기관의 총지출액 $139억(11조 1200억원)보다 57%나 더 많았다. 1990년에는 총지출액이 73%가 더 많았으며 인력고용규모에 있어서도 2.5배나 더 큰 것으로 집계 되었다. 즉 사경비업계의 총매출액은 $520억(41조 6천억원)에 달하고 근무자수가 150만명을 넘어선데 대해 경찰등의 공적인 법집행기관에서는 년 $300억(24조원)을 지출하였고 대략적으로 60만명의 인원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오늘날 미국의 사경비는 수백억 달러 규모의 산업으로 성장하였고 직간접으로 사회와 삶의 방식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

〈표 2-10〉 사경비 서비스 근무자 현황

공경찰 부문(public law enforcement)		580,428명 (46%)
각 지역경찰(local)	495,842	
주경찰(state)	55,042	
연방경찰(federal)	29,544	
사경비 부문(private security)		678,160명 (54%)
정부기관 경호원	35,982	
각 지역(local)	16,040	
주(state)	9,130	
연방(federal)	10,812	
용역경비원/관련 근무자	341,102	
자체경비원/관련 근무자	301,076	
산업체/제조업	65,800	
건설부문	3,010	
소매	55,838	
금융기관	16,874	
부동산	38,179	
의료기관	29,003	
교육기관	25,553	
공공서비스(전기, 수도, 가스, 전화)	2,594	
유통/창고	4,620	
숙박업(호텔, 모텔, 휴양지)	8,773	
교통업	5,109	
기타	45,723	
총 계		1,258,588명 (100%)

출처 : Cunningham and Taylor, 1985 (p.106에서 재인용), 미국 노동 통계국(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1982.

된다(〈표 2-10〉 및 〈표 2-11〉 참조).

〈표 2-11〉 사경비 서비스 총지출 비용 현황

(공경비 부문(police protection)		
각 지역경찰(local)	$98억	70.5%
주경찰(state)	$21억	15.1%
연방경찰(federal)	$20억	14.4%
계	$139억(39%) (11조 1200억원)	100.0%
사경비 부문(private protection)		
산업체/제조업	$59억	27.2%
소매업	$38억	17.5%
정부시설물	$33억	15.2%
금융기관	$19억	8.8%
의료기관	$14억	6.5%
교육기관	$14억	6.5%
공공서비스(전기,수도,개스,전화)	$11억	5.1%
유통/창고	$ 9억2천	4.2%
숙박업(호텔, 모텔, 휴양지)	$ 8억2천	3.7%
교통업	$ 2억9천	1.3%
기타	$ 8억7천	4.0%
계	$217억(61%) (17조 3600억원)	100.0%
총 계	$356억(100%) (28조 4800억원)	

출처 : Cunningham and Taylor, 1985 (p.107에서 재인용), Sourcebook of Criminal Justice Statistics, 1981. 미국 법무부, 1982.

우선 사경비산업의 주요 부문들을 용역경비서비스(security service)분야, 자체경비(proprietary security)분야, 그리고 장비의 생산(product)분야로 대별하여 전반적으로 세 분야에 대한 연간 총매출액/지출액, 경비업체의 수, 고용인의 수, 각각의 점유비율

등을 살펴본 후, 좀 더 자세한 분류체계에 의해서 보다 세분화된 각각의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Hallcrest Report II (1990:cunningham, Strauchs and Meter 173-180)에 의하면 1980년도에 용역경비서비스와 장비제작업체의 총매출액은 각각 $87억 8000만, $45억 7800만이었으나 1990년에는 각각 $262억 5400만과 $117억로 급속히 신장하여 각각 년 12%와 10%의 성장을 보였다. 또한 비슷한 비율로 성장한다면 2000년 경에는 각각 $634억 2900만과 $237억 2300만으로 각각 9%와 7%의 연 평균매출액의 증가가 예상된다. 반면에 자체경비사들의 운영비용은 1980년에 $62억 5000만에서 1990년에 $136억으로 배가 되었다가 2000년에는 $160억정도가 되어 다소 완만하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표 2-12〉 참조)

〈표 2-12〉 Hallcrest 보고서가 추정 및 예상하는 사경비의 총 매출액/지출액: 1980-2000

년 도	용역경비서비스 및 제조업 매출액	연평균 성장율	자체경비사의 운영비용	연평균 성장율	총 매출액과 지출비용	연평균 총 성장율
1980	서비스: $87억 8000만 판매액: $45억 7800만 계 : $133억 5800만	N/A N/A N/A	$62억 5000만	N/A	$192억 5000만	N/A
1990	서비스: $262억 5400만 판매액: $117억 계 : 379억 5400만	12% 10% 11%	$136억	8%	$516억	10%
2000	서비스: $634억 2900 판매액: $237억 2300만 계 : 871억 5200만	9% 7% 9%	$160억	2%	$1030억	7%

출처 : Hallcrest Report II, 1990. p175

한편 사경비회사들의 양적증가는 1940년대에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이래 60년 가까이 지나면서 1990년대에는 상당히 성숙한 단계에 접어들었다. 또한 〈표 2-13〉은 용역경비회사와 장비제조업체의 수 및 회사내의 경비과의 수를 보여준다. 신규 설립회사의 성장에는 다소의 둔화현상이 보이며 앞으로도 성장율은 그리 높지 않으리라 예상된다. 또한 신규로 설립되는 회사의 수는 다소 기존회사의 승계나 합병, 도산 등의 감소요인 등으로 상쇄되리라고 예상된다. 신규 설립회사의 대다수는 용역경비회사와 제조업체들인데 자체경비와는 2 대 1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2-13〉 Hallcrest 보고서가 추정 및 예상하는 사경비회사의 수: 1980-2000

년 도	용역경비서비스 및 제조업체	연평균 성장율	자체경비사	연평균 성장율	총 회사수	총 연평균 성장율
1980	29,600	N/A	40,000	N/A	69,600	N/A
1990	57,000	6.8%	50,000	2.3%	107,000	4.4%
2000	92,300	4.9%	60,000	1.8%	152,300	3.6%

출처 : Hallcrest Report II, 1990. p175

〈표 2-14〉는 사경비분야에 근무하는 자들의 수를 보여주는데 이 표에 의하면 자체경비분야에 근무하는 경비원의 수가 대폭 감소하리라고 예상되고 있다. 연평균 성장률이 1990년대 말에는 -2%로서 다소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용역경비서비스업체와 장비제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될 것으로 Hallcrest 보고서는 예상하며 전체적으로는 자체경비업의 감소로 인하여 다소 성장율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2-14〉 Hallcrest 보고서가 추정 및 예상하는 사경비원의 수: 1980-2000

년 도	용역경비서비스 및 제조업체 종사자	연평균 성장율	자체경비사 종사자	연평균 성장율	총 사경비회사 종사자	총 연평균 성장율
1980	556,600	N/A	420,000	N/A	69,600	N/A
1990	965,000	6%	528,000	2%	107,000	4%
2000	1,473,300	4%	410,000	-2%	152,300	2%

출처 : Hallcrest Report II, 1990. p176

한편 Hallcrest 보고서 II(1990:127, 173-226)는 사경비관련 업무를 다음 9가지 주요 부문으로 분류하여 각 부문들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과 동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① 자체 경비업(proprietary security)
② 경호 및 순찰 서비스(guard and patrol services)
③ 경보서비스업(alarm services)
④ 사설탐정업(private investigations)
⑤ 무장차량 서비스업(armored car services)
⑥ 경비장비 제조 및 유통업(security equipment manufacturing and distributing)
⑦ 자물쇠 제조업(locksmith)
⑧ 경비 자문업(security consultants services)
⑨ 기타(경비견, 마약검사, 법의학적 분석, 거짓말 탐지 등)

우선 많은 사람들은 사경비라하면 두번째의 경호 및 순찰 서비스(통상 인경비라고 칭하는 부문)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는 사경비의 다양한 분야중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접촉하게 되는 유일한 부문이기 때문이다. 또한 경호 및 순찰 서비스는 사경비업체중에서 가장 많은 회사를 지니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부문이며, 아직도 전체적인 사경비업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용역인력경비회사(contract guard)들 중에서 경비 및 순찰업무를 담당하는 인경비 업체는 1980년에 $38억(3조 400억원)의 총수입을 보였으나 1990년에는 $98억(7조 8000억원)으로 연평균 10%가량 상승하였고, 2000년경에는 $210억(16조 8000억원)으로 연평균 8% 정도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인경비회사들은 경비 및 순찰업무 외에도 경비에 관한 상담과 사설탐정, 유명인사 및 중요인물 경호, 장비판매, 시스템 설치 등의 기타 업무들을 통해서도 수입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미국에서 영업중인 용역경비업체의 수는 1980년의 7,500 업체에서 1990년에는 10,000개사, 2000년에는 15,000개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경비업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경비업종의 현 증가율은 3% 정도이며, 1980년에는 약 330,000명이 이 분야에서 근무하였고 1990년에는 520,000명으로 추정되었다. 2000년에는 750,000명으로 용역경비원들이 증가하리라고 예상하고 있다. 1980년대에는 용역인경비업계의 고용률이 연 5% 정도 증가하였고, 1990년대에는 약 4%의 연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Hallcrest Report II, 1990: 197)

한편 경보 서비스업은 기계경비업의 일환으로서 가장 급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이는 급속한 기술적 진보로 인한 신상품의 개발과 가격인하, 범죄율 상승 등의 요인에 의한 거주지에서의 경보기 사용증가와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이중에서 무선기술의 사용은 지난 10년간 사경비분야에서 있었던 중요한 변화중의 하나이다. 다음의 4 범주의 사람들이 경보서비스업체에 종사하고 있다: 경보기 판매원(alarm sales personnel), 경보시스템 설치자/기술자(alarm systems installers/technicians), 경보장비 통제 및 감시원(alarm monitoring personnel), 경보작동시 출동요원(alarm respondents or runners).

경보서비스업체(또는 기계경비회사: alarm company)의 총수입은 1980년도에 $13억(1조 400억원)이었으나 1990년에는 $45억(3조 6000억원)으로 급속히 신장하여 연 13%의 성장을 보였고, 비슷한 비율로 성장한다면 2000년 경에는 $140억(11조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보회사의 이러한 성장율은 경비자문회사 및 경보장비 제조업의 그것과 더불어 경비산업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 영업중인 경보회사의 수는 1990년의 13,000개사에서 2000년경에는 대략 24,000개사 정도로 예상되며, 장비제조업체들과 함께 가장 신속히 성장하는 분야로 연간 7%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보회사(또는 기계경비회사)의 고용증가비율은 국가 전체의 고용성장비율의 6배 가량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1990년에 약 120,000명이 기계경비 관련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나 2000년 경에는 250,000명 정도로 증가하리라 예상된다. 그러나 주거용 경비 시스템의 비용이 급속히 감소하게되면 기계경비업계의 총수입과 고용인원은 이러한 예측을 크게 능가하여 급상승할 가능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설탐정업에 있어서는 많은 법률관련회사들과 보험회사들이 사설탐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설탐정들은 통상 다음과 같은 업무들을 담당한다. 신청자들에 대한 신용조사 등의 배경조사, 내부적인 도난사건이나 기타 근로자 범죄조사, 비밀 마약조사, 도난물품의 소재파악이나 반환, 민사 또는 형사재판에 이용될 증거확보 등등. 특히 사설탐정 서비스가 사경비의 영역에 포함된다는 점은 興信所와 관련된 법규가 사경비와는 별도로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다만 국내의 일부 사경비업체 가운데에는 사설탐정업(흥신소)이 무자격자들에 의해 난립됨으로서 개인의 인권침해등의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음을 고려하여, 공인된 업체를 선정하고 그 자격요건을 강화시키며 외국의 경우에서처럼 사경비업에 이 분야를 포함시키자는 의견도 있다. 오늘날 신용사회가 점차 정착되어감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과 할부판매등이 증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신용카드를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들과 또한 할부판매시의 저조한 대금회수율 등의 문제등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공권력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을 일일이 해결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사설탐정업을 건전하게 활성화시켜서 수혜자부담 원칙에 의해 신용사회의 정착에 기여케 하는 것도 신중히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무장차량 서비스는 중무장한 차량과 무장경호원을 사용하여 고액의 현금, 귀금속, 신용카드 등의 고가품목을 수송하는데에 사용되고 있다. 현금자동지급기의 사용증가와 도시내 주차기의 주차비 수거를 이러한 무장차량 서비스를 통한 용역으로 대체하는 추세에 있으며 고액의 현금을 소지해야하는 상인들이나 회사들에 대한 경찰경호의 단축 등의 요소들이 무장경호차량 서비스에 대한 시장수요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경비 장비제조 및 판매업에 있어서는 1980년에 제조업자들과 배급자들이 서비스 제공으로 약 $10억(8천억원)의 매출과 장비의 판매로 $46억(3조 68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나 그 이후에 이 분야는 판매와 서비스 매출액에 있어서 연 10씩%의 증가를 보이면서 1990년에는 $26억(2조 800억원)의 서비스 매출과 $117억(9조 3600억원)의 장비판매를 기록했다. 장비의 제조와 분배업자들의 서비스 매출액은 각각 약 12%의 증가, 또한 판매 수익은 7%정도를 예상하여 2000년에는 $80억(6조 4000억원)의 서비스 관련수익과 $240억(19조 2000억원) 제조업의 매출액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날 급속히 그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폐쇄형 TV, 고도의 경보 시스템, 출입통제장치와 기타 기술 등의 신속한 성장이 반드시 경비인력의 감축과 직결되지는 않고 경비원들이 수행하는 일이 변경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NIJ보고서에 의하면 2000년에는 약 750,000명의 용역 경비원과 410,000명(그중 280,000명은 경비원)의 자체경비원들이 있으리라 예상된다.

또한 경찰에 의해 수행되었던 범죄관련 서비스들은 헌법적인 권리들과 연관되기 때문에 사경비에게 이전되지는 않을 것 같으나, 종종 논의되는 이양가능한 업무로서는 공공건물경비, 주차관련업무, 공원의 순찰, 동물통제, 특별행사 경호, 장례식 경호, 법원의 경호, 죄수 수송, 공공주택개발 순찰등이며 이중의 상당 부분은 이미 사경비업체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다.

자물쇠제조업체들은 주거용 자물쇠를 판매, 설치, 보수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경보장치나 전자출입 통제시스템 등을 판매하거나 설치하는 업무도 하고 있다.

한편 경비자문 서비스업에서는 다음 네가지의 일반적인 분야들이 포함된다. 1) 기술관련 서비스, 2) 경비관리, 3) 위기관리와 고위직, 중요시설 보호, 4) 컴퓨터 보안. 각

분야의 자문관들은 통상 높은 수준의 교육과 고도의 훈련으로 고객이 원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비장비 제조 및 판매업 부문도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사경비의 한 분야이다. 1990년경에 대략 2500개의 장비제조 내지 판매회사들이 미국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한 유형의 장비제조업체들은 다음과 같은 장비들을 생산하고 있다. 출입통제(access control), 폐쇄회로 TV, 경보장치, 폭탄탐지 시스템, 금속탐지기, 전자식 물품탐지장치, 컴퓨터 보안장치, 전화보안, 보안등, 경비용 담장, 보안용 자물쇠 등.

나. 私警備業法의 立法 槪觀

비교적 최근에 발행된 사경비와 관련된 보고서들(The Hallcrest Report I, 1985; The Hallcrest Report II, 1990; Security, 1990)에 의하면 경비업과 관련된 법규의 급속한 증가가 계속되어 1990년에는 미국의 약 45개 주들이 상기의 새 분야중 적어도 한 분야에서 주정부가 사경비업체와 그 고용인들의 일정 측면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39개 주가 용역인경비업(guard and patrol)에 관한 인허가규정들을 두고 있으며 사설탐정들(private investigators)은 37개 주에서 규제되고 있는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이중 다수의 주는 사설탐정 또는 사설조사관 등의 용어가 다양한 경비행위를 기술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일부지역에서는 사설탐정들이 경호업무까지도 수행하도록 허용되고 있다. 경보시스템 청부업에 대해서는 1990년 현재 25개 주에서 관계법령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은 업체의 인허가나 면허증 또는 자격증 발급과 관련된 법규를 가지고 있는 주들에 있어서, 업체의 인허가시 면허발급을 위한 주요 요구사항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장 보편적인 요구사항은 前科記錄確認(criminal history checks)이며 29개 주가 이러한 의무사항을 가지고 있다. 또한 17개 주들은 경비업면허를 신청하는 자들에게 筆記試驗을 요구하고 있으며, 25개 주는 신청자가 미국시민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34개 주는 면허신청자의 최저연령제한을 두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18세이지만 21세에서 25세까지로 제한하는 주들도 있다.

한편 認許可(licensing) 또는 免許發給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37개 주중에서 31개 주들이 신청자들의 사경비 관련업무에서의 勤務經驗을 요구하고 있다. 관련분야 근무경험에 관한 강조는 전문성을 추구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사법제도의 민영화가 경험과 관련된 자격요건에 박차를 가한 큰 힘이 되었다. 16개의 주들에 있어서는

면허신청자들이 받아야 하는 일정수준의 훈련(training)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경비업법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機械警備業에 관한 法令의 제정이며 경비업법의 개정 및 신설 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내용은 훈련과 교육에 대한 강조, 면허증이나 자격증제도 실시, 인허가의 기준강화 등을 통한 경비업의 상향적인 標準化(standardization)와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지도감독 등을 통한 공적인 規制(regulation)의 강화이다. 그 이유는 표준화와 그에 따른 認許可기준의 강화와 법적인 규제들을 통한 정부의 지도강화는 오늘날 사경비업계가 안고 있는 여러 현안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사전예방적 장치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사경비의 법적 현황에 관한 논의는 제7장의 인허가와 법적규제의 부분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 하기로 한다.

3. 日本의 現況 및 立法

가. 私警備業 發展史와 現況

일본에서 專業의 경비업자가 탄생한 것은 1962년으로, 동년 3월에 大日警이 그리고 7월에 日本警備保障(SECOM의 전신)이 설립된 것에서 출발한다. [8] 이렇듯 경비업의 역사가 짧은 것은 치안이 잘 되어 있는 이유로 "물과 안전은 그저"라는 의식이 강하여 경비업에 대해 관심이 낮았기 때문이다.[9] 그렇지만 그 이유를 民間警備라는 측면에서 살펴 보면, 戰前 일본산업계가 夜警, 守衛, 巡視 또는 保安員 등으로 자체경비를 해 왔고,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必要經費를 기업에서 부담하고 경찰력의 常駐派遣을 요청하는 '請願巡査'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위탁방식에 의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비시스템의 개발을 막아 이를 도입할 여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10]. 그러나 경비업은 1964년 도쿄 올림픽의 선수촌 경비를 계기로 경비업의 존재가 널리 인식되었고 1970년의 오사카 EXPO의 성과는 경비업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 후 高度成長期에 있어서의 기업의 합리화와 일손부족을 배경으로 급속히 발전하여 警備業法

8) 深澤賢治, 警備保障のすべて——會社と家庭のセキュリティ——, 東洋經濟新聞社, 1981, 69쪽. 일반적으로 SECOM이 미국의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오고 있지만, 스웨덴의 경비회사 SP (Security Patrol)와 제휴하여 도입하였다. 警備保障新聞 제5호(1978.3.5) 참조.

9) 警察廳保安部 防犯企劃課 감수, 『業法の解說[개정초판]』, 1987, 全國警備業協會, 3쪽 참조.

10) 請願巡査 제도는 그야말로 우리의 請願警察 제도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全國ビルメンテナンス協會, 『施設警備の研究と業務』, 1985, 23쪽 참조.

면허신청자들이 받아야 하는 일정수준의 훈련(training)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경비업법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機械警備業에 관한 法令의 제정이며 경비업법의 개정 및 신설 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내용은 훈련과 교육에 대한 강조, 면허증이나 자격증제도 실시, 인허가의 기준강화 등을 통한 경비업의 상향적인 標準化(standardization)와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지도감독 등을 통한 공적인 規制(regulation)의 강화이다. 그 이유는 표준화와 그에 따른 認許可기준의 강화와 법적인 규제들을 통한 정부의 지도강화는 오늘날 사경비업계가 안고 있는 여러 현안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사전예방적 장치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사경비의 법적 현황에 관한 논의는 제7장의 인허가와 법적규제의 부분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 하기로 한다.

3. 日本의 現況 및 立法

가. 私警備業 發展史와 現況

일본에서 專業의 경비업자가 탄생한 것은 1962년으로, 동년 3월에 大日警이 그리고 7월에 日本警備保障(SECOM의 전신)이 설립된 것에서 출발한다. [8] 이렇듯 경비업의 역사가 짧은 것은 치안이 잘 되어 있는 이유로 "물과 안전은 그저"라는 의식이 강하여 경비업에 대해 관심이 낮았기 때문이다.[9] 그렇지만 그 이유를 民間警備라는 측면에서 살펴 보면, 戰前 일본산업계가 夜警, 守衛, 巡視 또는 保安員 등으로 자체경비를 해 왔고,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必要經費를 기업에서 부담하고 경찰력의 常駐派遣을 요청하는 '請願巡査'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위탁방식에 의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비시스템의 개발을 막아 이를 도입할 여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10]. 그러나 경비업은 1964년 도쿄 올림픽의 선수촌 경비를 계기로 경비업의 존재가 널리 인식되었고 1970년의 오사카 EXPO의 성과는 경비업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 후 高度成長期에 있어서의 기업의 합리화와 일손부족을 배경으로 급속히 발전하여 警備業法

8) 深澤賢治, 警備保障のすべて——會社と家庭のセキュリティ——, 東洋經濟新聞社, 1981, 69쪽. 일반적으로 SECOM이 미국의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오고 있지만, 스웨덴의 경비회사 SP (Security Patrol)와 제휴하여 도입하였다. 警備保障新聞 제5호(1978.3.5) 참조.

9) 警察廳保安部 防犯企劃課 감수, 『業法の解說[개정초판]』, 1987, 全國警備業協會, 3쪽 참조.

10) 請願巡査 제도는 그야말로 우리의 請願警察 제도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全國ビルメンテナンス協會, 『施設警備の研究と業務』, 1985, 23쪽 참조.

이 제정된 1972년에는 경비업자수 약 780, 경비원수 약 4만 1천명에 달하는 성장산업의 하나로 주목받기에 이르렀다. 그 후 오일쇼크를 계기로 안정성장의 궤도에 들어섰는데 각종 기업이 관리체제의 합리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사회수요에 부응하여 그 활동영역을 넓혀감과 동시에, 고도 전자기술을 도입한 기계화를 급속히 추진함으로써 질과 양 양면에서 큰 변화와 발전을 이루었다. 경비업법이 개정된 1982년에는 경비업자수 약 3천 5백으로 10년전보다 약 4배가 늘었고, 경비원수는 약 13만 4천명에 달하여 3배가 넘게 성장하는 등, 국민의 방범 및 방재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安全産業'의 中核으로서 국민생활에 깊숙히 자리잡게 되었다.

일본의 경비업은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수요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날까지 순조로운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업무내용도 원자력발전소, 공항, 초고층빌딩 등 각종 시설의 施設警備, 공사현장 등의 交通誘導警備, 각종 이벤트 등에서의 雜踏警備, 현금 및 핵연료물질 등의 輸送警備, 警護 등 폭넓은 분야에 이르고 있다. 특히 근래 야간·휴일에 있어서의 無人建物의 증가에 의한 수요의 확대, 전자기술의 진보에 따른 방범시스템의 보급, 그리고 다른 기능과 접합된 새로운 업태의 발생 등으로 機械警備가 급속히 발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92년말 현재, 기계경비업자는 707개사, 업무대상시설은 647,588시설에 이른다. 1993년말 현재, 경비업자는 7,062개사로 전년에 비해 2.6% 증가하였고 경비원수는 321,721명으로 10.4% 증가하였으며, 총매상고는 1조 5,620억엔(약 12조 5천억원)으로 2.6% 증가하였다. 최근 3년여에 걸친 불황으로 업계의 총매상고 신장율은 둔화되었으나 안전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정착되고 있으므로, 기계경비를 중심으로 안전산업으로서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1]

〈표 2-15〉 경비업자수 및 경비원수의 추이

년 차	1972	1982	1988	1989	1990	1991	1992
경비업자수	775	3,546	4,896	5,248	5,633	6,045	6,578
경비원수	41,146	133,946	218,880	232,617	246,970	270,041	291,320

11) 그러나 불황이 반드시 경비업계의 신장과는 직결되지 않는 것 같다. 예컨대 총경비업자의 45%를 차지하는 교통유도경비 분야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93년 1년간 東京에서는 70개사가 폐업하였고 가나가와현(神奈川縣)에서는 20개사가 폐업하였다. 또한 안이하게 기계경비업에 진출한 상주경비업자 가운데에는 영업력 부족과 대상시설의 과소에 의한 채산성의 악화로 철퇴하는 업자도 있다고 한다. 警備保障新聞, 1994년 7월 15일자 참조.

경찰청의 발표자료[12]에 의한 경비업의 현황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한다.

먼저 경비업자수 및 경비원수의 추이는 〈표 2-15〉와 같다.

또한 남여별 고용형태를 보면, 여자경비원이 15,192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3,348명이나 증가하여 전체 경비원 가운데 5.2%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에 있어서는 수퍼마켓과 백화점 등에서의 절도를 감시하는 保安要員과 교통유도경비 분야에 여성들이 많이 활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臨時警備員[13]의 비율도 20.7%를 차지하여 처음으로 2할을 넘어섰다(〈표 2-16〉 참조).

〈표 2-16〉 경비원의 남여별, 고용형태별 상황

	총수 (구성비)	상 용	임 시	임시경비원의 비율
총 수	291,320	231,154	60,166	20.7%
남 자	276,128(94.8%)	220,483	55,645	20.2%
여 자	15.192(5.2%)	10.671	4,521	29.8%

〈표 2-17〉 경비원수별 상황

경비업자수(비율) / 경비원수	경비업자수	구 성 비
총 수	6,578	100
49명 이하	5,391	82.0
50 ~ 99 명	699	10.6
100 ~ 999 명	475	7.2
1,000명 이하	13	0.2

경비업자의 규모별상황을 살펴 보면, 경비원수 50명 이하의 업자가 82%를 차지하

12) 平成4年中における警備業の現況(12月末 現在), 1994. 참고로 표의 1972년은 警備業法이 제정된 해이고 1982년은 동법이 개정된 해이며, 1988년은 昭和시대가 막을 내린 해이고 1989년은 平成시대가 시작된 해라는 면에서 통계의 기준년도로 설정되었다고 판단된다.

13) 참고로 일본의 全國警備業協會는 경비업법의 개정시에 임시경비원을 제도화시키는 정책을 요청하였다. 즉, 경비원을 正警備員(가칭)과 準警備員(가칭)의 둘로 구분하여 準警備員은 임시사원으로서 正警備員의 보조자로 근무시키는 이외에 임시, 부정기, 非繼續 등 특정한 경비에 종사시키되, 準警備員에 대한 교육과 감독지도 및 복무규정을 규정하자는 것이었다. 결국 채용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常用警備員 이외에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학생) 내지는 파트타임(주부)으로 근무하는 임시경비원은 많으며 그들을 모집하는 광고를 흔히 볼 수 있다.

고 1,000명 이상의 경비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자는 13개사에 지나지 않아 영세업자가 많음을 알 수 있다(〈표 2-17〉 참조). 업계가 신장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업자당 평균 경비원수는 44명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를 매상고별로 살펴 보더라도, 1억엔 미만의 업자가 전체의 7할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100억엔 이상의 매상고를 기록하는 회사는 13개사에 불과하다(〈표 2-18〉 참조).

〈표 2-18〉 매상고별 상황

경비업자수(비율)	경비업자수	구성비
총 수(매 상 고)	6,578	100
5,000만엔 미만	3,557	54.1
5,000~ 1억엔 미만	1,016	15.4
1억엔~100억엔 미만	1,992	30.3
100억엔 이상	13	0.2

또한 경비업자를 업종별로 살펴 보면, 常駐警備에 종사하고 있는 업자가 3,750개사로 전체의 57%를 차지하고 있고, 交通誘導業務가 3,101개사로 47.1%를 차지하여 뒤를 잇고 있다. 한편 기계경비업자는 707개사로 전체의 10.7%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비대상시설수는 647,588시설이다(〈표 2-19〉 참조).

〈표 2-19〉 경비업종별 상황[14]

경비업무 \ 경비업자수 등		경비업자수	구 성 비 (%)	경비원수	구 성 비 (%)
총 수		6,578		291,302	
시 설	상주경비[15]	3,750	57.0		
	순회경비[16]	614	9.3	#187,392	#64.3
경 비	기계경비	707	10.7		

14) 업종분류의 기준은 경비업법의 분류법에 따른 것인데, 동법 제2조 1항은 경비업법 제정 당시의 경비업무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에 있어서 "경비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딘가에 해당하는 업무로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행하는 것을 말한다.
1. 사무소, 주택, 흥행장, 주차장, 유원지 등에 있어서 도난 등의 사고발생을 경계하고 방지하는 업무

경비업무 \ 경비업자수 등		경비업자수	구 성 비 (%)	경비원수	구 성 비 (%)
총 수		6,578		291,302	
교통유도경비		3,101	47.1	106,045	36.4
귀중품 운반 경비	현금수송	276	4.2	11,749	4.0
	핵연료물질운반	15	0.2	351	0.1
	기 타	62	0.9	889	0.3
신변경호		38	0.6	222	0.1

원주; 경비업자와 경비원이 2 이상의 업무를 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각각 1로 계상했다.

필자주: #가 붙은 숫자는 시설경비 전체의 경비원수와 구성비를 나타냄.

勞動省은 경비업을 "中高年雇用型·男子社員型 産業"으로 분류하고 경비원에 대해서는 "流動型·中途入職傾向型"으로 분류하였다. 실제로 賃金構造 基本統計調査[17]에 의하면 平均年齡 51.6세, 平均勤續年數 5.4년으로, 전체산업의 평균치인 39세, 9.7년 보다 연령이 높고 근속이 짧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1992년 현재 경비원의 연령구성을 보면, 30세 미만은 불과 12.2%에 지나지 않는데 반하여 55세 이상은 54.4%로 과반수를 넘고 있다(〈표 2-20〉 참조). 또한 근속연수도 4년 미만이 51.3%에 달한데 반하여 10년 이상은 20.7%에 지나지 않았다(〈표 2-21〉 참조).

2. 사람 혹은 차량이 雜踏(필자주:혼잡)하는 장소 또는 이들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에 있어서 부상 등의 사고발생을 경계하고 방지하는 업무
3. 운반중인 현금, 귀금속, 미술품 등에 관한 도난 등의 사고발생을 경계하고 방지하는 업무
4.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그 신변에서 경계하고 방지하는 업무 이 가운데 제4호의 경호업무는 우리의 "용역경비업법"에는 없는 업종으로 일본경비업법의 특징이라할 것이다.

15) 상주경비란 빌딩과 공장 등의 경비대상시설내에 소요되는 경비원을 파견·상주시켜서 출입관리, 순회, 감시업무를 행함으로써 도난 등의 사고발생을 경계하고 방지하는 경비방법을 말한다. 『施設警備の研究と實務』, 全國ビルメンテナンス協會, 1985, 27쪽 참조.

16) 순회경비란 경비대상시설내에 경비원을 상주시키지 않고 그 대신에 경비원이 경비대상시설을 차량 등으로 순회하며 경비하는 방법을 말한다. 전게서, 28쪽 참조.

17) 1991년 8월 1일부터 1992년 7월 31일 사이의 기간을 조사하여 1993년에 발표한 기본자료이다. 『警備年鑑 1993』, 15쪽 참조.

〈표 2-20〉 경비원의 인원구성

연령구분(세)	근속연수(년)	해당경비원수	구성비(%)	
18 ~ 19	0.8	930	1.0	
20 ~ 24	2.4	4,840	5.4	12.2%
25 ~ 29	4.2	5,120	5.8	
30 ~ 34	5.0	4,760	5.4	
35 ~ 39	6.7	4,770	5.4	
40 ~ 44	6.7	6,830	7.7	
45 ~ 49	6.2	4,920	5.5	
50 ~ 54	6.9	8,300	9.3	中高年(45세 이상)
55 ~ 59	5.6	16,150	18.2	69.2%
60 ~ 64	4.7	19,280	21.7	54.4%
65 이상	6.0	19,290	14.5	

〈표 2-21〉 경비원의 근속년수

근속연수(년)	해당경비원수	구성비(%)
1년 미만	11,120	12.5
1 ~ 4	34,440	38.8
5 ~ 9	24,910	28.0
10 ~ 14	10,710	12.1
15년 이상	7,660	8.6
총 수	88,8300	100.0

나. 『私警備法』의 立法 槪觀

일본의 『警備業法』은 경비업이 건전한 발전방향을 확립하지 못하고 경비원의 비행[18] 및

18) 지나가던 여성이 건설현장을 경비중이던 경비원을 경찰관으로 오인하여 신고한 습득물을 횡령해 버린 사안, 경비원의 제복이 경찰관의 제복과 유사한 점을 악용하여 교통경찰관을 가장해 교통위반자로부터 벌금을 사취하려 한 사안, 백화점에 근무중이던 경비원이 7천만엔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고 금고를 턴 사안 등이 대표적인 불상사였다. 특히 1970년경부터 경비원이 노동쟁의와 시민운동에 기동대와 유사한 복장을 하고 출동하는 등의 부당사례가 신문에 보도되자 경비업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비등하였고 법적 규제가 요청된 것이다. 警察廳保安部 防犯企劃課 감수, 『警備業法の解說』, 6쪽 이하 참조.

위법·부당한 경비업무에 대한 여론의 비판과 경비업에 대한 법적 규제의 요청이 고조된 상황에서, 경비업에 대한 소정의 규제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무의 적정한 실시를 꾀하고 안전사회의 기반을 형성하는 사업으로 건전 육성할 것을 목적으로 1972년 7월에 공포하여 11월에 시행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警備業法은 경비업무를 실시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와 자유 기타 공공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필요한 규제를 정하고, 경비업자 및 경비원에 대한 특별한 지위는 일절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규정하였다. 그 주요규제 내용은

(1) 경비업자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경비업을 영위하려는 자의 공안위원회에의 届出義務

(2) 경비업자 및 경비원이 경비업무를 행함에 있어서의 기본원칙

(3) 경비원의 교육과 필요한 지도감독 등의 간소한 것이었다.

한편 법제정 이후 10년 사이에 경비업은 사회의 수요에 따라 공항경비와 원자력관계의 시설경비까지 행하게 되는 등 활동영역이 확대되고 경비업무의 기계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에서 크게 변화하였다. 이러한 경비업의 발전에 따라 경비업무의 적정실시에 대한 사회의 요구가 거세졌지만 업계의 실태는 이에 충분히 부응할 만큼 성숙되지 못하였고, 1972년의 상황을 전제로 한 법규제로는 대처할 수 없는 정세에 이르게 되었다.

전과를 가진 자와 폭력단 관련자가 경비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근무지에서의 절취와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한 경력이 있는 경비원이 살인사건을 저지르는 등 경비원의 비행이 속출하여, 사회적 신뢰를 잃고 경비업의 건전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그리고 이들 비행의 한 요인으로 경비원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의 불철저가 거론되었다.

또한 야간, 휴일에 있어서의 무인건물의 증가와 전자기술의 발달에 따른 기기의 진보, 경비업자의 경영합리화 등으로 기계경비업이 급속히 발전하게 되었고, 기계경비가 도시방범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경비업무 대상시설로부터 떨어진 장소에서 기기에 의해 경계활동을 행한다는 기계경비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한 법적 규제가 없었고, 이상경보시의 판단과 부적절한 지령, 즉응체제의 미비 등으로 피해의 발생과 확대를 방지하지 못한 사례가 급증하였고 경찰기관에의 오보도 상당한 비율에 달하였다.[19]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내각은 1982년에 "經費業法의 一部를 改正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동년 7월에 성립하여 1983년 1월 15일부터 시행되게 되었

다.

改正 警備業法의 특징은 크게 다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부적격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경비업을 영위하는 자의 요건을 "届出制"에서 "認定制"로 강화시킨 점

(2)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 및 "기계경비업무관리자" 제도의 신설과 경비원교육의 강화

(3) 급증하는 기계경비업에 대한 규정을 대폭 신설한 점이다.

이 개정으로 경비업법은 경비업의 건전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을 대폭 정비할수 있게 되었다.[20] 또한 경비업법의 위임명령 또는 실시명령으로 다음에 열거하는 政令 및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1) 경비업법 시행령 (1982년 12월 10일 政令 제308호)

(2) 경비업법 시행규칙 (1983년 1월 10일 總理府令 제1호)

(3) 경비업의 요건에 관한 규칙 (1983년 1월 10일 國家公安委員會規則 제1호)

(4)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 및 기계경비업무관리자와 관련된 강습 등에 관한 규칙 (1983년 1월 10일 國家公安委員會規則 제2호)

(5)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 및 기계경비업무관리자와 관련된 적격자의 인정기준에 관한 규칙 (1983년 1월 10일 國家公安委員會規則 제3호)

다. 警備業界의 動向

1) 常駐警備에서 機械警備로

고도경제성장기에 합리화의 일익을 담당하면서 노동집약산업으로 성장해 온 경비업계에 내적·외적 요인에 의해 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시설경비분야에 있어서 상주경비가 기계경비로 활발하게 전환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불황에 허덕이는 기업이 코스트가 저렴한 기계경비를 도입하거나 고용조정에 의한 잉여인원을 自社警備(자체경비)로 대체하고, 경영의 다각화로 경비회사를 설립하고 인재를 파견하여 관련기업과 거래업자에게 경비수주를 요청하기도 하며, 3교대로

19) 기계경비업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오늘날 우리의 用役警備業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기계경비업에 대한 규정은 우리의 경비업계의 현상과 장래의 발전에서 볼 때 시급히 요청되는 급선무라 할 것이다.

20) 이 세가지 점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장에서 상세하게 기술하기로 한다. 또한 현행 일본의 경비업법 조문 및 新舊法 비교를 부록으로 게재하였으므로 참조 바람.

풀 가동하던 공장이 야간의 조업을 중지함으로써 기계경비를 도입하는 케이스도 증가하고 있다.

東京의 시설경비 대상시설수의 추이를 보면, 상주경비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에 기계경비는 여전히 증가경향을 보이고 있다. 상주경비의 약 4할을 차지하고 있는 빌딩 및 회사와 맨션 아파트에서 상주경비가 조금씩 감소하고 백화점과 수퍼마켓에서는 급속히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5.8%나 감소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기계경비는 두자리 숫자로 성장하던 것이 1992년에는 6.0%의 증가에 그치기는 하였지만, 빌딩·회사·백화점·수퍼마켓·관공서에서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2) 寡占化와 二極分化

SECOM 그룹과 綜合警備保障 그룹의 2대 기업에 의한 과점화가 매년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기계경비에 있어서 그 경향이 더욱 뚜렷하다.

1992년도 통계에 의하면, SECOM 그룹 10개사의 매상고가 1,756억 1,000만엔, 綜合警備保障 그룹 26개사의 매상고가 1,979억 2,800만엔으로 업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24.54%에 달하고 있다. 이를 全警備業者와 비교해 보면, 2대 그룹의 경우에는 1개사 평균매상고가 103억 7,606만엔임에 대하여 나머지 업자의 경우에는 1억 7,555만엔으로 2대 그룹사의 1.69%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계경비의 경우를 보면 대상시설수 647,588 시설가운데 SECOM 본사가 36.6%, 綜合警備保障 본사가 19.3%를 차지하고 있어, 2대 그룹 본사만으로 과반수를 초과하고 있으며, 東京의 경우에는 무려 8할을 넘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

2개사가 기계경비분야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경비업법에서 정하는 즉응체제의 정비의무(출동시간 등)를 일단 충족시키기 위해 대기소를 설치해 두고 있는데, 그 구역내에서의 경비대상시설수와 대처요원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Scale Merit 가 성립된다는 점에 있다. 더욱이 양사가 일찍부터 기계경비에 착수하여 특히 대도시에서는 지역체제를 이미 확립했다는 것이 계약에서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기계경비의 경우 계약기간이 보통 5년으로 되어 있으며, 일단 기기를 설치한 후에는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3) 경비업계의 새로운 전개

일본에서는 기존의 경비업 개념과는 색다른 새로운 분야가 끊임없이 개척되고 있다. 그 예로 소위 "警備 택시" 제도와 "Town Security System"을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한

다.

"경비 택시"란 事故, 응급환자의 발생, 화재, 강도 및 불법침입 등의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택시가 출동하여 관계기관에 연락하거나 가까운 의료기관에 통보하는 제도이다. 당초에는 노인이나 독신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긴급구원시스템에 국한되었으나, 縣警察의 지도로 방범, 방재를 포함한 시스템으로 바뀌어 일반가정 뿐만 아니라 점포와 사무소까지 그 대상이 넓어졌다.

계약자가 환경 및 신체에 이상을 느꼈을 때 펜던트(pendant) 형태의 휴대용 무선장치의 버튼을 누르면, 옥내에 설치한 발신장치가 작동되어 配車센터에 자동적으로 연결된다. 센터에서는 합성음으로 들려오는 상대방의 등록번호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화면에서 그 소재지를 확인한 후, 가장 가까운 곳을 주행중인 빈 택시에 구원할 것을 지시한다. 빈 택시가 한대도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배차센터에는 전용차량과 운전요원을 상시 확보해 두고 있기 때문에, 통보를 발신한 후 2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1989년 6월 29일 運輸省 地域交通局이 전국의 地方運輸局에 시달한 "택시사업자가 행하는 救援事業에 대하여"에 의해, 택시회사가 본래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경비업과 대행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인정되었다.[21] 이에 대해 경찰청은 경비업법에 규정된 경비업의 조건에 비추어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하도록 전국의 경찰본부에 지시하고, 동시에 신청업자에 대해 전용차량의 배치, 관제국과 대기소의 확보, 지도교육책임자·기계경비업무관리자자격 등 필요한 조건 충족을 지도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Town Security System"이란 일정한 지역에 건설된 집합주택을 포함하여 전가구에 각종 경보센서와 화재 및 가스감지센서 등의 시스템 단말센서를 설치하여 일반회선을 통해 센터에 연결하고, 설비고장과 전기장해에의 대응, 장기부재 등 버튼통보에의 대응, 정기 순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제이다. 1987년 철도회사인 相模鐵道가 선로변에 개발한 신도시 중심부에 Home Security의 관제센터를 설치하여 전주민이 참가하는 Home Security System을 적용하고 있다. 이같은 시스템은 西武세존그룹이 교토시(京都市) 서부에 대규모 주택단지를 개발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CATV 방송과 병행하여 제공하고 있다.

---

21) 최초로 경비업 인정을 받은 것은 나가노현(長野縣) 시오지리市(鹽尻)에 본사를 둔 美勢택시로, 운수성의 통달보다 이른 1987년 2월부터 택시를 활용한 긴급자동전화 시스템에 의한 기계경비업무를 개시하였다고 한다. 『警備業年鑑 1993』, 警備保障新聞社, 52면 참조.

Ⅲ. 二元的 運用體制(請願警察法, 用役警備業法)의 現況과 問題點

英美法系 國家에서는 地方分權主義가 활성화되어 있어 일찍부터 私警備制度가 발달해 경찰과 함께 공존하며 범죄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왔다. 그리고 大陸法系 國家에서는 中央執權的인 성격이 강해 범죄에 대한 대처가 민간부문의 활성화보다는 官主導의 범죄예방활동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왔다. 대륙법계 國家에 속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치안문제는 당연히 중앙정부의 몫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획기적인 産業化에 뒤따르는 수많은 치안문제에 公權力만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1973년 請願警察法이 제정되어 1976년 用役警備業法이 제정되기 전까지 국가중요시설, 기관, 공공단체 및 각종 사업장에 警察官職務執行法의 적용을 받는 準警察官인 請願警察이 경비활동을 하여 왔다.

그러나, 80년대 이후부터는 私警備部門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請願警察制度와 民間用役警備制度가 양립되어 많은 부문에서 업무의 중복과 혼란을 야기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방범능력 재고의 효율성 측면에서 양 제도의 이원적 운용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二元的 運用體制의 現況

請願警察이나 用役警備나 시설경비라는 대국적 과제에는 다를 바가 없다. 請願警察은 안보적 차원을 주전제로 하는데 대하여 用役警備는 수요자와 용역경비업자간의 단순한 임의계약에 의한 도급경비이다. 즉 請願警察은 '나의 시설은 나의 손으로'라는 개념이고 用役警備는 '나의 시설을 남의 손으로'라는 개념이라 볼 수 있다.

請願警察과 用役警備는 다같이 범죄예방활동을 주요임무로 하고 있으며, 활동영역에 있어 請願警察은 기관장이나 시설주(청원주)의 요구에 의하여 공공적 또는 준공공적인 분야에서 방범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用役警備는 顧客(도급계약자)의 요구에 의해서 사적인 분야에서 범죄예방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請願警察은 준경찰관 신분으로서 근무지역내에서 警察官職務執行法에 의해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請願警察法 第3條), 用役警備는 私人의 자격으로서 시설주가 요구하는 경비시설물 내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표 3-1〉 한국의 경찰·청원경찰·용역경비의 비교

區 分	警 察	請願警察	用役警備
이 념	공공 이익 우선(국민의 생명, 재산보호)	준공익 추구(기관장 및 시설주 요구 범위내)	개인 이익도모 (도급계약자 요구 범위내)
직 무 (권 한)	사회공공의 질서 유지, 경찰관 직무집행법 범위내 ① 범죄 예방, 수사, 범인 체포 ② 요인경호, 대간첩작전 ③ 정보수집, 분석, 배포 ④ 교통단속, 위해방지 ⑤ 공공안녕, 질서유지	근무하는 경비구역내에서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수행	특별권한 없음 직무시는 私人 적용 ① 정당방위 (형법21조) ② 긴급피난(형법 22조) ③ 자구행위(형법23조) 적용
교 육	① 신임교육 간부:1-4년 비간부:6개월 ② 보수교육 각계급별 1월 내외 기타 전문화 교육	경찰교육기관에서 2주간 76시간의 기본교육, 매월 4시간의 직무교육	경비협회에서 임용전 10일간 68시간 교육의 신임교육, 매월 4시간의 보수교육
신 분	국가공무원 연령·계급정년	민간인 (18세 ~ 50세)	민간인 (18세 ~ 55세)
보 수	경찰공무원 보수 규정	경찰청장 매년 1월중 최저임금 고시	협회에서 조정하나 기업자유
복 장 장 비	경찰청 규칙 규정	청원경찰법 규정	용역경비업법 규정
직 무 범 위	광역, 공공영역 중요지점 설정 활동	지정된 공공영역 시설주가 요구한 시설물 및 지역	일정한 사적 영역 운송 및 혼합경비도 가능
무 기 휴 대	무기휴대 가능	근무지역에서만 무기휴대 가능	무기휴대 불가능
손 해 배 상	국가 책임 (국가배상법)	시설주 책임 (원칙적 민사책임)	용역경비업자 책임 (민사책임)

請願警察의 배치는 청원주가 배치신청서를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거나 또는 지방경

찰청장이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실행된다. 그리고 임용 및 감독은 관할소재지 경찰서장이 하도록 되어 있다.

용역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구역이 2개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구역에 걸칠 때에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경비원의 임용은 경비업자가 경비원이 결격사유(용역경비업법 第7條)에 해당되지 않으면 임명할 수 있고 관할 도지사나 경찰서장이 근무상황 및 교육훈련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請願警察과 동일하다.

용역경비와 請願警察을 경찰과 비교해 보면 〈표 3-1〉과 같다.

현재 請願警察과 용역경비 운용에 있어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근무배치 등의 위임(請願警察法施行令 第19條 2항) 및 중요시설의 용역경비(用役警備業法施行令 第8條)에 관한 조항을 살펴보면, 용역경비업자가 중요시설의 경비를 도급받은 때에는 청원주는 그 事業場에 배치된 請願警察의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당해 용역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請願法施行令 第19條). 그리고 기관, 시설 또는 事業場에 請願警察에 의한 경비와 용역경비가 동시에 실시되는 경우에는 청원주는 경비의 효율화를 위하여 請願警察에 대한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용역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용역법시행령 第8條)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동일 경비시설물내에서 請願警察과 용역경비의 지휘체계는 용역경비업자에 위임되어 통일을 기할 수 있지만, 실제 업무집행에 있어 법집행 권한이나 임용 및 해임 등은 용역경비업자의 권한 밖에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경비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상에 알 수 있듯이 請願警察과 용역경비는 모든 면에 있어서 거의 유사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그 지휘체계, 법집행권한, 임용, 그리고 해임 등의 중요한 몇가지 사항에 있어서는 이원적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請願警察과 용역경비의 이원적 체제의 운용에 따른 효율성 문제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아래에서는請願警察과 용역경비의 이원적 체제운용에서 오는 문제점을 제시해 봄으로써 그 비효율성을 지적해 보기로 한다.

2. 二元的 運用體制의 問題点

가. 指揮體系

用役警備는 용역경비업법 제11조 (報告 및 臨檢 등)와 제13조(監督), 그리고 용역경비업시행령 제10조 (경비원의 해면명령)에 의하여 지휘되고 있다. 즉, 용역경비업법 제11조에서 경비

찰청장이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실행된다. 그리고 임용 및 감독은 관할소재지 경찰서장이 하도록 되어 있다.

용역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구역이 2개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구역에 걸칠 때에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경비원의 임용은 경비업자가 경비원이 결격사유(용역경비업법 第7條)에 해당되지 않으면 임명할 수 있고 관할 도지사나 경찰서장이 근무상황 및 교육훈련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請願警察과 동일하다.

용역경비와 請願警察을 경찰과 비교해 보면 〈표 3-1〉과 같다.

현재 請願警察과 용역경비 운용에 있어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근무배치 등의 위임(請願警察法施行令 第19條 2항) 및 중요시설의 용역경비(用役警備業法施行令 第8條)에 관한 조항을 살펴보면, 용역경비업자가 중요시설의 경비를 도급받은 때에는 청원주는 그 事業場에 배치된 請願警察의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당해 용역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請願法施行令 第19條). 그리고 기관, 시설 또는 事業場에 請願警察에 의한 경비와 용역경비가 동시에 실시되는 경우에는 청원주는 경비의 효율화를 위하여 請願警察에 대한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용역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용역법시행령 第8條)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동일 경비시설물내에서 請願警察과 용역경비의 지휘체계는 용역경비업자에 위임되어 통일을 기할 수 있지만, 실제 업무집행에 있어 법집행 권한이나 임용 및 해임 등은 용역경비업자의 권한 밖에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경비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상에 알 수 있듯이 請願警察과 용역경비는 모든 면에 있어서 거의 유사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그 지휘체계, 법집행권한, 임용, 그리고 해임 등의 중요한 몇가지 사항에 있어서는 이원적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請願警察과 용역경비의 이원적 체제의 운용에 따른 효율성 문제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아래에서는請願警察과 용역경비의 이원적 체제운용에서 오는 문제점을 제시해 봄으로써 그 비효율성을 지적해 보기로 한다.

2. 二元的 運用體制의 問題点

가. 指揮體系

用役警備는 용역경비업법 제11조 (報告 및 臨檢 등)와 제13조(監督), 그리고 용역경비업시행령 제10조 (경비원의 해면명령)에 의하여 지휘되고 있다. 즉, 용역경비업법 제11조에서 경비

업의 허가관청 (내무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용역경비업자에게 업무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이 방문하여 검사하게 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 13조에서는 경찰청장이 용역경비업자를 지휘하고 명령하며,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은 수시로 관내의 용역경비업자와 경비원 배치장소에 임하여 근무상황 및 교육훈련상황 등을 감독하고 필요한 지시를 하게 하고 있다. 용역경비업 시행령 제10조 허가관청과 경비원의 배치지 관할 경찰서장이 근무태만한 경비원의 해면을 명할 수 있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제9조의 2(해임명령), 9조의 3(감독), 10조의 3(권한의 위임)과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8조(감독), 19조의 2(근무배치등의 위임) 그리고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5조(감독자의 지정) 등에 의하여 지휘되고 있다. 즉 청원경찰법 제9조의 2와 제9조의 3에 의해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원주를 지도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하고 결격사유가 발생한 청원경찰을 해임시킬 수 있다. 그리고 청원주는 항시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수행 상황을 감독하고 필요한 교양을 실시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8조에서는 관할 경찰서장이 매월 1회 이상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에 임하여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19조의 2에서는 용역경비업자가 중요시설의 경비를 도급받은 때에는 청원주는 그 사업장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근무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당해 용역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리고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15조는 2인 이상의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에서는 청원주가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지휘감독을 위하여 청원경찰중에서 유능한 자를 선정하여 감독자로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용역경비와 청원경찰의 지휘체계가 매우 흡사하다는 것이다. 관할 경찰서장의 지휘감독에 따르게 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각 사업장마다 용역경비업자나 청원주 등의 지휘가 실시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용역경비나 청원경찰 모두 관할 경찰서장의 지도하에 요원들의 근무수행 상황이 감독되고 필요에 따라 교육훈련이 실시되도록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근무의 지휘 및 감독은 용역업자 및 청원주가 임명한 전문적 경비지식을 가진 지역경비책임자 또는 사업장별 감독자 (소장, 반장, 조장, 부조장 등)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슷한 지휘체계하에 양립되어 있는 용역경비와 청원경찰의 존립은 효율적인 경비업무에 있어서 혼동이 야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앞 절에서도 지적한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9조의 2와 용역경비업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해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에 청원경찰에 의한 경비와 용역경비가 동시에 실시되는 경우 청원주는 경비의 효율화를 위하여 청원경찰에 대한 근무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용역경비업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그 혼란이 발생 한다. 즉, 동일 경비시설물내에서 용역경비업자가 용역경비원 뿐 아니라 청원경찰에게도 지휘체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으나, 그것이 청원경찰에 대한 임용 및 해임 등의 집행권한

까지 가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실질적인 지휘 및 감독이 실현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건 발생시 일관된 지휘체계로 책임있는 대응조치를 신속하게 강구할 수가 없는 관계로 경비업무의 능률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配置와 費用

용역경비업은 허가를 받은[22] 법인이면 누구나 시설물 경비를 원하는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경비업을 영위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사업장별로 고객과 용역경비업자의 임의대로 경비원의 배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청원경찰의 배치는 청원경찰법 제4조(청원경찰의 배치), 제9조(배치의 중지 등)과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2조(청원경찰의 배치신청 등), 제5조(배치 및 이동), 그리고 동 시행령 제13조(배치의 폐지 등)에 의하고 있다. 즉, 경비시설물의 청원주가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고자 하면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면 즉시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그 청원경찰의 배치 또는 중지, 이동, 폐지 등을 감독하고 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반대로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의 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청원경찰의 배치는 청원주의 자발적인 요청보다는 국가가 지정한 방호시설물의 등급(가,나,다 급)에 따라 의무적으로 청원경찰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만큼 청원경찰의 배치를 요하는 시설물의 중요성이 크다는 것이다.[23] 그러나 이같은 청원경찰의 배치는 청원주 또는 시설물의 경영자에게는 경비비용의 증가라는 경영비용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게 된다. 즉, 비슷한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청원경찰과 용역경비원의 소요비용을 비교하게 되고 나아가 경비담당자의 관리를 고려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청원주 또는 경영자는 보다 적은 비용과 수월한 관리를 택하게 됨으로써 청원경찰보다는 용역경비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대부분의 중요 경비대상시설물들에 있어서 특수한 경비대상 시설물 몇몇 분야를 제외하고는 청원경찰과 용역경비가 함께 경비하고 있거나 청원경찰의 배치를 차츰 용역경비쪽으로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다.[24] 자본주의 자유경쟁 시장체제에 입각해 경비업무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감안해 보면 사업주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 첫째로, 경비 비용지출의 측면에서 보면 청원경찰은

22) 허가는 禁治産者, 限定治産者, 禁錮이상의 형을 받은자, 이 법에 의해 영업허가를 취소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한 어떠한 사람도 법인을 구성하여 용역경비업을 신청하면 지방경찰청장이 허가하도록 되어 있다. 단, 영업구역이 2개 이상의 지방경찰청관할구역에 걸칠 때에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3) 실제로 원자력발전소나 방위산업체의 경우에는 시설내부에 청원경찰이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외곽지역에서는 군이나 경찰이 이중으로 경비하고 있다.

청원경찰법 제6조(청원경찰경비)에 의거해 청원경찰의 봉급, 제수당, 피복비, 교육비, 보상금, 퇴직금 등 청원경찰경비의 최저부담 기준액을 경찰청장이 매년 1월중에 경찰관중 순경의 경우에 준하여 고시, 지급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지급은 청원경찰 자체가 각 사업장의 소속 직원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각종 수당 등이 순경의 경우보다는 다소 많이 지급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용역경비원의 경우는 용역법인과 경비요청 고객의 자유계약에 의하기 때문에 청원경찰보다는 월등히 적은 금액으로 경비업무를 행하고 있다.[25]

둘째, 경영자의 소속직원 관리의 측면에서 보면 우선 경비원 배치의 문제에 있어 청원경찰은 경찰의 간섭이 지나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사업장을 개설할 때 경비업무는 그 이전이나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의 배치는 경찰의 배치승인이 난 뒤에서야 가능하다는 것이다[26]. 때로는 경비없는 사업장 개설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은 회사의 경영비용을 가지고 자유스럽게 활용하지 못한다는 불편함을 사업주에게 줄 수 있다. 그러나 용역경비의 경우는 요청과 동시에 경비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에서는 그 경비업무의 신속성에 있어서 만족을 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직원관리의 측면에서 사업주는 손쉬운 관리를 선택하게 되는데 특히 용역경비원을 사용할 때 그들은 노조설립을 못하는 등의 수월한 관리가 가능하나 업체의 소속직원화되는 청원경찰의 관리에는 그에 따르는 직원 운영의 불편함이 생길 수 있어 용역경비를 더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국가의 요청으로 배치되는 청원경찰의 경비분야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감안해 시급한 문제해결방안의 도출이 필요해진 시점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동일한 근무조건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도 請願警察에 비해 낮은 보수를 지급받는 사경비업체 요원들의 근본적인 사기저하 요인을 비롯, 청원경찰법과 용역경비업법의 이원체제적 운용에 의한 指揮體系上의 問題 등의 상대적 갈등 요소들로 인하여 사경비업체 종사자들이 職務와 組織에 대한 愛情을 갖지 못하고 높은 早期移職率을 보임으로써 경비인력의 절대부족 현상의 심화로 이의 충원을 위해 자격미달자나 부적격자들까지 부득이 임용해야하는 惡循環的 狀況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

24) 이 같은 사례는 특히 금융기관에서 볼 수 있는데 심지어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법에도 존재하지 않는 "用役請警"을 두고 있을 정도이다. 용역청경이란 용역경비업체로부터 파견되어 청원경찰의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에는 후술 하는 청원경찰의 총기휴대 의미의 퇴색도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25) 용역경비의 1인당 요율표는 다음과 같다.
〈표 4-1〉 (후면)
한편, 94년 1월 19일 고시된 청원경찰의 요금은 다음과 같다.
〈표 4-2〉 (후면)

26) 이러한 사례는 극히 일부 금융기관에 있어서 지점이나 출장소 개설할 때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다. 身分

청원경찰과 용역경비원은 청원경찰법과 용역경비업법에 민간인 신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원경찰법 제32조(청원경찰의 직무)를 살펴보면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 및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내에 한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경비구역 내에서 경비근무를 실시하고 있을 경우에만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일시적인 권한 위임에 불과한 것이다.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9조(청원경찰의 신분)을 살펴보면 "청원경찰에 대하여서는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의 적용과 법 및 이 령에서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무원이라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원경찰에 의하여 이루어진 불법행위에 대한 보상책임도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청원법 제10조 2항)"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원경찰은 명백하게 신분상에 있어 민간인 신분임을 밝히고 있다.

한편 청원경찰법 제10조(직권남용금지 등)에 의하면 "청원경찰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벌칙적용의 경우에만 공무원의 신분을 적용하는 관계로 청원경찰에 대한 이중적인 신분적용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즉, 청원경찰의 손해배상 문제는 민간인 신분 적용을 받고 형사책임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신분을 적용받는 모순을 보이고 있는 점으로, 청원경찰은 경찰공무원도 민간경비원도 아닌 이원적인 법적 지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있어 책임의 한계와 신분상의 갈등을 겪고 있다. 그러나 용역경비원의 경우는 철저하게 민간인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청원경찰의 상대적인 심리적 불안이 경비수행에 있어 사기저하의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라. 武器携帶

청원경찰의 무기휴대는 청원경찰법 제8조(제복착용과 무기휴대)에 근거한다. 즉, 제8조 2항은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의 2(분사기의 휴대)와 동 시행령 12조(무기휴대) 그리고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8조(무기관리수칙) 등으로 대여된 무기의 안전관리수칙, 무기관리사항 점검, 탄약출납상황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청원경찰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방범차원보다는 국가안보적 차원이 크게 작용해 청원경찰의 총기소지가 중시되었다. 그리고 대공위험상황과 보다 완벽한 시설경비라는 측면에서

청원주들은 총기를 소지한 청원경찰을 용역경비원보다 선호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국가안보적 기능이 점차로 완벽하게 군과 경찰에 의해 이루어지면서 청원경찰의 기능이 방범기능쪽으로 많은 비중을 두게 되었다. 결국 청원경찰이 무기를 휴대해야 할 이유가 몇몇의 특정 시설물을 제외하고는 퇴색되고 말았다. 따라서 청원경찰의 총기소지에 대한 효용성과 존속의 필요성 문제가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이와같이 국가 중요시설물에 대한 보호나 출입자 통제를 위하여 총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사용목적과 사용수단간의 형평성을 잃고 있어, 실제 금융기관에서는 시민의 인명보호 차원과 총기사용에 따른 사회적 물의를 방지하기 위해서 청원경찰들의 총기사용을 적극 제한하고 있다. [27] 더욱이 총기조작 2시간, 총검술 2시간, 사격 6시간의 교육으로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5조로 총기를 취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 같은 교육훈련의 부족을 우려 총기취급에 따른 안전사고의 사전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평상시에는 실탄과 권총을 분리 휴대하게 하거나 대부분의 경우는 가스총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28]

日本의 경우는 경비업법 제정 당시부터 엄격하게 무기휴대를 금지하고 있다(경비업법 제10조). 심지어는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현금이나 귀금속의 수송에 있어서도 총기는 물론 가스총의 휴대까지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대신 일본에서는 사경비업의 오랜 전통에 입각해 잘 훈련된 경비원들의 조직적인 활동과 전국적인 대규모 통신위성망의 활용으로 범죄조직에 적절히 대처하고 있어 이러한 사례들이 한국 민간경비 활성화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미국에서도 경비원의 총기휴대를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교육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사경비 자문위원회에서는 무장을 요하는 경비원에 대해 72시간의 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경비원의 총기휴대와 관련해서는 전세계적인 추세가 금지 또는 현격한 감소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례로 20년전에 미국의 Rand사에서 실시한 연구에 의하면 약 절반가량의 용역경비원들이 총기를 휴대했다고 밝혔으나, 1981년에 Hallcrest에서 시행한 조사에 의하면 경비원의 10%미만만이 총기를 휴대한 것으로 밝혀 졌으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에서도 제정 당시의 안보적 상황에 의해 불가피하게 무기휴대를 허용해야 했던 청원경찰은 이제 그 전환을 맞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분명 아직도 무기휴대가 필요한 사업장이 존속

27) 姜大立, "우리나라 私警備 實態에 관한 硏究", 延大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28) 현재 금융기관의 경우는 거의 100% 가스총으로 대체되고 있다. 연말연시나 특별경계근무 경우에는 지역경찰관의 지원을 통하여 경비효율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기지급된 무기는 대부분 본점의 무기고 등에 보관되어 있다고 한다.

하고 있음도 사실이나 대부분의 경우가 청원경찰의 무기휴대가 필요한 상황은 아닌 것이다. 더욱이 최근의 첨단기술에 의한 기계경비의 발달은 청원경찰의 무기휴대 의미를 더욱 가속적으로 퇴색시킬 것이다.

3. 二元的 運用體制의 改善方案

가. 統合·單一化의 必要性

사경비체계의 단일화란 현행 사경비의 양체계인 청원경찰제와 용역경비제를 일원화시키는 것을 뜻하며, 이에는 경찰조직에 배속되어 있는 민간인 신분의 防犯隊員이나 民間 機動巡察隊員까지를 사경비에 흡수시키는 통합을 의미한다.

이원화체제에 대한 논란은 청원경찰이 창설되었던 시기와는 내외적 여건이 크게 변화되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변화의 양상은 다음 세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한반도 및 주변국제정세의 질적인 변화에 따라 사경비기능이 경비위주에서 방범위주로 전환되는 추이

둘째, 경비절감효과와 같은 경제적 동기에서 청원경찰 대상업체가 민간용역 경비업체로 전환되는 현상

셋째, 총기소지 및 사용권한의 범죄억제효과에 대한 신뢰약화. 즉, 총기소지는 군과 경찰등 극히 제한된 부문으로 축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

첫째 문제는 한반도의 안보적 측면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식이 반드시 일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경비의 기능이 경비위주에서 방범위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며, 이러한 사실이 이원적 체제를 또 다른 형태로 재정립하여야 한다는 견해의 기반이 되고 있다.

두번째의 경제적 측면을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해 보면, 실제로 청원경찰 대상시설까지도 청원경찰보다 용역경비가 비용지출면에서 저렴하고 노조설립에 대한 문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관리상의 이점을 이유로 용역경비에 의존하는 추세에 있으며, 불가피하게 청원경찰을 두어야 하는 일부 기관에서는 청원경찰과 용역경비원에 의해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심지어 법제도상 존재하지 않는 소위 '用役請警'제도[29]를 운용하고 있을 정도이다. 用役請警 문제는 해당 관청과 업계간의 준법의무와 경제적 논리 혹은 생존권에 관련된 만큼 빠른 시일내에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29) "용역청경"이란 법규상으로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므로(위법사항) "국가행정쇄신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경찰청에서 시정명령을 한 바 있다.

하고 있음도 사실이나 대부분의 경우가 청원경찰의 무기휴대가 필요한 상황은 아닌 것이다. 더욱이 최근의 첨단기술에 의한 기계경비의 발달은 청원경찰의 무기휴대 의미를 더욱 가속적으로 퇴색시킬 것이다.

3. 二元的 運用體制의 改善方案

가. 統合·單一化의 必要性

사경비체계의 단일화란 현행 사경비의 양체계인 청원경찰제와 용역경비제를 일원화시키는 것을 뜻하며, 이에는 경찰조직에 배속되어 있는 민간인 신분의 防犯隊員이나 民間 機動巡察隊員까지를 사경비에 흡수시키는 통합을 의미한다.

이원화체제에 대한 논란은 청원경찰이 창설되었던 시기와는 내외적 여건이 크게 변화되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변화의 양상은 다음 세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한반도 및 주변국제정세의 질적인 변화에 따라 사경비기능이 경비위주에서 방범위주로 전환되는 추이

둘째, 경비절감효과와 같은 경제적 동기에서 청원경찰 대상업체가 민간용역 경비업체로 전환되는 현상

셋째, 총기소지 및 사용권한의 범죄억제효과에 대한 신뢰약화. 즉, 총기소지는 군과 경찰등 극히 제한된 부문으로 축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

첫째 문제는 한반도의 안보적 측면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식이 반드시 일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경비의 기능이 경비위주에서 방범위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며, 이러한 사실이 이원적 체제를 또 다른 형태로 재정립하여야 한다는 견해의 기반이 되고 있다.

두번째의 경제적 측면을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해 보면, 실제로 청원경찰 대상시설까지도 청원경찰보다 용역경비가 비용지출면에서 저렴하고 노조설립에 대한 문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관리상의 이점을 이유로 용역경비에 의존하는 추세에 있으며, 불가피하게 청원경찰을 두어야 하는 일부 기관에서는 청원경찰과 용역경비원에 의해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심지어 법제도상 존재하지 않는 소위 '用役請警'제도[29]를 운용하고 있을 정도이다. 用役請警 문제는 해당 관청과 업계간의 준법의무와 경제적 논리 혹은 생존권에 관련된 만큼 빠른 시일내에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29) "용역청경"이란 법규상으로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므로(위법사항) "국가행정쇄신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경찰청에서 시정명령을 한 바 있다.

세번째 문제와 관련하여, 청원경찰이 용역경비와 가장 큰 차이점은 경비구역내에서 警察官職務執行法에 의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점과 武器 및 彈藥을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두가지 실제적 기능은 이미 퇴색된지 오래이며, 특히 후자의 무기휴대의 경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청원주가 오히려 무기휴대를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총기소지 권한의 필요성 자체를 재고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단지 6시간의 사격훈련(청원경찰법 시행규칙 별표 I)으로 총기를 취급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최근 국내외에서 빈발하는 총기사고를 고려해 볼 때 극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반드시 武器携帶가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비업무의 성격에 따른 필요성 여부와 경비원의 자질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경비업무의 差別化 및 경비원의 等級化 등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점에서 일본의 경비업법이 무기휴대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동법 제10조). 무기휴대에서 오는 실증되지 않은 상징적 억제효과에 의존하여 청원경찰을 존속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尖端裝備의 개발에 의한 機械警備 分野의 발전을 간과한 단견이며 사경비체제의 전문화를 저해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양제도의 통합 필요성으로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현시점에서 兩制度의 별도 분리운영이 實益이 없다는 점이다.

청원경찰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사경비가 제도적으로 확립되기 이전의 경찰력 보충수단의 편법적 제도로, 설립 당시 南北의 對峙狀態로 인한 緊張高潮로 安保的 次元에서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라는 중임을 부여할 과도기적 필요성이 인정되었으나, 1976년 용역경비업법 제정이래 사경비산업의 발전으로 분리운영의 의미가 거의 없어졌다고 보겠다. 또한 남북화해의 대화분위기 성숙으로 인한 청원경찰법 입법취지가 희석되었다.

둘째, 분리운영의 비합리성이다.

청원경찰의 경우, 경비업무는 경찰의 고유업무가 아닌 副次的인 영리업무이고 행정기관의 감독과 임용승인 및 비용부담 등을 시설주측에서 수인하여야 하는 비합리적인 요소가 많아 시설주측의 기피경향이 현저하다.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 용역경비에 의한 경비업무의 민영화를 도모한 것이 현재의 용역경비업법으로, 사용상의 번거러움이 없을 뿐 아니라 손해배상책임까지 지고 있는 사경비의 이용 및 육성이 보다 바람직하겠다.

셋째, 사경비체제의 전문성 확보를 기하기 위함이다.

오늘날 미국, 일본, 독일 등의 경우에도 사경비는 일원적 체제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는 업무상의 동질성, 민간인 신분 등 단일체계인 경우에 전문적 경비체계 구축이 용이하다는 점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 일부 시설에는 청원경찰과 용역경비가 혼합배치되어 경비업무의 효율성이 沮

害되고 있는 점 등을 보더라도 경비지휘체제를 용역경비로 단일화 시킴으로써 전문적인 경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30] 고 본다.

나. 統合·單一化 方案 및 方法論

80년대 이후부터 사경비부문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청원경찰제도와 민간용역경비제도가 양립되어 병존함에 따른 법적, 그리고 운영상 등 여러면에서의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이에 따른 위법적, 비효율적 현상을 개선하고자 하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이에 아래에서는 향후 개선가능성을 고려하여 세가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단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개선방안에 있어서도 현재 양제도에 의해 종사하고 있는 기존의 청원경찰요원과 용역경비원이 기존제도내에서 보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제 1 안 : 청원경찰법을 유지하고 용역경비업법을 폐지하여 단일화 시키는 방안

이 방안은 청경제도를 존속시키고 용역경비원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으로, 긍정적인 측면을 찾는다면 다음 세가지 점에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주요시설의 경비에 대한 우려를 상대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둘째, 상대적이고 잠정적이지만 경비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셋째, 경비원의 임금이 상향조정될 수 있다.

한편 부정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첫째, 남북대치구도와 주변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반도내 정세에 대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한다. 둘째, 사경비의 기능이 경비중심에서 방범중심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 셋째, 민간기업의 참여가 봉쇄됨으로써 장기적으로 기계경비업의 발전을 저해한다. 넷째, 기존의 용역경비업체와 경비원들에 대한 사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 2 안 : 용역경비업법을 유지하고 청원경찰법을 폐지하여 단일화시키는 방안

이 방안은 용역경비제도만 존속시키고 청원경찰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자는 것으로,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첫째, 사경비분야가 완전 민영화됨으로써 보다 전문화가 촉진되고 탄력적 운영이 실현된다. 둘째, 民官간에 방범업무에 대한 역할분담의 방향이 정립되는 데 기여한다. 셋째, 기계경비업의 발전이 촉진되어 시장개방에 대비한 대외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넷째, 경비비용이 절약될 수 있다. 다섯째, 민간인에 의한 총기휴대가 불가능해짐으로써 민간인의 총기휴대, 관리 및 사용에서 초래되는 우려가 감소된다.

부정적인 측면은 첫째, 국가안보상황에 대한 인식차이에 의해 국가주요시설보호에 대한 우려를 낳을 수 있다. 둘째, 청원경찰의 준경찰적 기능과 총기소지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일반예방

30) 李相安, 현대경찰행정학(서울: 형설출판사, 1990), 699쪽.

효과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셋째, 기존 청원경찰에 대한 사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인경비의 경우 전반적인 사경비원의 임금수준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제 3 안 : 두 법을 모두 폐지한 후 새로운 단일법안을 제정하는 방안

이 방안은 장기적인 案으로서 용역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모두 폐지하고 예컨대 '民間防犯에 관한 基本法'(假稱 '民間防犯基本法')과 같은 새로운 통합법안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 법안은 기존의 청원경찰법과 용역경비업법, 보완이 시급한 기계경비분야, 그리고 일반기업이나 공동주택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체경비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민간방범기본법'은 향후 21세기의 한국사경비 발전방향을 예측하는 시각에서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적인 방향은 세계화(globalization), 민영화(privatization), 지역사회화(community化)의 세가지 큰 틀속에서 새로운 유형의 방범수요에 걸맞는 세계적이고 전문적이며 지역특성에 적합한 경비공급을 창출하는 시각에서 출발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세가지 장기적인 개선방안 외에 민간방범역량 제고차원에서 단기적으로 두 제도를 존속시키되 청경업무와 용역업무의 그 고유특성을 고려하여 양제도의 담당부서를 분리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방안은 두 법을 존속시키면서, 각 제도가 안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절충하자는 것으로 단기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案이라고 볼 수 있다. 이 案은 용역경비의 업무가 사실상 방범업무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고려하여, 용역경비와 청원경찰의 업무를 방범기능(용역경비관장)과 경비기능(청경업무관장)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기능에 상응하는 업무분담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 경찰조직내의 경비과와 방범과의 사경비관련 업무영역을 재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는 경비과 업무중 방범업무에 가까운 용역경비 관련업무를 방범과로 이관하고 청경업무는 경비과에서 계속적으로 관장하되, 현 청원경찰 대상업체 및 기관의 경우에도 시설경비의 중요도를 전면 재검정하여 관할업체 및 기관을 최소화하고 기타 분야는 용역경비로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최종적으로 재선정된 국가주요시설에 대한 경비방식에 있어서도 장차원시적 형태의 'guard'수준의 경비를 초월하여 국가기밀 및 정보보호적 차원의 경비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 새로운 형태의 경비수요와 경비방식에 걸맞는 새로운 체제가 요구되므로써, 경비조직과 경비담당인원 역시 현재의 경비부서와 청원경찰수준을 초월한 기관의 정규부서와 정식직원으로 승격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방안이 실시되면 현재 자연감소 추세에 있는 청원경찰의 역할이 계속 축소되어, 차후 사경비업무 전체를 총괄하는 단일법의 추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안보적 측면에서 국가

주 4-1

경 비 요 율 표

구분		금 액	산 출 내 역	근 거
기본임금		시간당 1,754	1일 8시간, 주44시간근무, 주휴유급 =396,500÷226시간	순경(경찰)임금기준
직접노무비	1.기본급여	396,500	396,500×226시간	
	2. 연장수당	45,674	1,754×4시간×150/100×4.34주	근로기준법 제46조
	3. 국경공휴수당	71,095	1,754×30.4일×8시간×1/3×50/100	〃
	4. 월차유급수당	31,572	1,754×18일×8시간×1/12×150/100	〃
	5. 월차유급수당	21,048	1,754×1일×8시간150/100	근로기준법 제47조
	6. 직무수당	0		
	7. 소계	565,889	(1-6)(+)	
	8. 년차유급수당	17,540	1,754×10일×8시간×1/12×150/100	근로기준법 제48조
	9. 상여금	99,125	396,500×300/100×1/12	기본급여의 300%
	10. 퇴직적립금	56,880	682,554×1/12(7+8+9)	근로기준법 제23조
	11.소계	173,545	(8+9+10)	
	12.계	739,434	(7+11)	
간접노무비	13. 피복장구비	21,654	259,850×1/12	피복 및 제장구류
	14. 산재보험료	3,413	682,554×5/1,000(7+8+9)	산재보험법 제21조에 의거 평균임금의 5/1,000
	15. 건강진단료	1,128	13,540×1/12	'93년도건강진단료
	16. 의료보험료	8,173	544,841×15/1,000(1+2+3+4+6)	기본급여+제수당의 1.5%
	17. 국민연금	13,651	682,554×20/1,000(7+8+9)	국민연금법 제75조 및 부칙 제4조에 의거표준보수 월액의 20%
	18. 위험부담금	6,825	682,554×1/100(7+8+9)	손해배상보장(기본급여-제수당의 1%)
	19. 소계	54,844		
	20. 교육훈련비	4,793	(57,165원+57,867원)×1/2×1/12	'94년도청경교육비기준
	21. 일반관리비	39,954	799,071×5/100(12+19+20)	계약사무처리규칙 제8조①항 12호에 의거
	22. 소계	44,747	(20+21)	
	23. 계	99,591	(19+22)	
2. 이익금		83,903	839,025×10/100(12+23)	계약사무처리규칙 제8조②항 4호에 의거
합 계		922,928	(12+23+24)	(부가세 별도)

자료 : 한국경비협회 94. 4월호 회보

주 4-2

◎ 경찰청고시 제 1994-1호

'94년도 청원경찰경비기준액

청원경찰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94년도 청원경찰운영상 소요되는 경비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4년 1월 19일
경찰청장

1. 청원경찰경비기준액

가. 기본급 (월지급액, 단위:원)

호 봉	금 액	호 봉	금 액
1	357,000	16	643,500
2	377,000	17	659,000
3	396,500	18	674,500
4	416,000	19	690,000
5	435,500	20	705,500
6	456,000	21	716,500
7	476,500	22	727,600
8	497,000	23	738,500
9	517,500	24	749,500
10	538,000	25	760,500
11	556,000	26	769,000
12	574,000	27	777,500
13	592,000	28	786,000
14	610,000	29	794,000
15	628,000	30	803,000

나. 감독자 직책수당(월지급액)
- 대장 : 30,000원
- 반장 : 20,000원
- 조장 : 10,000원

다. 장기근속수당(월지급액)

근 무 연 수	지 급 금 액
5년이상~10년미만	40,000만원
10년이상~15년미만	50,000만원
15년이상~20년미만	60,000만원
20년이상	80,000만원

2. 청원경찰 경비의 최저부담기준액
가. 기본급 : "1"항 "가"호로 한다.
나. 제수당 : "1"항 "나"호,"다"호로 한다.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가. "2"항,"가"호, "나"호의 최저부담기준액이외에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를 경찰관 순경에 준하여 지급한다.
나. "가"호 이외의 기타 제수당은 자체예산이 편성된 항목 범위내에서 경찰관 순경에 준해 지급한다.

4. 국영기업체 및 개인기업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가. "2"항, "가"호, "나"호의 최저부담기준액이외의 제수당을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자체내규에 의하여 지급하되, 이에대한 취업규칙이나 자체내규가 없을 때에는"3"항 "가"호, "나"호에 준하여 지급한다.

5.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호봉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국영기업체 및 개인기업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자체 내규에 의한다.

6. 교육비
가. 기본교육비 : 기본교육 미이수자 2주간 교육기준
- 하절기 (4.1~10.31) : 57,165원
- 동절기 (11.1~3.31) : 57,867원

나. 정기사격비 : 직무교육시 연 2회(상 하반기) 40발 : 6,400원

7. 피복비 : 청원경찰의 피복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호에 의거 경찰관 순경의 복제지질에 준하여 청원주가 조제 또는 구입하여 현품으로 지급한다.

8. 위 경비이외의 청원경찰의 교육, 출장 기타 직무수행상 소요되는 여비는 청원주가 국내 여비규정상의 경찰관 순경에 준하여 지급한다.

9. 적용일 : 1994년 1월 1일

자료 : 한국경비협회 94.4월호 회보

주요시설에 대한 기준이 축소 재조정되므로서, 현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용역청경'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지역사회내 방범역량의 제고적 측면에서 볼 때, 방범계통의 民官조직간의 연계 (비상연락망 구축등)를 원활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Ⅳ. 警備員의 敎育·訓練

1. 敎育·訓練의 強化 : 警備産業의 專門化를 위한 捷徑

경비산업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는 일을 담당하는 분야이며, 경비원의 업무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의 안전과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공공적 성격을 지니는 직업이다. 경비원은 경비업무중 발생하는 각종 사안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적법하고 타당하게 대처하도록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경비원들에 대한 전문적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게 되며 경비업무가 적절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대처능력을 가지고 엄정한 규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오늘날 경비업무자체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교육과 훈련에 대한 요구사항도 증가하고 있다. 우수인력의 확보, 적절한 훈련의 실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등은 사경비업계의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특히 교육과 훈련의 강조는 경비업계와 경비업무 근무자들이 사회적으로 신뢰를 얻고 경비산업이 전문직으로서 성장해 나아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사항으로서 사경비업의 존립과 회사의 발전을 좌우하는 핵심적 사항이다.

즉, 다양한 경비업무 분야에 있어서 적절한 교육과 관련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을 받고, 잘 통제된, 유능한 인력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이것이야말로 전문화를 향한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전문성에 대한 추구에는 교육과 훈련에 대한 한층 강화된 기준들이 요구되며, 전세계적으로 교육과 훈련의 강화를 요구하는 법과 규정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오늘날 다양하고도 전문화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요구와 경비시장개방 등의 시대적인 변화에 의해서, 그리고 경비산업 자체적으로도 생존전략의 일환으로서 전문적 직업인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에 교육·훈련의 중요성이

주요시설에 대한 기준이 축소 재조정되므로서, 현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용역청경'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지역사회내 방범역량의 제고적 측면에서 볼 때, 방범계통의 民官조직간의 연계 (비상연락망 구축등)를 원활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Ⅳ. 警備員의 敎育·訓練

1. 敎育·訓練의 強化 : 警備産業의 專門化를 위한 捷徑

경비산업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는 일을 담당하는 분야이며, 경비원의 업무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의 안전과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공공적 성격을 지니는 직업이다. 경비원은 경비업무중 발생하는 각종 사안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적법하고 타당하게 대처하도록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경비원들에 대한 전문적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게 되며 경비업무가 적절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대처능력을 가지고 엄정한 규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오늘날 경비업무자체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교육과 훈련에 대한 요구사항도 증가하고 있다. 우수인력의 확보, 적절한 훈련의 실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등은 사경비업계의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특히 교육과 훈련의 강조는 경비업계와 경비업무 근무자들이 사회적으로 신뢰를 얻고 경비산업이 전문직으로서 성장해 나아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사항으로서 사경비업의 존립과 회사의 발전을 좌우하는 핵심적 사항이다.

즉, 다양한 경비업무 분야에 있어서 적절한 교육과 관련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을 받고, 잘 통제된, 유능한 인력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이것이야말로 전문화를 향한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전문성에 대한 추구에는 교육과 훈련에 대한 한층 강화된 기준들이 요구되며, 전세계적으로 교육과 훈련의 강화를 요구하는 법과 규정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오늘날 다양하고도 전문화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요구와 경비시장개방 등의 시대적인 변화에 의해서, 그리고 경비산업 자체적으로도 생존전략의 일환으로서 전문적 직업인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에 교육·훈련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사경비원들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매우 낮은 훈련을 받아왔고, 최저수준의 임금과 전무하거나 매우 낮은 승진기회등으로 인하여 대체적으로 학력수준이 매우 낮고, 사회적으로 최저 수준의 실직자, 노약자 등으로 그 주종을 이루어 왔다. 그로 인하여 높은 이직율, 비효율적인 업무집행, 업무의 전문성결여 등의 많은 문제들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해온 것이 우리의 경비업계의 실정이었다.(〈그림 4-1〉 참조)

〈그림 4-1〉 사경비의 악순환(The vicious circle of private secur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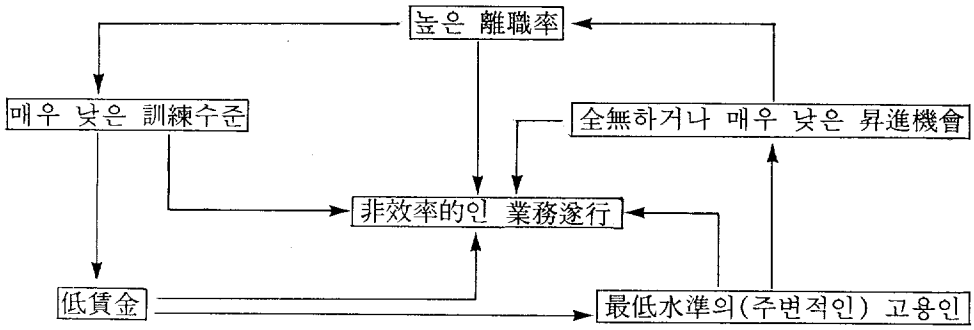

출처 : 미국의 형사사법제도 표준과 목표에 관한 전국 자문위원회, 1976. "사경비:사경비에 관한 특별위원회의 보고서." (p.13에서 발췌)

사경비업계의 경영자들은 이러한 경비업계의 악순환과 그에 따른 높은 이직율문제에 대해서 매우 방어적인 입장을 취해왔는데 그들의 주요한 항변은 그들이 더 좋은 수준의 보수를 주고자 하여도 고객들이 그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필라델피아지역에서 조사된 사경비특별위원회의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경비를 사용하고 있는 72%의 고객들이 경비원의 자질과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면 기꺼이 더 많은 비용을 제공하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사경비원들에 대한 훈련의 부족은 지난 수십년 동안 고객들 뿐만 아니라 공적인 법집행관들, 또한 사경비분야의 종사자들에게 있어서도 우려의 주요대상이 되어 왔다. 이러한 교육과 훈련의 부족에 대한 우려는 1989년 여름에 열린 국제경비회의에 참석한 사경비관련 근무자들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도 분명히 드러났다. "귀하가 생각하기에 사경비업계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가장 빈도수가 많은 응답은 "훈련의 부족"으로 26%를 차지하였다. 그 뒤를 이어 제품의 표준성과 상호연결성 결여(18%), 경비원에 대한 낮은 보수(14%), 최고경영자의 지원부족(10

%), 보험비용(8%) 등으로 나타났다(Hallcrest보고서Ⅱ, 1990. p.144--150).

따라서 교육과 훈련, 보수, 승진기회, 그리고 업무수행의 질 등의 측면에서 중요한 진보가 있지 않고서는 경비업계의 질적 성장은 쉽사리 기대할 수 없을 것이고, 또한 근무자들의 높은 이직율은 계속될 것이며 이는 사경비업계의 발전과 전문화를 저해하는 치명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전문화란 교육과 훈련, 전문적 연구와 개발, 그리고 학문적인 뒷받침의 강화와 그에 따른 강력한 실천의지 등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전문성의 추구에는 한층 강화된 훈련에 대한 기준들이 요구된다.

사업자에 의한 종업원의 교육 및 지도감독은 통상 기업의 자주적인 노력으로 행해지는 것이지만, 경비업무의 공공적 성격상 종사하는 경비원에 대한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지식과 기능에 대해서 경비업자의 지도감독하에 교육과 지도감독을 이행케 할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훈련과 교육의 강화를 요구하는 인허가법과 관련규정들의 증가추세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2. 韓國의 敎育·訓練 現況

가. 법규정과 현실간의 괴리

용역경비원과 청원경찰로 구분되어 있는 한국 사경비업의 교육과 훈련에 관한 규정은 각기 용역경비업법 시행령 제14조(교육)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교육),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5조(교육기간 등), 동 시행규칙 제6조(직무교육) 등에 의하여 신임교육과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용역경비원의 경우 신임교육 10일간에 걸쳐서 총68시간을 받아야 하며 매월 4시간씩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신임교육과 보수교육은 이를 실시하는 주체와 과목이 다르다. 〈표 4-1〉은 용역경비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와 실시주체 등을 나타낸다.

처음에는 용역경비원의 신임교육은 협회에서만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으나 1990년 6월에 교육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용역경비업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경비업의 신속한 성장과 함께 상대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할 경비원의 수가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신임교육을 협회에서만 한다는 것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경비원의 신임교육이 용역업자에 위탁된 개정안은 용역경비업체들이 충실히 이를 잘 이행한다면 교육일자의 선택과 적정대상에 대한 실질적 사항을 교육할 수 있다는 점에

%), 보험비용(8%) 등으로 나타났다(Hallcrest보고서Ⅱ, 1990. p.144--150).

따라서 교육과 훈련, 보수, 승진기회, 그리고 업무수행의 질 등의 측면에서 중요한 진보가 있지 않고서는 경비업계의 질적 성장은 쉽사리 기대할 수 없을 것이고, 또한 근무자들의 높은 이직율은 계속될 것이며 이는 사경비업계의 발전과 전문화를 저해하는 치명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전문화란 교육과 훈련, 전문적 연구와 개발, 그리고 학문적인 뒷받침의 강화와 그에 따른 강력한 실천의지 등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전문성의 추구에는 한층 강화된 훈련에 대한 기준들이 요구된다.

사업자에 의한 종업원의 교육 및 지도감독은 통상 기업의 자주적인 노력으로 행해지는 것이지만, 경비업무의 공공적 성격상 종사하는 경비원에 대한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지식과 기능에 대해서 경비업자의 지도감독하에 교육과 지도감독을 이행케 할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훈련과 교육의 강화를 요구하는 인허가법과 관련규정들의 증가추세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2. 韓國의 敎育·訓練 現況

가. 법규정과 현실간의 괴리

용역경비원과 청원경찰로 구분되어 있는 한국 사경비업의 교육과 훈련에 관한 규정은 각기 용역경비업법 시행령 제14조(교육)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교육),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5조(교육기간 등), 동 시행규칙 제6조(직무교육) 등에 의하여 신임교육과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용역경비원의 경우 신임교육 10일간에 걸쳐서 총68시간을 받아야 하며 매월 4시간씩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신임교육과 보수교육은 이를 실시하는 주체와 과목이 다르다. 〈표 4-1〉은 용역경비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와 실시주체 등을 나타낸다.

처음에는 용역경비원의 신임교육은 협회에서만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으나 1990년 6월에 교육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용역경비업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경비업의 신속한 성장과 함께 상대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할 경비원의 수가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신임교육을 협회에서만 한다는 것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경비원의 신임교육이 용역업자에 위탁된 개정안은 용역경비업체들이 충실히 이를 잘 이행한다면 교육일자의 선택과 적정대상에 대한 실질적 사항을 교육할 수 있다는 점에

서 다소 장점을 가진다고 하겠다.

〈표 4-1〉 용역경비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와 실시 주체

교육종류 / 구 분	신 임 교 육	보 수 교 육
1. 교육시기	· 경비원으로 임용되어 근무배치전	·경비원으로 임용되어 근무중
2. 교육실시 주 체	· 경찰교육기관 · 협회 · 협회로부터 신임교육 위탁을 받은 용역경비업자	· 용역경비업자
3. 교육과목	· 법정되어 있음	·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과목 (아직 내무부령으로 과목이 정해진 바 없음)
4. 교육시간	· 68시간 10일	매월 4시간
5. 교육 책임자	· 경찰관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자 · 경찰청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자 (아직 자격을 인정한 바 없음)	· 제한 없음
6. 교육 이수증	· 협회에서 이수증 발급 · 용역경비업자는 신임교육을 받은 자의 명부 비치	· 없 음
7. 미실시한경우	· 행정처분 있음	· 행정처분 있음

보수교육에 대해서는 이러한 위탁규정이 없이 처음부터 용역 경비업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내용에 대해서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31] 시간도 월 4시간이므로 4시간 계속되는 보수교육이든 하루 1시간씩 나흘간의 교육이든 무방하다. 다만 보수교육이 형식적 요식행위가 될때는 최고 허가취소까지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한편, 청원경찰의 경우 기본교육(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5조)과 직무교육(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6조)으로 구분되며, 2주간에 걸친 총 76시간의 기본교육과 매월 4시간

31) 용역경비협회에서는 정신교육, 현장실습, 무술훈련, 시청각교육 등 근무현장에서의 강조 사항을 중점 교육시키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상의 직무집행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본교육은 청원경찰로 임용된 자에게 경찰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말하는데, 관할 경찰서장이 소속공무원을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에 파견하여 매주 2시간씩 하는 교육과 청원주가 소속 청원경찰에 대하여 매월 4시간 이상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사경비원의 교육에 대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교육과목과 시간은 다음과 같다. 우선 용역경비원의 신임교육내용은 훈화(2시간), 새마을 교육(4시간), 용역경비업 관계법(5시간), 청원경찰 관계법(2시간), 헌법 및 형사법(8시간), 시설방호(5시간), 대공이론(5시간), 불심검문 요령(2시간), 민방위총론(2시간), 민반공(2시간), 화생방(2시간), 소방(8시간), 기본훈련(5시간), 봉술(3시간), 체포술 및 호신술(3시간), 평가(4시간), 예비(6시간)로 총 68시간이다.

청원경찰의 기본교육 내용은 총 76시간으로 정신교육(8시간), 형사법(10시간), 청원경찰법(5시간), 경찰관직무집행법(5시간), 방범(3시간), 경범죄처벌법(2시간), 시설경비(6시간), 소방(4시간), 대공이론(2시간), 불심검문(2시간), 민방공(3시간), 화생방(2시간), 기본훈련(5시간), 총기조작(2시간), 총검술(2시간), 사격(6시간), 체포술 등(6시간), 평가(3시간)로 구성되어 있다.

용역경비원과 청원경찰에 대한 상기의 교육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현행의 교육관련 규정은 교육과목이 너무 많고 그 내용도 매우 비현실적이며, 업무별 특성을 감안한 교육내용등이 결여됐다는 문제점들이 제기된다. 실제 사경비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지식습득의 교육이기보다는 경찰 또는 군부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본교육들로 채워져 있다. 아직도 70년대식의 새마을교육 등이 남아있다는 점만 보아도 현재 한국사경비분야의 교육제도가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져 있으며 현실과 유리된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는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용역경비업체의 경우 실제로는 인력과 예산의 부족, 교육장, 교관의 부족등으로 인해 하루나 이틀 정도의 형식적 교육만 끝내고 현장에 배치한 뒤 보수교육으로 대치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청원경찰의 경우도 총기조작 2시간, 총검술 2시간, 사격 6시간 등 총 10시간의 총기에 관한 교육으로 무기휴대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이 가능할지는 지극히 의심스럽다. 결국 현실과 동 떨어진 교육규정이 오히려 사경비업의 질저하를 유도한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조사에 의하면 용역경비원의 신임교육과 보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업체는 7% 수준이었으며 교육장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도 6.6%정도였다.[32] 이처럼 영세한 한국 사경비업에서 현행의 법규정을 강조하는 것은 무리이나 교육훈련의 실질

〈표 4-2〉 용역 경비원 신임교육의 교육과목과 교육시간

구 분	과 목	시 간
정신교육	훈화	2
	새마을 교육	4
학 술	용역경비업 관계법	5
	청원경찰 관계법	2
	헌법 및 형사법	8
실 무	시 설 방 호	5
	대 공 이 론	5
	불심검문 요령	2
	민방위 총론	2
	민 방 공	2
	화 생 방	2
	소 방	8
술 과	기 본 훈 련	5
	봉 술	3
	체포술 및 호신술	3
예 비	입교 졸업 및 평가	4
	예 비	6
총 계		68

적 강화없이는 사경비업계의 건전육성과 그것을 통한 방범능력의 제고는 불가능하다는 면에서 이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제도적으로 강구되어야 하겠다.(용역경비원의 신임교육과목과 청원경찰의 기본교육과목의 내용 및 시간은 〈표 4-2〉와 〈표 4-3〉을 참조)

청원경찰의 경우는 그 특수성을 인정해 교육내용을 다소는 인정한다 하더라도 용역경비원의 경우는 지나치게 많은 교육과목과 업무의 특성이 무시된 무차별적인 교육내용임을 알 수 있다. 즉, 주차장관리를 담당하는 경비원에게 총 68시간의 신임교육 과

32) 서재근,『민간경비의 육성과 방범능력 증대방안 연구』(서울:형사정책연구원, 1991) 서교수의 연구는 1991년에 실시되었지만 현재의 상황도 그것과 대동소이함을 필자들의 경비업체 방문 및 면접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3〉 청원경찰 기본교육과목 및 시간표

학 과 별	과 목	시 간
정신교육	정 신 교 육	8
학술교육	형 사 법	10
	청원경찰법	5
실무교육	경무 경찰관 직무 집행법	5
	보 안 방 범	3
	경범죄 처벌법	2
	경비 시설경비	6
	소 방	4
	정보 대공이론	2
	불심검문	2
	방위 민 방 공	3
	화 생 방	2
	기 본 훈 련	5
	총 기 조 작	2
	총 검 술	2
	사 격	6
술 과	체포술 및 호신술	6
기 타	입교 수료 및 평가	3
총 계		76

목은 너무 많으며 헌법이나 형사법등의 관계법령의 교육이 필요한 것인지도 의문시되고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에도 별로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에 기계경비를 주로하는 경비원에게 필요한 기계경비관련 과목은 교육내용에 전혀 없는데 이는 현행 용역경비업법의 교육과정이 기계경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인경비만을 고려한 법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비업무의 내용에 따라 경비업종을 차별화하여 각 업무의 내용에 따른 경비업무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가 고려되어야 할것이다. 모든 경비업에 공통되는 "기본교육"과 업무내용에 따른 "업무별 교육"으로 구분하여 등급에 따라 교육내용을 달리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육의 "현실화"

와 업무내용의 "전문화"라는 두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3. 美國의 敎育·訓練 現況

가. 基本的인 敎育·訓鍊 프로그램

美國의 각 주들의 입법기관들은 경비관련 종사자들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자격요건으로서 교육과 훈련에 많은 강조를 해왔다. 비교적 최근에 발표된 자료(Security, July 1989)에 의하면 일정 부문의 경비원들에 대한 훈련을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가 23개주로 밝혀졌다. 이는 교육과 훈련의 강화가 상기에서 논의되었던 경비업계가 야기하고 있는 문제들과 경비업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좀 더 잘 훈련되고 교육된 고용인들은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숙달된 기술을 소유하게 되고, 그에 따른 업무수행능력의 향상, 업무상의 마찰과 소송 등의 감소, 전문직으로서 경비업에 대한 직업만족도나 사명감 등의 상승, 전문화에 따른 직업적 지위의 상승과 높은 보수 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公警備와 私警備 분야의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경비자문위원회(Private Security Advisory Council)는 경비업의 표준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권고안들을 제시해 왔다. 1973년에 발표된 연구결과인 미국의 사경찰: 연구결과 및 권고안(Private Police in the United States: Findings and Recommendations)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요구하고 있다.

① 모든 분야의 사경비관련 근무자는 적어도 120 시간의 최초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연방정부의 예산이 커리큘럼 개발이나 교육자료 확보, 방법론 등 사경비와 관련된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지원되어야 한다.

③ 주정부 관련기관은 모든 분야의 경비관련 근무자들에게 최소한 어떤 수준의 개인적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훈련과목, 교육시간 등의 훈련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④ 경찰행정학 학사와 같은 적절한 고등교육의 수료가 경력요구사항(minimum experience requirements)에 대한 대체조건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미국에서의 사경비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의 내용을 살펴 보기로 한다. 오늘날 경비원들에게 일정 수준의 훈련을 요구하고 있는 州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

와 업무내용의 "전문화"라는 두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3. 美國의 敎育·訓練 現況

가. 基本的인 敎育·訓鍊 프로그램

美國의 각 주들의 입법기관들은 경비관련 종사자들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자격요건으로서 교육과 훈련에 많은 강조를 해왔다. 비교적 최근에 발표된 자료(Security, July 1989)에 의하면 일정 부문의 경비원들에 대한 훈련을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가 23개주로 밝혀졌다. 이는 교육과 훈련의 강화가 상기에서 논의되었던 경비업계가 야기하고 있는 문제들과 경비업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좀 더 잘 훈련되고 교육된 고용인들은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숙달된 기술을 소유하게 되고, 그에 따른 업무수행능력의 향상, 업무상의 마찰과 소송 등의 감소, 전문직으로서 경비업에 대한 직업만족도나 사명감 등의 상승, 전문화에 따른 직업적 지위의 상승과 높은 보수 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公警備와 私警備 분야의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경비자문위원회(Private Security Advisory Council)는 경비업의 표준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권고안들을 제시해 왔다. 1973년에 발표된 연구결과인 미국의 사경찰: 연구결과 및 권고안(Private Police in the United States: Findings and Recommendations)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요구하고 있다.

① 모든 분야의 사경비관련 근무자는 적어도 120 시간의 최초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연방정부의 예산이 커리큘럼 개발이나 교육자료 확보, 방법론 등 사경비와 관련된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지원되어야 한다.

③ 주정부 관련기관은 모든 분야의 경비관련 근무자들에게 최소한 어떤 수준의 개인적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훈련과목, 교육시간 등의 훈련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④ 경찰행정학 학사와 같은 적절한 고등교육의 수료가 경력요구사항(minimum experience requirements)에 대한 대체조건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미국에서의 사경비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의 내용을 살펴 보기로 한다. 오늘날 경비원들에게 일정 수준의 훈련을 요구하고 있는 州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

는 추세에 있는데, 사경비에 관한 여러 주의 법령 중에서 가장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잘 규정되었다고 알려진 일리노이주의 예를 살펴보도록 한다. 일리노이주에서 1983년에 제정되고 1985년도에 개정된 "사설탐정과 사경비에 관한 법령"은 이러한 교육과 훈련에 대한 기준의 강화라는 측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경비원 신청자는 사경비자문위원회에서 제시한 120 시간의 최초의 교육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적어도 20 시간의 기본적인 경비관련 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중에는 다음의 과목들이 포함되어 있다(Nemeth, 1989, p.381-382).

사경비법과 그 한계(Law and Limitation of Private Security), 법집행기관들에의 보고(Reporting to Law Enforcement Agencies), 보고서 작성(Report Writing), 화재예방과 기타 안전조치들(Fire prevention and other safety measures), 화재 및 안전장비(Fire and Safety Equipment), 인간관계(Human and public Relations).

한편 조지아주에서도 1982년에 훈련과 교육에 관련된 법규를 개정하여 경비업의 표준을 상향 조정하였고 적어도 다음과 같은 과목들의 이수를 모든 경비원들에 대한 기본교육으로서 요구하고 있다: 법적권위(Legal Authority), 민간소동(Civil Disturbance), 화재안전(Fire Safety), 응급처치(First Aid), 체포(Arrest), 수색 및 포획(Search and Seizure), 형법(Criminal Law), 형사소송법(Criminal Procedure), 증거수집(Evidence), 자기방어(Selfdefense), 정탐(Surveillance). 이외에도 버몬트 주는 무장경비원들에게는 66시간의 교육과 필기시험, 그리고 무기소지 자격증등을 요구하고 있고, 텔러웨어 주는 모든 사설형사와 탐정들에게도 법적으로 총기류 훈련을 받게하고 매년 자격증을 재교부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나. 機械 警備員에 대한 敎育訓鍊 프로그램

또한 일리노이주에서는 私警報 請負業者(private alarm contractor), 즉 機械警備 請負業을 하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상술된 기본교육외에도 기계경비와 관련된 몇몇 중요한 과목들을 추가로 교육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훈련은 최소한 2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과목을 포함하고 있다(Nemeth, p.382).

① 기초 전자학(basic electronics)
② 장비 및 유선 요구물(equipment and wiring requirements)
③ 비디오탐지 및 경보시스템(video detection and alarm systems)
④ 화재탐지 및 경보시스템(fire detection and alarm systems)
⑤ 전문 시스템(specialty systems)

⑥ 주변 탐지(perimeter detection)

⑦ 움직임 탐지시스템(motion detection system)

경보산업 즉 기계경비업 분야는 경비업분야중에서는 가장 선도적으로 최근에 매우

〈표 4-4〉 3 단계 경보기술자 과정과 목표

초보자 단계의 후보(entry level candidate)	1 단계 경보기술자(level 1 alarm technician)	2 단계 경보기술자(level 2 alarm technician)
경보산업에의 초대	경보전문가를 위한 전자학 (Electronics for the alarm professional)	전자학(Electronics)
기초 전기학	강도침입방지를 위한 통제장치(control device for burglary protection)	통제패널(control panels)
경비시스템	경보 전송과 통신(alarm transmission & communi-cations)	화재시스템(fire systems)
탐지 장치들(detection de-vices)	주변, 내부, 그리고 전문탐지장치	업무기획 및 유선기술(job planning & wiring tech-niques)
통제 패널들	업무기획 및 유선기술	통신(communications)
대응 장치들(reaction de-vices)	U.L.과 경보산업	공간탐지 (space detection)
연장들	화재경보장비와 시스템	주변탐지 (perimeter detection)
수립과 교역 기술들 (building and trade skills)	폐쇄회로 TV/Video 시스템	접근통제(access control)
경비시스템 고안	업무 안전	U.L 과 통제산업 표준 (U.L.& control industry standards)
가설	산업체 개념규정 및 용어	
폐쇄회로 TV		

주목할 만한 훈련프로그램들을 체계화시키고 있다. 전국 강도 및 화재경보협회(National Burglar and Fire Alarm Association)는 경보업 전문가를 위한 전국훈련학교를 개설하여 1989년 현재 약 6000명의 기술자들을 경보시스템 설치와 서비스기술분야 등에서 훈련시켰다. 이러한 훈련의 독특한 측면은 기계경비산업의 가장 최신의 지식을 얻기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이 요구된다는 점이다(Hallcrest Report 2, 1990:148-149).

이 프로그램은 4개의 주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번째 부분은 초보자용(entry level) 코스로서 약 10주간에 걸쳐 진행되며 장차 경보산업부문에 종사할 사람들에게 입문수준의 지위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교육시키는데 있다. 두번째 부분은 1단계(level 1) 경보기술자 과정으로서 최소한 경보산업체에 3개월 이상 종사한 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 과정은 약 20시간의 교육으로서 경보시스템에 대한 개괄적인 수준에서의 이론과 설치방법, 유지관리의 교육등이 포함된다. 세번째 부분은 2단계(level 2) 경보기술자 과정이며 1단계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심층훈련을 제공하는 규격화된 구성단위들(modules)내에서 학습된다. 네번째 부분은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continuing education program)으로서 경보분야 기술자들이 그들의 자격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최소한 12 시간의 지속적인 교육단위들(continuing education units: CEUs)을 이수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CEUs는 협회나 제조업체 딜러들이 후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석하거나 직업학교(trade school)나 전문대학, 대학 등지에서의 교과목을 이수함으로서 대체되기도 한다. 각각의 프로그램의 과목들과 규격화된 구성단위들은 다음과 같다.(〈표 4-4〉 참조)

다. 武裝警備員에 대한 敎育訓鍊 프로그램

한편 일리노이주 경비업법은 총기류를 다루는 모든 경비요원들에게 총기류 취급 자격증(firearms certification)을 요구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된 20시간의 기본적인 훈련과정에 덧붙여 담당부서에서 승인한 20시간의 총기류 훈련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지 않고서는, 총기류를 사용하거나 휴대 또는 소지를 요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총기류 훈련과정은 강의실교육과 사격장 실습의 양자를 다 포함하고 있으며 강의실교육은 다음과 같은 과목들을 포함한다(Nemeth, p.383).

(1) 총기류의 합법적인 사용(legal use of firearms)
(2) 총기류 사용의 윤리적 도덕적인 고려사항(ethical and moral considerations of weapon use)
(3) 무장시 행동수칙(liability for acts while armed)

(4) 살상용 무기의 사용(use of deadly forces)

(5) 무장시 수색, 포획과 체포절차들(search, seizure and arrest procedures while armed)

(6) 총기류, 안전과 유지(firearm, safety and maintenance)

(7) 총기류 사용의 기본원칙들(fundamentals of firearm use)

a) 자세(stance)

b) 쥐는 법(grip)

c) 조준 정렬(sight alignment)

d) 조준법(sight picture)

e) 방아쇠 작동법(trigger control)

한편 미국의 사경비자문위원회(Private Security Advisory Council)에서도 또한 무장을 요하는 경비원들에 대한 총 72시간에 걸친 훈련프로그램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Nemeth, pp.45－46).

1) 배치전 훈련(Pre－assignment Training)

현업에 배치되기 전에 각 경비원은 적어도 아래에 명시된 8 시간의 공식적인 강의실 기본훈련을 받고 교육받은 과목들에 대해서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경비업 소개 및 개괄 : 2 시간

형사사법제도와 사경비원(법적권한과 한계포함) : 2 시간

비상사태시 대처방법 : 2 시간

일반적 업무 : 2 시간

그런데 상기의 과목들은 사경비특별위원회(Private Security Task Force)에서 권장하는 기본과목들과 거의 동일하며 사경비특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기본과목들과 기타 추가적인 내용들을 경비업계의 입문자들에게 교육시키는데 도움이 되게하기 위해서 오디오와 비디오의 테잎 등으로 제작하여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몇몇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 테잎은 패키지로 판매되고 있으며 가격도 零細業體에서도 큰 부담이 되지않을 정도로 책정되어 있다. 또한 공적인 법집행관들(예: 경찰, FBI, CIA, 마약단속반 등)의 훈련에 사용되는 '응급처치', '자기방어', '갈등해결', '적대적인 상대방을 다루는 법' 등의 주제에 관한 영화와 카세트 테잎들도 사경비원의 교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2) 총기류 훈련(Weapons Training)

총기류가 지급되기 이전 또는 총기류를 사용해야 하는 일에 배치되기 이전에 무장경

비원은 적어도 6 시간의 공식적인 강의실에서의 훈련을 받고, 이수과목들에 대해서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또한 사격장에서 실시되는 18 시간의 총기류 목표사격과정도 성공적으로 이수하도록 되어있다.

강의실:

총기류 사용의 법적, 정책적 제한 : 3 시간

총기류 안전, 관리와 소제 : 3 시간

사격장:

사수의 준수원칙(principles of markmanship) : 6 시간

단일 행동 코스(single action course) : 6 시간

이중 행동 코스(double action course) : 6 시간

3) 업무배치후 기본 훈련과목들

업무수행후 3 개월 이내에 경비원은 32 시간의 기본훈련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적어도 4 시간은 강의실 교육이어야 하며 16 시간까지는 현업수행중의 감독교육이어도 된다. 강의실교육은 다음과 같은 과목을 포함한다.

경비체계에서의 예방 : 1 시간

규정의 법적측면과 집행 : 1 시간

일상적인 절차 : 1 시간

긴급사태와 특별절차 : 1 시간

4) 연례 총기류 숙달과 資格證의 再交付

매년 무장경비원들은 적어도 1년에 한번은 총 8 시간의 재교육 및 총기류 숙달과정을 이수하여 자격증을 재교부 받아야 한다.

총기류 사용의 법적, 정책적 제한 : 3 시간

목표사격에서의 재사격(사격장에서) : 5 시간

그런데 경비원의 총기류 휴대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전세계적인 전반적 추세는 지난 20여년간 사경비원들에 의한 총기류 휴대가 현격히 감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20년전에 미국의 Rand사에서 실시한 한 연구에 의하면 약 절반가량의 용역경비원들과 자체경비원들이 총기류를 근무시간에 휴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1981년에 Hallcrest에서 시행한 용역경비관리자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10% 미만의 경비원들이 총기류를 휴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총기류를 휴대하지 않고 근무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며, 2000년경에는 5%이하의 경비원들만 총기류를 휴대할 것으로 Hallcrest의 연구진들은 전망하고 있다(Hallcrest Report 2,

1990:143-144).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총기류를 휴대하면 그들이 그것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며, 또한 총기류 휴대자들에게 있어서 총기류사용을 위한 연간의 훈련시간이 대체적으로 8시간을 넘지 않았다는 것이다.

라. 一般的 特徵 및 顧慮事項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사경비업계에 있어서 교육·훈련의 강화는 일반적으로 거역할 수 없는 대세로서 고객의 다원화된 서비스의 요구와 UR시대를 맞이하는 요구에 의해, 그리고 경비산업 자체적으로도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서 그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기에 교육훈련의 강화에 의한 서비스의 차별화가 요구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 다소 그 내용과 방식이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경비업의 인허가와 경비원의 면허증제도가 대다수의 주들에서 시행하는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하겠다. 상기에서 언급된 것처럼 각 주마다 인허가와 면허증 취득을 위한 기준들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사경비의 급속한 신장에 따라 수반되는 총기류사고등 많은 현안 문제들의 해결과 사경비의 질적향상을 위한 처방이라고 하겠다.

경비분야 전문지(Journal of Security Administration)에 의하면 현재 미국내에 사경비분야에는 200여개의 학위수여 교육프로그램이 있으며, 비록 독립된 학위는 수여하지 않더라도 1,000개 이상의 대학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비관련 프로그램들은 형사사법 교육의 다른 측면과 총체적으로 연관되어, 앞으로는 독립적인 동등한 학문분야로서 확립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통적인 형사사법학과 경찰학 프로그램의 주요한 상호 보완적인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극소수의 대학에서만 이와 관련된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을 뿐이며, 엄격하게 사경비분야로만 국한시키면 사실상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경비관련 학과의 설립 및 관련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나, 단기적으로는 대학내에서의 사경비원 특별훈련과정의 설치나 또는 특수대학원에서의 6개월 내지 1년 과정의 사경비 전문가 양성코스나 사경비 최고 경영자·관리자 과정 등의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가 현실적인 교육여건하에서도 실현가능한 대안이라고 본다.

이는 다양한 경비업무 분야에 있어서 적절한 교육과 관련 업무에 대해 지속적인 훈련을 받고 잘 통제된 유능한 인력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노력이 경비업계에 요구되며, 이것이야 말로 사경비업의 양적 성장에 수반되는 전문화와 그에 따른 질적 향상을 도모키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990:143-144).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총기류를 휴대하면 그들이 그것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며, 또한 총기류 휴대자들에게 있어서 총기류사용을 위한 연간의 훈련시간이 대체적으로 8시간을 넘지 않았다는 것이다.

라. 一般的 特徵 및 顧慮事項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사경비업계에 있어서 교육·훈련의 강화는 일반적으로 거역할 수 없는 대세로서 고객의 다원화된 서비스의 요구와 UR시대를 맞이하는 요구에 의해, 그리고 경비산업 자체적으로도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서 그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기에 교육훈련의 강화에 의한 서비스의 차별화가 요구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 다소 그 내용과 방식이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경비업의 인허가와 경비원의 면허증제도가 대다수의 주들에서 시행하는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하겠다. 상기에서 언급된 것처럼 각 주마다 인허가와 면허증 취득을 위한 기준들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사경비의 급속한 신장에 따라 수반되는 총기류사고등 많은 현안 문제들의 해결과 사경비의 질적향상을 위한 처방이라고 하겠다.

경비분야 전문지(Journal of Security Administration)에 의하면 현재 미국내에 사경비분야에는 200여개의 학위수여 교육프로그램이 있으며, 비록 독립된 학위는 수여하지 않더라도 1,000개 이상의 대학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비관련 프로그램들은 형사사법 교육의 다른 측면과 총체적으로 연관되어, 앞으로는 독립적인 동등한 학문분야로서 확립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통적인 형사사법학과 경찰학 프로그램의 주요한 상호 보완적인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극소수의 대학에서만 이와 관련된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을 뿐이며, 엄격하게 사경비분야로만 국한시키면 사실상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경비관련 학과의 설립 및 관련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나, 단기적으로는 대학내에서의 사경비원 특별훈련과정의 설치나 또는 특수대학원에서의 6개월 내지 1년 과정의 사경비 전문가 양성코스나 사경비 최고 경영자·관리자 과정 등의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가 현실적인 교육여건하에서도 실현가능한 대안이라고 본다.

이는 다양한 경비업무 분야에 있어서 적절한 교육과 관련 업무에 대해 지속적인 훈련을 받고 잘 통제된 유능한 인력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노력이 경비업계에 요구되며, 이것이야 말로 사경비업의 양적 성장에 수반되는 전문화와 그에 따른 질적 향상을 도모키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4. 日本의 敎育·訓練 現況

일본의 경비원교육에 대해서는 경비업법과 시행규칙 및 각종 제도와 관련한 타규칙에 규정하고 있는데, 1982년의 법개정시에 대폭 정비되었다. 경비업법 제11조와 시행규칙 제26조는 경비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감독의 의무를 규정하고, 동법 제11조의 3에서는 경비업자가 경비원에 대해 확실한 교육을 행하도록 하기 위한 "警備員指導敎育責任者" 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1조의 2에서는 공안위원회가 경비원에 대해 그 지식 및 기능에 관한 "檢定"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및 他規則에는 이들 제도와 관련된 조항이 있다. 이에 일본의 경비원교육 시스템과 현상 및 문제점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해 보기로 한다.

가. 警備員敎育에 대해서

警備業法 제11조 제1항은 "경비업자 및 경비원은 경비업무를 적절하게 행하기 위하여 경비업무에 관한 지식 및 능력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경비업자 및 경비원의 노력의무를 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은 "경비업자는 그 경비원에 대해 경비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이 장(필자주:동법 제4장)의 규정에 따르는 이외에 총리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행함과 동시에 필요한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행해야 할 실질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경비원교육은 "基本敎育"과 "業務別敎育"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 경비업무에 종사하기 전에 받는 "新任敎育"과 현재 종사중인 경비원에게 실시되는 "現任敎育"으로 세분되어 있다(시행규칙 제26조). 특히 업무별교육은 경비업법 제2조의 분류에 따라 경비업무를 상주경비, 交通誘導 및 雜踏警備, 귀중품운반경비, 경호경비, 기계경비로 구분되어 각각 실시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 할 것이다. 교육시간은 기본교육의 경우에는 신임교육 15시간 [33] 을 그리고 현임교육은 6개월마다 3시간씩의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으며, 업무별교육의 경우에는 신임교육 15시간[34]을 그리고 현임교육은 6개월마다

33) 최근 3년 사이에 경비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통산 1년인 자 또는 경찰관으로 재직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경비원은 5시간.

34) 최근 3년 사이에 경비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자는 5시간. 검정에 합격한 경비원으로 당해 검정과 관련된 경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와 기계경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로 기계비업무관리자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제외됨.

5시간씩의 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결국, 새롭게 경비원이 되려는 자는 기본교육 15시간과 업무별교육 15시간을 받아야 하며, 현재 경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6개월마다 기본교육 3시간과 업무별교육 5시간의 총 8시간을 받아야 한다 [35].

기본교육의 교육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교육과목을 적시하지 않고 (1) 경비업무실시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2) 경비원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3) 경비업법 기타 경비업무의 적정실시에 필요한 법령에 관한 사항, (4) 사고발생시에 있어서의 경찰기관에의 연락 기타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5) 호신용구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교육시키도록 하고 있다[36].

한편 업무별교육의 경우에는 각 경비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 및 기능에 관한 교육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37]

常駐警備業務 :

(1) 경비업무 대상시설에 있어서의 사람 또는 차량 등의 출입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2) 순회방법에 관한 사항

(3) 경보장치 기타 기기의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지식 및 기능에 관한 사항

交通誘導 내지 雜踏警備業務:

(1) 도로교통 관계법령에 관한 사항

(2) 차량 및 보행자의 유도방법에 관한 사항

(3) 사람 또는 차량이 혼잡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雜踏整理 방법에 관한 사항

---

35) 警備科學硏究所長인 후카자와씨는, "신임교육기간을 마친 후 아무런 after care(보수교육)을 하지 않으면 교육효과는 3개월을 지속하지 않는다. 근무중에는 새로운 지식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인 사항은 배제되는 운명에 있다. 또한 진정 필요한 경비기술도 현장에서 요령을나면 곧장 잊어버리고 만다"고 주장한다. 深澤賢治, 警備界の教育に關する諸問題, 警備業年鑑 1993, 101면 참조.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비원에게 6개월마다 업무별교육 이외에 기본교육까지 반복하고 있는 것은 바로 教育效果의 측면에 근거를 둔 것이며, 이것이야 말로 일본 경비원교육의 하나의 특징이라 할 것이다.

36) 기본교육은 지도교육책임자 또는 당해 교육에 대해 지식 경험이 있는 자가 행하도록 하며, 교본, 시청각교재 등 필요한 교재를 사용한 강의방법과 실기훈련에 의한 방법으로 교육하도록 하고 있다.

37) 업무별교육도 지도교육책임자 또는 당해 교육에 대해 지식 경험이 있는 자가 강의 또는 실기훈련에 의한 방법으로 행한다. 다만 신임교육(15시간)과 현임교육(5시간) 가운데 각각 7시간 또는 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시간은, 경비원 한사람에 대해 1인 이상의 지도교육책임자 또는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경비업무에있는 경비원이 행하는 實地教育의 방법으로 대체할 수가 있다.

(4) 각종 기자재의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貴重品運搬警備業務:

(1) 운반에 사용하는 차량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2) 차량 등에 의한 동반주행의 방법에 관한 사항

(3) 운반할 현금, 귀금속, 미술품 등을 적재할 때의 경계방법에 관한 사항

(4) 운반중 도난 등의 사고발생시에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지식 및 기능에 관한 사항

警護業務:

(1) 사람의 신변에 있어서의 경계에 관한 경계위치 및 경계방법에 관한 사항

(2) 각종 기자재의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3) 불심자를 발견한 경우에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한 사항

(4) 신체에 관한 危害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야 할 피난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지식 및 기능에 관한 사항

機械警備業務:

(1) 경비업무용 기계장치의 기능에 관한 사항

(2) 경비업무용 기계장치에 의한 경계 및 지령방법에 관한 사항

(3) 지령업무 경비원과 현장대처 경비원과의 연락방법에 관한 사항

(4) 기지국에서 사고발생에 관한 정보를 수신한 경우에 있어서의 불심자의 발견 기타 현장에 있어서의 사실확인 방법에 관한 사항

나. 警備員指導敎育責任者 制度

일본의 경우 경비원교육과 필요한 지도감독의 책임은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해 경비업자에게 있다. 그러나 경비업자 자신이 구체적인 경비업무의 실시에 대해 충분한 지식 및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으며, 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경비원에게 세심한 지도교육을 행하리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업무에 대한 지식 및 능력을 가진 자를 지도교육의 책임자로서 지정하여 일상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행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여, 경비업자에게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를 두도록 함으로써 경비원의 지도감독이 방치되거나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한 것이 바로 경비업법 제11조의 3에 규정된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제도이다[38].

경비업자는 영업소마다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를 선임하여, 경비원의 지도 및 교육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경비원의 지도 및 교육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는 경비원에 대한 지도교육계획서의 작성과 실행·관리·기록, 경비원교육의 실시기록의 기재에 대한 감독, 경비업자에 대한 필요한 조언 등의 의무가 있다(시행규칙 제28조).

공안위원회는 국가공안위원회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의 지도교육책임자 과정을 수료한 자, 혹은 그와 동등 이상의 지식 및 능력을 가진다고 인정되는 자[39]에게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 자격자증을 교부한다. 지도교육책임자 강습은 총 38시간으로 이루어지며, 필기방법에 의한 수료고사도 행해진다[40].

강습사항 및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경비업무실시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 2시간

(2) 경비업법 기타 경비업무의 적정실시에 필요한 법령에 관한 사항 : 8시간

(3) 경비업무와 관련한 기본적인 지식 및 기능에 관한 사항 : 6시간

(4) 경비업무의 구분에 따른 전문적인 지식 및 기능에 관한 사항 : 14시간

(5) 기타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로서 필요한 지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8시간

다. 警備員檢定 制度

경비업법 제11조의 2는 "공안위원회는 경비업무의 적정실시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공안위원회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 또는 경비원이 되려는 자에 대해 그 지식 및 능력에 관한 檢定을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검정제도를 두고 있다. 즉, 경비원이 일정수준 이상의 지식 및 능력을 가졌다는 점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검정제도의 실시로 경비원은 지식과 능력의 향상에 노력하고 경비업자는 경비원의 효과적인 교육에 노력하도록 촉진함으로써 경비업무의 적정을 도모해 나가자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따라서 검정은 취업을 제한하는 등의 법적 효과를 수반하지 않는다.

---

38) 警察廳保安部 防犯企劃課 감수, 警備業法の解說, 1986, 全國警備業協會, 83면 이하 참조.

39) 경비원의 지도 및 교육에 관한 업무에 관해 관리자 또는 감독자 지위에 있었던 경력이 통산 7년 이상이며 동시에 경비원의 지도 및 교육에 대해 충분한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자, 지도교육책임자강습의 강습자로 위촉될 정도전문지식 및 능력을 가진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강습규칙 제5조 참조).

40)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강습이 시작된 것은 1983년 6월이며, 제1회 수료고사의 경우 시험문제는 50문항으로 출제되어 그 중 40문항의 정답 즉 80점을 합격으로 한 결과, 합격율이 나가노현(長野縣) 96%, 이시카와현(石川縣) 90%, 도야마현(富山縣) 100%였다. 警備保障新聞 186(1983.6.5) 187호(1983.6.15) 참조.

검정은 경비업무의 구별에 따라 그 업종에 종사하는 경비원의 지식 및 능력에 관해 행해지는 것이지만, 현재 업무의 중요성(公共性) 및 수요를 고려하여 空港保安警備, 交通誘導警備, 核燃料物質 등 運搬警備, 貴重品運搬警備의 네가지 업종에 대해 각각 1급과 2급으로 구분되어 실시되고 있고, 학과시험 및 실시시험으로 합격을 판정한다.

검정제도는 都道府縣 公安委員會가 행하는 "直接檢定"과 지정법인이 행하는 "指定講習"[41]의 두가지로 성립되어 있는데, 지정강습은 현재 全國警備業協會가 교통유도경비, 핵연료물질 등 운반경비, 귀중품운반경비의 세 업종에 대해, 그리고 空港保安事業센터[42]가 공항보안검사경비에 대해 1986년 11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1992년 12월 31일 현재, 총 23,464명이 검정자격증을 교부받았으며, 그 가운데 1급 합격자는 377명, 2급 합격자는 23,087명이다.

라. 問題點

경비원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사회의 민간방범 시스템의 中核으로 자리잡게 하기 위하여 경비원교육에 관한 의무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그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문제점 및 대책방안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한다.

첫째로, 경비업자의 의식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비원교육이 매상고와 직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법률상의 의무만을 지키는데 그치는 경영자가 많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경영자교육의 필요성이 이전부터 거론되어 왔으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적 프로그램은 개발되지 않고 있다[43]. 한편 경비원교육의 販促

41) 검정규칙 제12조에 의해, 국가공안위원회는 법인이 행하는 강습으로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정강습으로 지정하고 있다.

42) 일본에서는 항공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은 경비회사의 경비원이 보안검사원으로서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승객의 몸수색과 기내적재 수하물검사의 보안검사를 행하고 있다. 공항보안사업센터는 관계기관의 지원을 얻어 (1) 공항보안검사원의 교육훈련, (2) 항공보안검사업무의 실시상황의 감사 및 지도와 조언, (3) 주요공항에 있어서의 보안검사업무의 실시를 목적으로 1978년에 설립된것이다. 이 가운데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1979년부터 1986년 상반기까지 주로 교육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회를 개최하고 자격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1986년 하반기에 경비원검정 지정강습으로 지정받아 1990년말까지 검정 2급에 해당하는 basic course의 항공보안검사원 연수를 651명이 수강하여 543명이 합격, 현재 전국의 공항에서 보안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吉田孝雄, 航空保安檢査業務について, 警備業年鑑 1993, 129면 이하 참조.

43) 교육철저 캠페인을 실시하여 그 기간중에 문제를 일으킨 업자에 대해서는, 경영자를 일정기간 구속하여 교육에 대한 실시하는 방안이 제안되기도 한다. 深澤賢治, 警備業界の教育關する諸問題, 警備年鑑 1993, 104면.

價値를 강조하기도 한다. 즉, 고객은 교육에 열성적인 회사를 환영할 것이므로 고객의 요망까지 수용하여 연간교육계획표를 작성하여 실행하고, 영업담당자에게 그 정보를 명확히 전달하면 의외의 관촉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다.

둘째로, 전직 및 퇴직자가 많아 一貫敎育이 어렵다는 문제점이다. 아무리 교육시켜 보아야 얼마 지나지 않아 퇴사해 버리기 때문에 다액의 교육비를 투자하더라도 효과가 없고 검정이나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 자격취득에 도전시키더라도 쓸모가 없다는 것이다 [44].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장기적인 시야에서 판단한다면 경비업계 전체의 층이 두터워지고 그것이 사회전체에 공헌할 것이라는 원리적인 제언 밖에 나오지 않고 있다.

셋째로, 교육에 필요한 교재, 설비, 장소의 문제점이다. 자사에 연수장과 설비를 갖추고 있는 곳도 있지만, 50명 미만의 업자가 82%를 차지하고 있는 현상에서 볼 때 회사만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公的 機關의 보조 및 警備業協會의 적극적인 지도육성이 필요하다 하겠다[45]. 그리고 그 방안의 하나로 현재 직업훈련소, 고등학교, 전문학교, 단기대학, 4년제대학에서의 강좌개설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는 있지만, 경비업계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직접 대학을 설립하는 것도 중요과제로 논의되고 있다.

넷째로, 경비원의 의식문제이다. 경비업계는 中途採用者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해지고 있는데, 경비원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45세 이상의 장년층들은 교육을 받으려는 의욕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최근의 불황으로 인하여 일손부족으로부터 대량의 실업자가 속출하고 있어, 입사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이 기회를 경비원교육의 好機로 삼자는 제안도 있다.

다섯째로,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 및 검정제도의 문제점이다.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는 대체로 피고용자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해고를 각오하지 않고서는 경영자에게 적극적인 조언을 하기란 어렵다. 또한 검정제도도 경영자에겐 특별한 利點을 느낄 수 없는 제도라고 받아들여 지고 있기 때문에 당초의 의욕도 감퇴되고 참가자도 어떤 수단을

44) 이미 현황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1993년의 통계를 보면 근속년수 5년 미만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45) 협회 차원에서 경비원교육을 행하고는 있지만 더욱 다양한 교육지원 및 지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즉, (1) 주야 언제라도 수강할 수 있도록 하자, (2) 교재를 한층 알기 쉽게 만들어 달라, (3) 협회로 부터 저렴하게 강사를 파견해 달라, (4) 자격취득의 보조금 제도를 만들자, (5) 협회 자신이 연수설비를 만들어서 누구나 저렴하게 경비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강구하지 않는 한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46]. 이에 대해서는 법률해석과 운용의 묘, 그리고 경영자의 의욕을 도출할 만한 행정지도력에 기대하는 정도이다.

5. 小結論 및 提言

지금까지 한미일 3국의 교육훈련과 관련된 프로그램과 기타 관련 현황들을 살펴보았다. 각국의 교육훈련에 대한 교육내용과 운영상의 현실을 살펴보면 각국이 지니고 있는 문제들과 장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를 참고로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한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경비원 교육내용의 현실화, 업무별 교육의 강화, 현장책임자 중심의 교육 그리고 사경비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등 네가지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교육과목과 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상기에서 언급되었던 바와 같이 우리 경비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현행제도는 교육과목수도 지나치게 많을 뿐 아니라 경비업계의 현실에 적합치 않는 부분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우선 기본교육과목의 양과 배당된시간을 살펴보면 과목과 시간의 분량면에서 볼 때 사경비분야의 기본교육수준으로는 과다하며, 또한 교육내용면에서도 현실정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68시간과 78시간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의심스럽고, 설사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교육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의 배정이 부적절하다. 교육내용면에 있어서도, 70년대식의 새마을교육이 아직 존재하는 것과 일반시설경비원에게 헌법과 형사법 등을 교육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과목들, 예를 들면 기계경비업과 관련된 과목이나 기업기밀보호 등과 같은 교육과목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와는 달리 구체적인 과목을 제시하지 않고 일반적인 사항과 시간만을 규정하고 있다. 즉, 경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총 15시간의 기본교육을 받아야 하며, 현재 경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1년에 두번씩 각각 3시간의 보

46) 검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경찰청은 동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경비원의 3분의 1이 자격을 취득하면 제도가 정착된 것으로 판단하고 그때는 자격자의 사용을 허가조건의 하나로 삼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교통유도경비의 경우를 보면 현재도 그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행사에서의 경비나 대규모공사에 일정수의 검정합격자를 배치하도록 지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警備業年鑑 1993, 108면 참조.

강구하지 않는 한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46]. 이에 대해서는 법률해석과 운용의 묘, 그리고 경영자의 의욕을 도출할 만한 행정지도력에 기대하는 정도이다.

5. 小結論 및 提言

지금까지 한미일 3국의 교육훈련과 관련된 프로그램과 기타 관련 현황들을 살펴보았다. 각국의 교육훈련에 대한 교육내용과 운영상의 현실을 살펴보면 각국이 지니고 있는 문제들과 장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를 참고로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한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경비원 교육내용의 현실화, 업무별 교육의 강화, 현장책임자 중심의 교육 그리고 사경비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등 네가지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교육과목과 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상기에서 언급되었던 바와 같이 우리 경비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현행제도는 교육과목수도 지나치게 많을 뿐 아니라 경비업계의 현실에 적합치 않는 부분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우선 기본교육과목의 양과 배당된시간을 살펴보면 과목과 시간의 분량면에서 볼 때 사경비분야의 기본교육수준으로는 과다하며, 또한 교육내용면에서도 현실정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68시간과 78시간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의심스럽고, 설사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교육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의 배정이 부적절하다. 교육내용면에 있어서도, 70년대식의 새마을교육이 아직 존재하는 것과 일반시설경비원에게 헌법과 형사법 등을 교육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과목들, 예를 들면 기계경비업과 관련된 과목이나 기업기밀보호 등과 같은 교육과목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와는 달리 구체적인 과목을 제시하지 않고 일반적인 사항과 시간만을 규정하고 있다. 즉, 경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총 15시간의 기본교육을 받아야 하며, 현재 경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1년에 두번씩 각각 3시간의 보

46) 검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경찰청은 동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경비원의 3분의 1이 자격을 취득하면 제도가 정착된 것으로 판단하고 그때는 자격자의 사용을 허가조건의 하나로 삼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교통유도경비의 경우를 보면 현재도 그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행사에서의 경비나 대규모공사에 일정수의 검정합격자를 배치하도록 지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警備業年鑑 1993, 108면 참조.

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물론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단지 "기본교육"만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경비업법이 가장 잘 발달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는 일리노이주를 비롯한 다수의 주에서 대략 20시간을 전후로 하는 기본교육을 실질적으로 모든 경비원들에게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기본교육에 있어서도 우선적으로 교육과목과 교육시간의 축소를 통한 현실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같은 축소가 사경비업의 질을 저하시켜서는 안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즉 과목과 시간의 양은 줄이되 축소된 과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교육이 집행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지원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거나 인허가과정에서의 요구사항들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기본교육을 통하여 경비업무와 관련된 개괄적인 교육을 먼저 받고 차후 업무별 및 현장교육을 통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용역경비원의 경우에는 비현실적인 교과목으로 10일간 받도록 되어있는 현재의 교육과목을 대폭 축소조정하여 보다 실질적인 과목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내용은 한미일 3개국의 경우를 고려해 볼 때,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는 정도로 축소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1일 8시간씩 3일간 총 24시간정도의 교육이 적당하다고 본다.

경비업의 소개 및 개괄, 용역경비업 관계법, 사경비원의 법적 권한 및 한계,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 비상사태시 응급처치 요령, 방범장비 및 호신용구 취급법
기업비밀보호, 입교·졸업 및 평가 등

둘째로, 업무별 교육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기본교육의 교육과목을 대폭 줄이고 그 대신에 경비업무의 성격에 따라 업무별로 특성화된 교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교육시스템은 모든 경비원에게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과목만을 교육시킬 뿐, 그들이 막상 현업에 임했을 경우에 직접 도움이 되는 업무내용별로 특성화된 교육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면, 용역경비업법은 기계경비업에 관해서는 규정하면서 기계경비업과 관련되는 특수과목이 단 한 과목도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기본교육과 업무별교육으로 구분하여 기본교육에서는 경비원으로서 최소한 이수해야 할 필수과목 만을 공통적으로 이수토록 하고, 각 경비업무의 내용에 따른 특성화된 업무별교육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에 15시간이라는 짧은 기본교육 대신에, 경비업무의 성격에 따라 상당시간의 업무별교육을 재부과하고 있다(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경비업법의 제5장(제11조의 4 ~ 제11조의 9)에는 기계경비업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 업무의 성격에 따라 일반경비업에 대한 기본교육외에도 기계경비업무와 관련된 업무별교육을 시키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에도 총기류 휴대를 요하는 경비원들에 대한 많은 시간의 총기류관련 별도의 교육훈련이 의무적으로 실행되게 되어 있고, 기계경비업에 근무하는 자에게도 본 장에서 소개한 바와 같은 전문화된 업무별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로, 현장 책임자의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업무별 교육의 강화는 현장교육의 중요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경비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숙지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현장교육은 현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여 현장의 특성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 현장책임자가 행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 이는 곧 용역경비업의 능률성 제고가 현장책임자의 능력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현장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바로 사경비업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영업소마다 경비원의 지도 및 교육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고 그 계획에 기초하여 경비원을 지도 및 교육하는 일본의 "警備員指導教育責任者"(기계경비의 경우에는 "機械警備業務管理者")제도를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警備員指導教育責任者" 내지는 "機械警備業務管理者" 제도의 도입은 현재 경비업계가 안고 있는 심각한 교육장 및 교관 부족해소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는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즉, 용역경비협회나 경찰교육기관에 과정을 신설하거나 혹은 일반대학의 사회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킴으로써 책임자 내지는 관리자를 중점적으로 양성한 후에 그들로 하여금 현장교육 또는 업무별교육을 시키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동시에 警備員指導教育責任者 제도는, 일선 파출소와 경비시설과의 비상연락 및 방범대책에도 一助를 한다는 점에서 도입이 필요하다. 현행 제도에서도 경찰은 "臨檢", "行政處分", "監督"을 통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실시할 수 있지만(용역경비업법 제11조-제13조), 실제로는 "警備業者"를 주대상으로 하여 허가사항 및 장부서류의 비치여부의 점검에 그칠 뿐 경비현장과 일선 파출소와의 상호협조는 사실상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방범대책 수립에 필수적인 비상시 연락망 구축에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警備員指導教育責任者" 제도의 도입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경비현장을 가장

잘 파악하고 경비원을 지도교육하는 "警備員指導教育責任者"(혹은 기계경비관리자)와 관할지역의 방범을 담당하는 일선 파출소와의 상호협조관계(예컨대 최근의 범죄현황 및 연말연시의 경계기간에 있어서의 책임자회의, 그리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비상연락망 체제의 구축)를 구축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통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개선은 또한, 아파트단지나 단위공장 및 빌딩의 자체경비와 같이 용역경비업법의 대상 밖에 제외되어 있는 부문까지도 그 범주안에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지역방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사경비는 자체경비까지 포함시킨 넓은 의미에서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아파트 관리사 자격시험에 경비에 관한 과목을 추가시키든가 혹은 경비원교육을 이수하도록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넷째는, 교육기관들에서 사경비업에 관한 훈련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위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장기적으로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경비관련학과의 설립이나 사경비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나, 단기적으로는 대학내에서의 사경비원 특별훈련과정의 설치나, 특수대학원에서의 6개월 또는 1년 과정의 사경비 전문가 양성코스, 또는 사경비 최고경영자·관리자 과정등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가 현재의 교육여건하에서도 실현가능한 대안으로서 시급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은 경비업의 전문성제고를 위해서 위에서 언급한 전문교육의 강화나 관리자들에 대한 집중교육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V. 機械警備業의 現況과 立法

1. 韓國의 現況 및 立法上의 問題點

가. 機械警備業의 現況

현재 사경비업에 진출한 600여개의 업체중에서 전적으로 기계경비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한국안전시스템, 한국보안공사, 범아 등 20여업체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이 사경비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아직까지 인경비의 규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기계경비분야의 발전속도는 곧 인경비

잘 파악하고 경비원을 지도교육하는 "警備員指導教育責任者"(혹은 기계경비관리자)와 관할지역의 방범을 담당하는 일선 파출소와의 상호협조관계(예컨대 최근의 범죄현황 및 연말연시의 경계기간에 있어서의 책임자회의, 그리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비상연락망 체제의 구축)를 구축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통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개선은 또한, 아파트단지나 단위공장 및 빌딩의 자체경비와 같이 용역경비업법의 대상 밖에 제외되어 있는 부문까지도 그 범주안에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지역방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사경비는 자체경비까지 포함시킨 넓은 의미에서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아파트 관리사 자격시험에 경비에 관한 과목을 추가시키든가 혹은 경비원교육을 이수하도록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넷째는, 교육기관들에서 사경비업에 관한 훈련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위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장기적으로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경비관련학과의 설립이나 사경비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나, 단기적으로는 대학내에서의 사경비원 특별훈련과정의 설치나, 특수대학원에서의 6개월 또는 1년 과정의 사경비 전문가 양성코스, 또는 사경비 최고경영자·관리자 과정등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가 현재의 교육여건하에서도 실현가능한 대안으로서 시급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은 경비업의 전문성제고를 위해서 위에서 언급한 전문교육의 강화나 관리자들에 대한 집중교육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V. 機械警備業의 現況과 立法

1. 韓國의 現況 및 立法上의 問題點

가. 機械警備業의 現況

현재 사경비업에 진출한 600여개의 업체중에서 전적으로 기계경비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한국안전시스템, 한국보안공사, 범아 등 20여업체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이 사경비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아직까지 인경비의 규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기계경비분야의 발전속도는 곧 인경비

를 능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것은 현재 가중되고 있는 3D현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화될 것이며 각종 범죄가 고도화, 지능화 되고 있고, 경찰력의 한계와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 기계경비의 성장을 가속시킬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인경비와 비교할 때 기계경비의 장점으로는 다음 몇가지가 지적되고 있다.

1. 경비의 전문성 : 기계경비가 갖는 탁월한 상황감지기능은 인경비의 기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수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광범위한 지역이라도 24시간 경비가 가능하다.
2. 경제성 : 한번 설치하면 오랜 기간 사용이 가능하므로 저렴한 고정비용과 인건비절약이 가능하다.
3. 책임성 : 인경비에 비해 책임한계가 명확할 수 있으므로 책임성이 뛰어나다.
4. 합리성 : 업무가 분업화, 전문화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경영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기계경비대상시설과 자체순찰차량 및 대처요원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표5-1〉 참조).[47]

〈표 5-1〉 기계경비 대상시설수

계	상 가	금융기관	주 택	학 교	빌 딩	산업시설	기 타
100,933	30,909	7,921	6,603	3,157	10,421	5,841	36,081

또한 이들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체 순찰차량과 인력현황은 다음과 같다(〈표5-2〉 참조).

〈표 5-2〉 대처요원과 순찰차량

대 처 요 원	순 찰 차 량
1,076	716

자료 : 한국용역경비협회 93.12.

47) 그러나 상기의 용역경비협회의 통계와 경찰청통계는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이 집계하고 있는 기계경비대상시설 및 자체인력차량은 아래와 같다.

계	상 가	금융기관	주 택	학 교	빌 딩	산업시설	기 타	대처인원	순찰차량
49,556	19,949	9,215	3,176	2,448	1,292	1,421	12,055	1,588	635

자료 : 경찰청(94.6.1 현재)

나. 機械警備業에 대한 法規定의 未備

현행 용역경비업법에 규정하고 있는 기계경비사항은 동법 제4조 2항 제4호와 동법 시행령 제6조의 2에 간단히 언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용역경비업법 제4조 2항 제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경비시설을 설치 폐지 변경한 때"에는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용역경비업법 시행령 제6조의 2의 기계경비시설의 정의에 대해 "기계경비시설이란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기와 이를 운용하기 위한 관제실을 갖춘 일련의 시설을 말한다.

① 송신기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하여 도난 등 사고발생의 경보를 관제실로 송신하는 기기.

② 수신기 : 관제실에 설치하여 송신기로부터 경보를 수신하는 기기"라고 언급하는데 그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이같은 간단한 규정이 포함된 것도 1989년의 용역경비업법 개정과 1990년 신설조항으로 삽입되면서였다. 이것은 한국의 사경비부문 법체계가 얼마나 기계경비업에 대해 인식이 미흡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규정의 보완 기기 개발의 지원 등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1997년 이후의 사경비분야에 대한 시장개방은 곧바로 기계경비 분야의 외국사 진출을 의미한다고 했을 때 한국 사경비업은 이에 대한 대처에 들어가야 한다. 현재 업계에서는 기계경비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요망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기계경비에 대한 보다 보완된 법체계의 필요성이다. 이는 현재의 용역경비업법이 인경비 위주로 되어 있기에 기계경비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기 짝이 없음을 지적한 것이다. 보다 엄격한 기계경비업 허가기준, 허위선전에 의한 소비자 피해의 예방, 기계경비업의 활동범위와 출동시간의 법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독립된 법체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둘째로, 기계경비를 첨단산업으로 분류하여 정부규제를 풀고 미래산업 개발의 측면에서 연구개발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초창기의 기계경비는 외국으로부터의 수입기기에 의존했으나 문화, 풍습 등 사회여건의 상이로 고객들의 기기작동법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으나, 이후 점차 우리 실정에 맞는 기기의 개발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고도화된 시설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기계경비업을 단순한 영리추구의 사기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압불안

정, 통신선로 불안정, 건물접지의 미비 등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기계경비는 첨단산업으로 분류되어 연구개발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통신 주파수할당 등의 초보적 문제에서 부터 신기술개발로 민생치안의 제고에 기여하는 과학화된 경비업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로, 건물 준공시 소방시설 설치의 의무화처럼 방범설비체계 설치의 의무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건축법의 개정이 뒤따라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방범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시급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밖에도 기계경비업체들만의 협회결성으로 그를 통해 일치된 기술개발 노력의 필요성, 기계경비에 익숙한 재범자들에 대한 특별관리 필요, 오보발생시 경찰의 이해 및 경찰관 교육훈련시 방범기기에 대한 교육 필요성 등이 제시되고 있다.

2. 美國의 現況 및 立法

가. 機械警備業의 現況과 展望

사경비산업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 전반적으로 모든 서비스의 범주를 포괄하는 일반적으로 수용된 단일한 정의가 없었다. 우선 다양한 경비분야중에서 공식적으로 가장 눈에 띄며 총매출고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문으로서 다음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自體警備(proprietary)와 用役警備(contract)를 포함하는 人警備業(security guard services), 2) 警報시스템 請負業(alarm system contractors) 또는 機械警備業, 3) 私設探偵 서비스(private detective services). 한편 제2장에서 언급되었듯이 Hallcrest 보고서 II(1990:127)에서는 사경비업을 다음의 9가지로 보다 상세히 분류하고 있다 : (1) 자체 경비업(proprietary or in-house security), (2) 경호 및 순찰 서비스(guard and patrol services), (3) 경보서비스업(alarm services), (4)사설탐정업(private investigations), (5) 무장차량 서비스업(armored car services), (6) 경비장비 제조 및 판매업(security equipment manufacturing and distributing), (7) 자물쇠 제조판매업(locksmith), (8) 경비 자문업(security consultants services), (9) 기타(예 : 경비견, 마약검사, 법의학적 분석, 거짓말 탐지).

기계경비업이라 하면 상기의 분류중에서 (3) 警報서비스업과 (6) 警備裝備 製造 및 販賣·설치업을, 또는 분류하기에 따라서 (7) 자물쇠 제조판매업까지를 포함시킬 수 있다. 미국의 경보서비스산업(alarm industry)은 중앙관제소를 통한 종합적인 경보서

정, 통신선로 불안정, 건물접지의 미비 등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기계경비는 첨단산업으로 분류되어 연구개발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통신 주파수할당 등의 초보적 문제에서 부터 신기술개발로 민생치안의 제고에 기여하는 과학화된 경비업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로, 건물 준공시 소방시설 설치의 의무화처럼 방범설비체계 설치의 의무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건축법의 개정이 뒤따라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방범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시급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밖에도 기계경비업체들만의 협회결성으로 그를 통해 일치된 기술개발 노력의 필요성, 기계경비에 익숙한 재범자들에 대한 특별관리 필요, 오보발생시 경찰의 이해 및 경찰관 교육훈련시 방범기기에 대한 교육 필요성 등이 제시되고 있다.

2. 美國의 現況 및 立法

가. 機械警備業의 現況과 展望

사경비산업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 전반적으로 모든 서비스의 범주를 포괄하는 일반적으로 수용된 단일한 정의가 없었다. 우선 다양한 경비분야중에서 공식적으로 가장 눈에 띄며 총매출고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문으로서 다음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自體警備(proprietary)와 用役警備(contract)를 포함하는 人警備業(security guard services), 2) 警報시스템 請負業(alarm system contractors) 또는 機械警備業, 3) 私設探偵 서비스(private detective services). 한편 제2장에서 언급되었듯이 Hallcrest 보고서 II(1990:127)에서는 사경비업을 다음의 9가지로 보다 상세히 분류하고 있다 : (1) 자체 경비업(proprietary or in-house security), (2) 경호 및 순찰 서비스(guard and patrol services), (3) 경보서비스업(alarm services), (4)사설탐정업(private investigations), (5) 무장차량 서비스업(armored car services), (6) 경비장비 제조 및 판매업(security equipment manufacturing and distributing), (7) 자물쇠 제조판매업(locksmith), (8) 경비 자문업(security consultants services), (9) 기타(예 : 경비견, 마약검사, 법의학적 분석, 거짓말 탐지).

기계경비업이라 하면 상기의 분류중에서 (3) 警報서비스업과 (6) 警備裝備 製造 및 販賣·설치업을, 또는 분류하기에 따라서 (7) 자물쇠 제조판매업까지를 포함시킬 수 있다. 미국의 경보서비스산업(alarm industry)은 중앙관제소를 통한 종합적인 경보서

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부터, 경보기 설치회사, 판매점, 유통망(생산자, 설치회사, 지역내 딜러사이에서 중계역할 담당)등을 포함하며 심지어는 일부 장비 제조업자들이나 화재경보시스템의 판매와 서비스회사 등을 포함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주로 경보서비스업과 경보장비 제조 및 판매업에 한정하여 기계경비업계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한다.

警報서비스업체(alarm companies)라고 함은 경비용 경보시스템을 판매, 설치, 감시, 유지, 그리고 보수 등의 업무로부터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를 지칭한다. 경보감시 서비스(monitoring services)나 새로운 시스템의 판매(sale) 및 설치(installation)가 이러한 회사들의 주된 소득원이 된다. Hallcrest Report II (1990: 183－184,192－198)에 의하면 경보서비스업체의 총매출액은 1980년도에 $13억(1조 400억원)으로 사경비업체 총매출액의 15%에 해당하는 시장점유율을 나타냈으나, 1990년에는 년 13%의 성장을 보여 $45억(3조 6000억원)으로 급속히 신장하였다. 그 결과 시장점유율도 17%로 상승하였다. 또한 비슷한 비율로 성장한다면 2000년경에는 $140억(11조 2000억원)에 달하며 시장점유율도 22% 정도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보회사의 이러한 연 성장비율은 경비자문업 및 경보장비제조업과 더불어 사경비산업의 모든 부분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표 5－3〉 참조).

한편 미국에서 영업중인 경보서비스 업체의 수는 1980년에는 8,500개에서, 1990년에는 12,700개로, 또한 2000년경에는 대략 24,000개 정도로 추정되며 이들은 장비제조업체들과 함께 가장 급성장하는 분야로서 2000년까지 연간 7%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보서비스 회사의 고용율은 국가 전체의 고용성장비율보다 6배 가량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1990년에 120,000명이 기계경비 관련회사에서 일하였고 2000년에는 250,000명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주거용 경비시스템의 비용이 급속히 감소하게 되면 기계경비업계의 총수입과 고용인원은 이러한 예측을 크게 능가하여 급상승할 가능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비장비 제조 및 판매업(manufacturers and distributors)에 있어서는 1980년에 제조업자들과 배급자들이 서비스 제공으로 약 $10억(8천억원)의 매출액을, 장비의 판매로 $46억(3조 6800억원)의 매출액을 나타냈다. 그 이후에 이 분야는 판매와 서비스 수입에 있어서 연 10%씩의 증가를 보여서, 1990년에는 $26억(2조 800억원)의 서비스 수입과 $117억(9조 3600억원)의 장비판매를 기록했다. 생산과 유통 서비스 매출액은 약 12%씩, 또한 판매액은 7% 정도를 예상하여 2000년에는 $80억(6조 4000억원)의 서비스 관련 매출액이 예상되며, 제조업의 매출액은 $240억(19조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5-3〉 미국의 기계경비분야의 년 매출액:Hallcrest의 추정치(1980--2000)

년 도	1980		1990		2000	
분 야	총 매 출 액	시장 점유율	총 매 출 액	시장 점유율	총 매 출 액	시장 점유율
무 장 차 량 서 비 스 업	$3억 5000만 (2800억원)	4%	$7억 5000만 (6000억원)	3%	$12억 5000만 (1조원)	2%
경 보 서 비 스 업	$13억 (1조 400억원)	15%	$45억 (3조 6000억원)	17%	$140억 (11조 2000억원)	22%
용역경비업	$38억 (3조 400억원)	43%	$98억 (7조 8400억원)	37%	$215억 (17조 2000억원)	34%
사설탐정업	$8억 5000만 (6800억원)	10%	$24억 (1조 9200억원)	9%	$46억 (3조 6800억원)	7%
경비자문업	$8000만 (640억원)	1%	$3억 3000만 (2640억원)	1%	$10억 5000만 (8400억원)	2%
자 물 쇠	$11억 (8800억원)	13%	$29억 (2조 3200억원)	11%	$57억 (4조 5600억원)	9%
경비장비제조및판매업	$10억 (8000억원)	11%	$25억 7400만 (2조 590억원)	10%	$78억 2900만 (6조 2632억원)	12%
기 타	$3억 (2400억원)	3%	$30억 (2조 4000억원)	11%	$75억 (6조원)	12%
총 계	$87억 8000만 (7조 240억원)	100%	$262억 5400만 (21조 30억원)	100%	$634억 2900만 (50조 7432억원)	1768 5968 3176 6831 00%

출처 : Hallcrest Report 2(1990:192-194)에 있는 표 6.8, 표 6.9, 표 6.10을 재구성하여 하나로 만든 것임.

상기분야중에서 경보서비스업은 기계경비업중에서 가장 급성장을 하고있는 부분으로

이는 거주지에서의 경보기 사용의 증가와 급속한 기술적 진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전화선을 이용하는 유선에서 무선기술로의 이전은 지난 10년간 사경비분야에서 있었던 가장 중요한 변화중의 하나이다. 다음의 4 범주의 사람들이 경보서비스업체에 종사하고 있다: 경보기 판매원(alarm sales personnel), 경보시스템 설치자/기술자(alarm systems installers/ technicians), 경보장비 감시원(alarm monitoring personnel), 경보작동시 출동요원(alarm respondents or runners).

반면에 경비장비 제조 및 판매업 부문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계경비의 한 분야이다. 1990년경에 대략적으로 2500개의 장비제조 및 판매회사들이 미국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한 유형의 장비제조업체들은 다음과 같은 장비들을 생산하고 있다: 출입통제장치(access control), 폐쇠회로 TV, 경보장치, 폭탄탐지 시스템, 금속탐지기, 전자식 물품탐지장치, 컴퓨터 보안장치, 전화보안, 보안등, 경비용 담장, 보안용 자물쇠 등.

한편 Hallcrest 보고서 I(1985:118-119)는 상기의 경보서비스업과 장비제조 및 판매업을 업무의 성격이나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에 따라서 1) 중앙관제소를 통한 경보서비스(central station alarm services), 2) 범죄억제장비(deterrent equipment) 제조 및 판매업, 3) 감시 및 탐지장비(monitoring and detection equipment) 제조 및 판매업, 그리고 4) 화재감지 및 통제장비(fire detection control equipment) 제조 및 판매업 등으로 좀 더 세분화하고 있다.

첫째는 중앙관제소를 통한 경보 서비스업(computerized central monitoring services)은 중앙관제소(central station), 무선 기지국, 관제 유무선장비, 긴급출동차량, 긴급대처요원(alarm runner), 관제 컴퓨터 등으로 구성된 전체적인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비하고 총괄적인 전자기계경비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체적으로 긴급대처 능력을 보유하여 직접 긴급사태에 즉응하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비교적 최근에 성장하기 시작한 이 분야의 총매출액은 1980년에 대략 $7억(약 5600억원), 1985년에는 $12억 2500(약 9800억원) 정도로 추정되었다. 오늘날 이러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장 유망한 분야로 전망된다.

둘째로, 범죄억제장비 판매업은 고정된 경비 장비(fixed security equipment)와 자물쇠관련 장비(locking devices), 전자식 출입통제장치(electronic access control), 경비등(燈), 컴퓨터 경비(computer security), 경비용 담장(security fencing) 등을 판매하거나 설치하는 업종을 칭한다. 이 분야의 총 매출액은 1980년에 대략 $34억 3000(약 2조

7440억원)으로, 1985년에는 $57억 8000만 (약 4조 6240억원) 정도로 추정되었다.

셋째로, 감시 및 탐지장비 제조 및 판매업은 침입경보 시스템(intrusion alarm systems)이나 탐지 및 감시장비(detection and surveillance equipment), 폐쇄회로 TV, 상점도난방지장치(antishoplifting devices)인 탐지거울(detection mirrors), 전자품목 감시(elecronic article surveillance) 시스템 등을 판매 및 설치하는 업종을 칭한다.

전체적으로 폐쇠형 TV와 전자품목 감시시스템등의 분야가 상당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반면에 침입경보 시스템을 직접 파출소등에 연결시키는 종류의 서비스는 다소 감소하리라고 예상된다. 이 분야의 총 매출액은 1980년에 대략 $4억 4500(약 3560억원)으로 추정되었고, 1985년에는 $7억 5000(약 6000억원)정도로 추정되었다.

넷째로, 화재감지 및 통제 장비 판매업(fire detection control equipment)은 소화기, 자동 스프링쿨러 시스템과 기타 화재통제 장비, 연기감지기와 화재감지용 경보시스템 등의 판매 및 설치업을 말한다. 이 분야의 총 매출액은 1980년에 대략 $9억 8000(약 7840억원)으로 추정되었고, 1985년에는 $19억 5500(약 1조 5640억원) 정도로 추정되었다.

지금까지는 기계경비업의 주종을 이루어 왔던 이러한 3 분야— 범죄억제장비, 감시 및 탐지장비, 그리고 화재감지 및 통제장비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시장규모가 증가되리라 예상된다. 이러한 장비의 제작 및 판매업은 자체적인 긴급대처 능력은 보유하지 않고 이상을 감지하면 온라인으로 관제센터에 통보하면, 관제센터의 관제원이 경찰이나 소방서 등에 통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과, 또한 단지 상기의 장비들을 제조, 판매, 설치나 보수 등의 용역만을 제공하는 업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나. 機械警備業에 대한 法規定

사경비에 관한 국가자문위원회(NACOCJSG)의 1976년 보고서 이후에 미국의 많은 주들에 있어서 용역경비업의 인허가나 경비원 면허의 요구사항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機械警備業에 관한 法令의 제정이며, 대부분의 주들은 사경비 서비스를 강화하는 기존의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기계경비업에 대한 인허가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다. 1985년에 미국의 절반인 25개주가 경보서비스 업체의 인허가와 관련된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allcrest의 조사결과(Cunningham & Taylor,1985:83)에 의하면 중앙관제소를 통한 경보서비스업(central station alarm firms)은 미국의 25개 주에서, 경보기 판매 및 설

치업체는 18개의 주에서 업체운영의 일정부분을 주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계경비업법에 대한 입법기관은 각 주의 공안국(department of public safety)이나 주경찰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정부의 법적 규제와는 별도로, 각 주의 시나 카운티(county)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경보업의 인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예로 오리건(Oregon)주에서는 주정부의 법령으로 110볼트가 넘는 전력이 소요되는 경보장비를 설치하는 모든 자들에게 전기기사 면허증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주에 속한 Multnomah 카운티에서도 경보통제법 규정을 통하여 모든 경보장치 설치자는 카운티의 허가증을 받아야 하고 설치후 카운티의 최종설치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기계경비업 분야는 사경비 여러 분야 중에서 비중이 크며 또한 앞으로의 시장규모나 성장가능성에 있어서 가장 유망한 부문이기에 이 분야에 관한 인허가 조건이나 법규제는 계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법규정들과 관련해서 다음으로 일리노이주의 사설탐정과 사경비 법령(The Private Detective and Private Security Act)중에서 기계경비와 관련된 조문들을 일부 소개하고자 하는데, 이는 일리노이주의 법령이 전반적으로 사경비업법의 좋은 전형으로서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아직도 관련 법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주들에게 법제정시의 표준으로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동 법에는 교육훈련, 면허의 등급, 경비원의 자격요건, 업무집행시의 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다(Nemeth, 1989: 339-389). (본 법령의 전문은 부록에 첨부되어 있음)

일리노이주의 사설탐정과 사경비법령: 1983년 제정, 1985년 개정됨

① 정의: 1983년에 제정된 일리노이주의 사설탐정 및 사경비법령의 2652조. 2항에는 기계경비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

"私設警報 契約者 또는 私設警報 請負業者(private alarm contractor)"라 함은 보호되는 시설물(protected premise) 또는 비상시 보호되기로 되어있는 시설물에 경보장치를 판매하거나, 설치, 유지, 변경, 수리, 교체, 용역제공 또는 경보체계에 대응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들을 지칭한다. 그러나 단지 경보시스템을 제작만 하거나 경보시스템을 사업장소(place of business)에서 판매는 하지만, 보호되는 시설물이나 또는 보호되기로 되어있는 시설물에는 경보장치를 판매하거나, 설치, 유지, 변경, 보수, 교체, 용역제공 또는 경보체계에 대응하는 일 등을 하지 않는 사람이나 상사 또는 회사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또는 비상시에만 연락을 받고 경보시스템을 수리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전기청부업자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私設警報 契約者 取扱店 또는 私設警報 請負業者 取扱店(private alarm contractor agency)"이란 사경보 계약사업에 종사하면서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있어서 한명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을 고용하는 어떤 사람이나 상점, 회사 등을 의미한다.

② 면허의 요구(requirement of the license): 2654조 4항.

"어떤 개인이 만약 담당부처의 면허를 받지않고서 사설경보 청부업자(private alarm contractor)로 행동하거나, 광고, 기타 관련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어떤 타이틀을 사용하는 등의 모든 행위는 불법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어떤 상사나 회사가 담당부처의 면허를 받지않고서 이 법에 규정된 사설경보 청부업자 취급점(private alarm contractor agency)으로 행사하거나, 광고, 이러한 상사나 회사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어떤 타이틀을 사용하는 등의 모든 행위는 불법이다"라고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기계경비업체를 설립하거나 기계경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담당기관으로부터의 면허가 필요하다.

③ 정부의 규제(regulation by state): 제 2657조 7항. 이러한 사설경보청부업(사설탐정 및 사경비청부업도 포함)을 규제하는 권한은 주정부에서만 독점적으로 지니고 있으며 기타 어떤 다른 지방자치기관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 면허 및 취급점 자격증을 위한 자격조건(qualifications for licensure and agency certification): 2664조 14항(c)

A. 私設警報 請負業者(private alarm contractor)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시키면 사설경보청부업자로서의 면허를 받을 수 있다.

(1) 21세 이상

(2)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 소지자

(3) 어떤 중범죄로 인하여 기소된 사실이 없는자 또는 선고된 형량으로부터 석방후 10 년이 경과한 자.

(4) 좋은 도덕적 성품의 소유자 (이러한 도덕적 성품은 면허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임).

(5) 법정으로부터 정신적, 육체적 결함이나 또는 질병 등에 의해 무능력하다고 선고받지 않은 자.

(6) 습관적인 음주나 마약중독 등을 경험하지 않은 자.

(7) 미국의 군복무에서 불명예퇴직을 당하지 않은 자.

(8) 형식이나 액수에 있어서 담당부서에 의해 승인된 일반책임보험이나 이와

상응하는 사항에 관한 증거를 관련부서에 제출한 자. 그러나 신체상해 책임에 있어서 각 개인에 대해서는 $100,000 이상, 각 발생사건별로는 $300,000 이상이 되어야 하며, 재산손상 책임은 $50,000 이상의 책임보험액수가 요구된다. 이러한 보험에 관한 의무사항은 면허를 소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9) 이 법안의 (4)항(즉, 면허의 요구사항)을 위반하지 않은 자, 그러나 이 요구 사항은 면허정지의 절대적인 요건으로 사용되지는 않음.

(10) 1987년 1월 현재, 본 법안의 14항 c의 규정하에서 갱신(또는 연장)을 신청하는 모든 자들은 신청서 제출전까지의 최근 5년동안 적어도 3년간은 일리노이주에서 허가를 받는 私設警報 請負業者 취급점에서 상근직의 차장, 부장 또는 관리자로서의 근무경험이 있어야 한다.

(11) 담당부처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는 공공의 안녕과 건강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가된 행동들과 관련된 과목들을 포함한다.

B. 私設警報 請負業者 取扱店(private alarm contractor agency)

일정 수수료를 납부하고, 지원자가 일리노이주에서 허가된 사설경보 청부업의 상근직 근무자로서 또한 일리노이주의 거주자라는(이 사항은 취급점 면허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사항이 됨) 사항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부서는 시험없이 다음과 같은 사항 중의 하나인 私設警報 請負業者 取扱店으로서 면허를 발급한다.

(1) 본 법안하에서 허가된 사설경보 청부업자.

(2)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상사 또는 회사로서 모든 구성원들이 본 법안하에서 허가된 사설경보 청부업자로 구성된 곳.

(3) 일리노이주에서 영업이 허용된 정당하게 등록된 법인으로서 사설경보청부업 취급점을 하도록 인가된 회사중에서 적어도 한 간부나 고위종업원이 본 법안하에서 사설경보 청부업자로서 허가되었고, 기타 면허를 가지고 있지않은 모든 자들과 회사의 이사들이 담당부처로부터 도덕적으로 좋은 성품의 사람이라고 판정된 법인.

사설경보청부업자는 누구도 한 회사 이상에서 근무 할 수 없다. 단 그가 직접적으로 서로 다른 회사의 일을 장악하고 있고 또한 담당부처를 위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한편 일리노이주 사설탐정및 사경비법의 1985년 개정판에 보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추가되어 있다.

⑤ 私設警報 請負業者 허가를 위한 신청사항: 240 15항.

a) 사설경보 청부업자로서 면허를 얻고자 하는 개인은 담당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또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본 법에의해 정해진 금액의 책임보험에 대한 증빙서류로서의 보험증서

2) 최근 3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 2매 (1 1/2" X 1 3/4")

3) 본 법의 20항에 규정된 수수료($100)

b) 1987년 1월 이후 사설경보 청부업자로서 면허를 얻고자 하는 개인은 본 법안 14항(c)(10)에 명시된 신청자의 경력에 대해서 담당부서에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위 참조).

1) "년(year)"이라는 용어는 신청자가 상근직으로 고용된 12개월의 작업기간을 칭한다.

2) 근무회사의 작업계획이 연 1800시간 또는 이상이면 요구사항에 대한 충족으로 간주된다.

⑥ 私設警報 請負業者 取扱店(private alarm contractor agency) 고용인의 20시간 기본훈련코스: 240.25항.

a) 본 법안하에서 승인된 私設警報 請負業者 取扱店의 등록된 근무자로서 고용된 모든 사람은 고용후 45일 이내에 담당부서에 의해 승인된 기본훈련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b) 훈련은 최소한 2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과목을 포함한다:

1) 기초 전자학(basic electronics)

2) 장비 및 유선요구사항(equipment and wiring requirements)

3) 비디오탐지 및 경보시스템(video detection and alarm systems)

4) 화재탐지 및 경보시스템(fire detection and alarm systems)

5) 전문 시스템(specialty systems)

6) 주변 탐지(perimeter detection)

7) 움직임 탐지시스템(motion detection system)

c) 수강자들에 관한 이름, 주소, 등록일자, 과목의 완성 또는 중단, 출석에 관한 기록들이 유지되어야 한다.

d) 상기에서 언급된 훈련의 종료시, 교관은 각 개인에게 20시간의 기본훈련 이

수증을 교부하며 이 증서에는 교관과 개인이 함께 서명하도록 되어있다.

e) 수료증은 훈련에 관한 영구적인 기록이며 고용자는 피고용자의 진술서와 함께 고용기간내내 화일에 보관한다. 고용을 그만둘 시에는 수료증의 원본은 피고용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f) 피고용자가 한 곳 이상의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있을 경우에는 훈련이 종료된 날짜, 교육이 제공된 학교나 기관의 이름, 교관의 이름 등을 언급하는 피고용자로부터의 진술서나, 또는 훈련이수증의 공증된 사본이 20시간의 기본훈련 이수증 원본을 대신해서 피고용자의 진술서와 함께 보관되야 한다.

⑦ 銃器類 訓練 코스: 240.30항

어떤 등록된 고용인도 240.20항에 규정된 근무자 훈련과정과 또한 담당부서에서 승인한 20 시간의 총기류 훈련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지 않고서는 총기류를 사용하거나 휴대 또는 소지를 요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총기류 훈련과정은 강의실교육과 사격장실습의 양자를 다 포함하고 있다. 강의실교육은 다음과 같은 과목들을 포함한다:

1) 총기류의 합법적인 사용(legal use of firearms)
2) 총기류 사용의 윤리적 도덕적인 고려사항(ethical and moral considerations of weapon use)
3) 무장시 행동수칙(liability for acts while armed)
4) 치명적인 무기의 사용(use of deadly forces)
5) 무장시 수색, 포획과 체포절차(search, seizure and arrest procedures while armed)
6) 총기류, 안전과 유지(firearm, safety and maintenance)
7) 총기류 사용의 기본원칙(fundamentals of firearm use)
   a) 자세(stance)
   b) 쥐는법(grip)
   c) 조준정렬(sight alignment)
   d) 조준법(sight picture)
   e) 방아쇠 작동법(trigger control)

각 수강자에게는 상기에서 언급된 기술과 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시간이 사격선상에서 부여된다. 각 수강자의 개인적인 총기류나 수강자에게 할당된 총기류는 실제사격전에 사격장 관리자에 의해서 안전을 점검받고 확인된다. 교육에는 이중행동사격(double

—action shooting)이 포함된다. 실탄을 최소한 50발 사격해서 최저 70%의 명중율을 획득하는 것이 이 항목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으로서 인정된다.

지금까지 일리노이주의 경비업법중에서 기계경비업과 관련된 부분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이는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기계경비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에도 아직 기계경비에 관한 경비업법이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에, 앞으로 기계경비업법의 제정이나 관련된 경비업법의 개정등에 참고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3. 日本의 現況 및 立法

가. 機械警備業의 現況과 展望

일본에서 경보시스템이 허가된 것은 1965년으로 미국 기계경비의 탄생(1853년)부터 112년이나 나중의 일이다. 이는 지역사회의 범죄억지력과 행정의 부단한 노력이 시민생활의 안전유지에 크게 기능하여, 경보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이 그다지 없었기 때문이다. 구미국가들에 비해 경보시스템의 보급과 계몽면에서 아직 불충분한 면이 많기는 하지만, 마이크로 컴퓨터와 음성합성 등의 반도체 고집적소자를 구사한 현재의 경보시스템은 기술면에서 선진국을 추월하고 있다고 말해지고 있다. 일본의 기계경비는 야간에 무인화하는 기업의 수요를 중심으로 신장되어 왔지만, 핵가족화와 지역연대감의 희박화, 범죄의 국제화, 급속한 고령화사회의 도래, 노동시간 단축에 의한 여가의 다양화·장기화, 여성의 사회진출, 생활방식의 변화에 따른 도시생활의 24시간화 등의 환경변화로 인해 안전에 대가를 지불한다는 의식이 점차 정착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내고 있다. 또한 엘렉트로닉스의 기술적 진보와 고도정보통신 시스템을 비롯한 뉴미디어의 개발 및 급속한 진전은 Office Automation 뿐만 아니라 Home Automation의 보급을 촉진시켰다. 특히 1985년 "電氣通信事業法"이 시행됨으로써 통신단말기의 제조 및 판매가 자유화된 이후 각종 센서에 의한 異常檢出機能과 전화 등의 通報機能을 결합시킨 경보시스템의 보급히 한층 가속화되었다. 이 경보시스템은 기업에 대한 사업활동의 안전유지와 가정에 대한 방범·방재·구급 등 안전을 확보하는 복합적 시스템으로 Home Security System이라 총칭되고 있다[48].

한편 1992년 12월말 현재 기계경비업의 현황을 보면, 기계경비업자는 707개사로 전체 경비업의 10.7%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비원수는 24,479명이고 대상시설수는 647,

48) ホームセキュリティの進展, 警備業年鑑 76쪽 이하 참조.

—action shooting)이 포함된다. 실탄을 최소한 50발 사격해서 최저 70%의 명중율을 획득하는 것이 이 항목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으로서 인정된다.

지금까지 일리노이주의 경비업법중에서 기계경비업과 관련된 부분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이는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기계경비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에도 아직 기계경비에 관한 경비업법이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에, 앞으로 기계경비업법의 제정이나 관련된 경비업법의 개정등에 참고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3. 日本의 現況 및 立法

가. 機械警備業의 現況과 展望

일본에서 경보시스템이 허가된 것은 1965년으로 미국 기계경비의 탄생(1853년)부터 112년이나 나중의 일이다. 이는 지역사회의 범죄억지력과 행정의 부단한 노력이 시민생활의 안전유지에 크게 기능하여, 경보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이 그다지 없었기 때문이다. 구미국가들에 비해 경보시스템의 보급과 계몽면에서 아직 불충분한 면이 많기는 하지만, 마이크로 컴퓨터와 음성합성 등의 반도체 고집적소자를 구사한 현재의 경보시스템은 기술면에서 선진국을 추월하고 있다고 말해지고 있다. 일본의 기계경비는 야간에 무인화하는 기업의 수요를 중심으로 신장되어 왔지만, 핵가족화와 지역연대감의 희박화, 범죄의 국제화, 급속한 고령화사회의 도래, 노동시간 단축에 의한 여가의 다양화·장기화, 여성의 사회진출, 생활방식의 변화에 따른 도시생활의 24시간화 등의 환경변화로 인해 안전에 대가를 지불한다는 의식이 점차 정착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내고 있다. 또한 엘렉트로닉스의 기술적 진보와 고도정보통신 시스템을 비롯한 뉴미디어의 개발 및 급속한 진전은 Office Automation 뿐만 아니라 Home Automation의 보급을 촉진시켰다. 특히 1985년 "電氣通信事業法"이 시행됨으로써 통신단말기의 제조 및 판매가 자유화된 이후 각종 센서에 의한 異常檢出機能과 전화 등의 通報機能을 결합시킨 경보시스템의 보급히 한층 가속화되었다. 이 경보시스템은 기업에 대한 사업활동의 안전유지와 가정에 대한 방범·방재·구급 등 안전을 확보하는 복합적 시스템으로 Home Security System이라 총칭되고 있다[48].

한편 1992년 12월말 현재 기계경비업의 현황을 보면, 기계경비업자는 707개사로 전체 경비업의 10.7%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비원수는 24,479명이고 대상시설수는 647,

48) ホームセキュリティの進展, 警備業年鑑 76쪽 이하 참조.

588개소이다[49] (〈표 5-4〉 참조). 최근 계속되는 불황하에서도 신장을 거듭해 왔지만 신장율이 둔화되었으며, 주요고객인 기업들의 경비감축 및 경쟁업체간의 경쟁으로 수주가격이 인하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5-4〉 기계경비업자 현황

구 분	총 수
기계경비업자수	707
기지국수	1,109
경비원수	24,479
기계경비업무대상시설수	647,588

한편 일본 경찰청은 1985년 10월 방범대책의 중점시책으로서 "Home Security의 추진"을 결정하고 전국방범협회연합회, 전국경비협회, 일본방범설비협회 등 세 단체에 협력을 요청하였다. (1) 저렴하고 양질의 방범경보기의 연구·개발, (2) 경비회사와 연동시킨 Home Security의 보급, (3) 방범 캠페인隊에 의한 방범진단·방범지도를 중심으로 한 방범대책을 발표하고, 문단속 중심의 방범에서 센서에 의한 방범을 적극 권장하였다[50].

나. 機械警備業에 대한 法規定의 補完

개정전의 경비업법에는 "기계경비"에 관한 규정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후 10년이 지나 경비업법의 개정이 논의될 당시에는 이미 상당수의 경비업자가 기계경비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제정 당시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오보문제를 비롯한 각종 문제점이 속출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을 느낀 국회는 경비업법 개정시에 기계경비업이라는 장을 새롭게 추가하고 6개조에 달하는 규정을 입법하였다.

이에 이하에서는, 기계경비업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우리의 用役警備業法에 참고가 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일본의 기계경비업에 관한 규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다. 機械警備業者의 義務

49) 警備業年鑑 1993, 5쪽 참조.

50) 警備業年鑑 1993, 80쪽 참조. 이를 계기로 종전의 "문 하나에 자물쇠 둘을 채우자"(one door two lock)라는 캠페인을 "가정에도 센서를"로 바꾸었다.

① 계출의무

공안위원회는 관할 都道府縣의 구역내에서 행해지는 기계경비업무에 대해 기계경비관리업무자의 선임 및 기타 의무의 이행 등을 정확하게 감독하고 효과적인 지도를 행할 필요와 행정감독상의 실태파악을 위해 기계경비업자에 대해 그 업무개시전에 届出義務를 과하고 있다(제11조의 4). 마찬가지로 기계경비를 하지 않게 된 때 또는 계출사항에 변경이 있은 때에도 계출의무를 과하고 있다(제11조의 5).

② 기계경비업무관리자 선임의무

기계경비업무에서는 경비업무대상시설로부터 떨어진 장소에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경계활동이 행해지므로 사태에 따른 신속정확한 대응조치가 강구되지 않으면 효과적인 경비업무란 기대할 수 없다. 기계경비업무를 실시함에 있어서 항상 신속정확한 대응조치가 강구되기 위해서는, 경비업무용 기계장치의 적정운용에 의한 정보처리, 경비원에 대한 정확한 지령, 경찰기관 등에 대한 적절한 통보·연락 등에 대해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업무관리능력을 가진 자에 의해 기계경비업무가 운용될 필요성이 있다. 경비업법은 그러한 지식 및 능력을 가진 자로서 기계경비업무관리자를 기지국마다 선임할 의무를 기계경비업자에게 과하는 "기계경비업무관리자"제도를 두고 있다(제11조의 6)[51].

기계경비업무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시행규칙 제40조).

1. 경비업무용 기계장치에 의한 경비업무대상시설의 경계, 경비업무용기계장치의 유지관리 기타 경비업무용 기계장치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계획을 작성하고, 그 계획에 기초하여 경비업무용 기계장치를 운용하도록 경비원을 감독하는 일
2. 지령업무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령업무를 통제하기 위해, 지령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하는 일
3. 경찰기관에 대한 연락에 대해 경비원을 지도하는 일
4. 기지국에 비치하는 서류의 기재에 대해 감독하는 일
5. 기계경비업무의 관리에 대해 기계경비업자에게 조언하는 일

기계경비업무관리자는 자격증서를 교부받은 자중에서 기계경비업자가 선임하게 되는데, 공안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자격증서를 교부한다(제11조의 6 제2항).

---

51) 기계경비업무관리자란 기계경비분야에 있어서의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 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도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1. 공안위원회가 행하는 기계경비업무 강습을 받고 그 과정을 수료한 자
2. 前號와 동등 이상의 지식 및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자

기계경비업무관리자 강습은 총 22시간으로 이루어지며, 필기방법에 의한 수료고사도 행해진다. 강습사항 및 강습시간은 다음과 같다.

1. 경비업법 기타 기계경비업무의 적정한 실시에 필요한 법령에 관한 사항 : 8시간
2. 경비업무용 기계장치의 운용에 관한 사항 : 5시간
3. 지령업무에 관한 사항 : 5시간
4. 경찰기관에의 연락에 관한 사항 : 2시간
5. 기타 기계경비업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 2시간

③ 즉응체제 정비의무

경비업무대상시설에서 떨어진 장소에서 경계활동이 이루어지는 기계경비업무의 특질상, 이상사태의 발생시점과 경비원이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게 되는 시점과는 어느 정도 시간적인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 차이는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기 위한 범위내이어야 한다. 또한 기지국에서 수신한 정보는 단편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가를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해 현장경비원에 의한 사실확인이 신속히 행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계경비업자에게 경비원, 대기소[52] 및 차량 기타 장치를 적정하게 배치할 의무를 과하고, 현장에서 경비원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강구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도록 하고 있다(제11조의 7).

즉응체제의 기준에 대해서는 都道府縣 공안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대체로 다음 기준에 따라 정해져 있다.

1. 경비업법 제11조의 7 규정에 의해 경비원, 대기소 및 차량 기타 장비의 배치는, 기지국에서 사고발생에 관한 정보를 수신한 때부터 25분 이내에(교통편이 특히 나쁜 등의 사정이 있는 지역내에 소재하는 경비업무대상시설인 경우에는 30분) 당해 현장에 경비원을 도착시킬 수 있어야 한다[53].
2. 기계경비업자는 기지국에서 사고발생의 정보를 수신하여 경비원을 현장에 도착시키는데 요하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또 현장경비원에 의한 사실확인 및 기타 조치가 보다 효과적으로 강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배치하는 경비원, 대기소 및 차량 기타 장비를 충실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2) 대기소란 기지국의 지령에 따라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행하기 위해 경비원이 대기하는 시설을 말하며, 주차장의 일부구획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건물이 아닌 경우도 포함되만 노상에 정차하여 대기하는 경우의 장소는 포함되지 않는다.

④ 설명의무

기계경비업무에 있어서는 송신기기가 제일차적으로 고객의 관리·지배하에 놓이게 되므로, 송신기기의 취급요령, 고객과 경비업자간의 상호연락, 이상사태 발생시의 경비업자의 대응조치 등을 계약체결시 명확히 해 두지 않으면 적절한 경비업무를 실시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또한 기계경비업무에 있어서는 이상사태 발생시에 있어서의 대응체제가 충실하게 갖추어져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경비업무의 효과가 크게 좌우되고 그것이 직접 고객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업자의 기계경비업무 내용을 고객이 용이하게 알 수 있도록 해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비업법은 기계경비업자로 하여금 경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상대방에 대해 일정한 사항을 설명할 의무를 과하고 있다(제11조의 8).

설명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시행규칙 제43조).

1. 도난 등의 사고발생에 관한 정보를 감지할 기기의 설치장소 및 종류 기타 경비업무용 기계장치의 개요
2. 송신기기의 유지관리 방법
3.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범위 및 손해배상액에 관한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

⑤ 서류 비치의무

공안위원회는 적정한 행정지도를 위해 기지국마다 기계경비업무에 관한 일정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비치하게 함으로써 立入檢査(임검)時 경찰관으로 하여금 비치서류를 검사케 하고 있다. 기계경비업자는 기지국마다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53) 25분(3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시킨다는 말은 기계경비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시간대에 통상의 상황하에서 25(30분) 이내에 도착시킨다는 뜻이다. 따라서 예컨대 항상 교통정체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체시간을 포함하여 25분(30분) 이내에 도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25분(30분)이라는 시간은, 현장까지의 소요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그 판단에 있어서는 당해 경비업무의 전반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수의 경비원이 다수의 대상시설을 경비하고 있는 경우, 동일시간대의 이상발보건수가 경비원수를 항상 상회하여 나중에 출동하게 되는 현장에는 그 시간내에 도착할 수 없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적정하게 경비원을 배치해야 할 의무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警備業法の解說, 106면 참조.

우리의 법령에는 출동시간에 대해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정필요성을 요구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경비업자가 신속히 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난사고가 발생한 불가항력의 경우에까지 경비회사가 책임져야 하는가 라는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우리도 출동시간의 법정이 시급히 요청된다 할 것이다.

한다(제11조의 9).

1. 대기소마다 배치하는 경비원의 성명
2. 경비업무 대상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3. 기타 총리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리고 제3호의 총리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 기지국 및 대기소의 위치 및 대기소별 경비업무 대상시설의 소재지역(지도상에 기재하도록 한다)
2. 대기소마다 市町村의 구역별 경비업무대상시설수
3. 경비업무 대상시설별로 대기소에서 경비업무 대상시설까지의 노선 및 기지국에서 사고발생에 관한 정보를 수신하여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통상 소요되는 시간
4. 대기소별로 배치하는 차량 기타 장비의 종류별 수량
5. 사고발생에 관한 정보를 수신한 일시, 그 정보와 관련된 경비업무 대상시설의 명칭, 소재지와 그 정보에 응하여 취한 조치 및 결과 [54]

서류의 비치기간은 정보의 수신일로부터 1년간으로 되어 있다(시행규칙 제45조 2항).

4. 提　　言

우리의 기계경비분야는 아직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열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기계경비의 일천한 역사와 인경비에 의존해 온 고객의 고정관념, 그리고 기계경비업에 대한 인식부족과 자본부족 때문으로 판단된다. 최근 몇몇 대기업들의 기계경비분야에 대한 투자와 활동을 감안해 볼 때, 우리도 기계경비분야가 경비업계를 선도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의 기계경비의 현황이나 그 발전가능성을 논하는 것에 있지 않으며, 그 발전가능성을 어떻게 우리의 실정에 맞고 적절하게 현실화시키냐는 점에 있다.

1997년 1월부터 사경비업의 대외개방이 예정되어 있지만, 그들은 우리 기계경비업의

54) 일본에서 경비업계에 대한 각종 통계가 상세하게 발표되는 것은, 첫째로 통계자료가 되는 사항을 법규로 규정하는 법적 뒷받침과, 둘째로 법규의 근거에 근거한 임검이 잘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한다(제11조의 9).

1. 대기소마다 배치하는 경비원의 성명
2. 경비업무 대상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3. 기타 총리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리고 제3호의 총리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 기지국 및 대기소의 위치 및 대기소별 경비업무 대상시설의 소재지역(지도상에 기재하도록 한다)
2. 대기소마다 市町村의 구역별 경비업무대상시설수
3. 경비업무 대상시설별로 대기소에서 경비업무 대상시설까지의 노선 및 기지국에서 사고발생에 관한 정보를 수신하여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통상 소요되는 시간
4. 대기소별로 배치하는 차량 기타 장비의 종류별 수량
5. 사고발생에 관한 정보를 수신한 일시, 그 정보와 관련된 경비업무 대상시설의 명칭, 소재지와 그 정보에 응하여 취한 조치 및 결과 [54]

서류의 비치기간은 정보의 수신일로부터 1년간으로 되어 있다(시행규칙 제45조 2항).

4. 提　　言

우리의 기계경비분야는 아직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열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기계경비의 일천한 역사와 인경비에 의존해 온 고객의 고정관념, 그리고 기계경비업에 대한 인식부족과 자본부족 때문으로 판단된다. 최근 몇몇 대기업들의 기계경비분야에 대한 투자와 활동을 감안해 볼 때, 우리도 기계경비분야가 경비업계를 선도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의 기계경비의 현황이나 그 발전가능성을 논하는 것에 있지 않으며, 그 발전가능성을 어떻게 우리의 실정에 맞고 적절하게 현실화시키냐는 점에 있다.

1997년 1월부터 사경비업의 대외개방이 예정되어 있지만, 그들은 우리 기계경비업의

54) 일본에서 경비업계에 대한 각종 통계가 상세하게 발표되는 것은, 첫째로 통계자료가 되는 사항을 법규로 규정하는 법적 뒷받침과, 둘째로 법규의 근거에 근거한 임검이 잘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현황과 발전가능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계경비분야에로 진출할 것이 분명하다. 막상 시장이 개방되고 시장을 잠식당한 후에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세울 것이 아니라 사전에 그를 대비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집중투자하는 지혜가 시급한 때이다. 기계경비분야에 대한 투자가 몇몇 기업이나 특정분야에 대한 혜택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의 중요과제라는 점을 관계자들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의 용역경비업법은 기계경비업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가이드라인까지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용역경비업법의 태도는 기계경비업을 인경비에서 발전·분화된 경비업의 일종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수위나 관리인, 숙직이라는 관념에 젖어 온 입장에서 볼 때, 입법자로 하여금 기계경비업의 발전가능성까지 예측하여 입법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었다. 또한 우리의 용역경비업이 일본의 경비업법을 모델로 입법되었음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며 일본 경비업법도 제정 당시에는 기계경비업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제정 이후의 기계경비업의 발전상황과 각종 문제의 발생을 감안하여 1982년 법개정시에 기계경비업에 대한 규정을 대폭 추가하였음에 반하여, 우리의 경우에는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된 이후 네차례에 걸친 개정작업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적으로 정비되지 않고 있음은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55].

기계경비업에 대한 법적 규정의 보완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지고 있다. 즉, 시장개방에 따라 진출하는 외국업체들에게 최소한의 법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이를 준수케 한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기계경비에 대한 관념이 다른 현실에서[56], 일단 시장이 개방된 후에 새롭게 입법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현재의 용역경비업을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면, 용역경비업법이 외국의 법률보다 엄격하지 않은 이유로 기계경비시장은 자연히 오직 자본 및 기술만에 의한 경쟁으로 전개될 것이다. 자본과 기술만의 경쟁은 우리의 기계경비분야를 쉽게 잠식하게 될것이며 결국 기계경비업의 건전육성 및 발전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2년 앞으로 다가온 개방시기와 우리의 기계경비분야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기계경비업에 대한 법규정의 보완은 그야

55) 가장 최근의 개정은 1991년 5월 31일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문제점이 더 드러난다.

56) 예컨대 경보에 대해 출동하는 즉응체제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의 방식이며, 미국에서는 경보가 울렸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경찰서과 소방서에 연락만 하면 되므로 즉응체제의 정비가 기계경비업자의 필수적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방식을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의 기계경비시장에 진출했을 때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즉응체제를 비롯한 법규정의 정비가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지 알 수 있다.

말로 시급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각국의 기계경비업 관련 법조문을 참조하여 우리에게 적합한 기계경비업법 개정시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用役警備業法中 機械警備業 關聯條文 改正試案

제1조 [機械警備業務의 許可]

① 기계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기계경비업무와 관련된 수신기기를 설치하는 시설 또는 송신기기를 설치하는 경비업무대상시설이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칠 때에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허가신청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주소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주요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지
3. 기지국마다 당해 기계경비업무와 관련된 대기소의 명칭 및 경비업무대상시설이 소재하는 시읍면(혹은 區)의 명칭

제2조 [休閉業 및 變更등의 申告]

기계경비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7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
2. 법인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를 변경한 때
3. 주요영업소의 명칭이나 주소지를 변경한 때
4. 기지국을 폐지한 때

제3조 [기계경비업무관리자]

① 기계경비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지국마다 경비업무용 기계장치의 운용을 감독하고 경비원에 대한 지령업무를 통제하며 기타 기계경비업무를 관리하는 업무를 행하는 기계경비업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허가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기계경비업무관리자격증을 교부한다.

1. 기계경비업무 관리자강습을 받고 그 과정을 수료한 자
2. 기계경비업무의 관리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前號의 자와 동등 이상의 지식 및

능력을 가진다고 인정하는 자

* 시행령 [기계경비업무관리자의 업무]

법 제3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경비업무용 기계장치에 의한 경비업무대상시설의 경계, 경비업무용 기계장치의 유지관리 기타 경비업무용 기계장치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계획을 작성하고, 그 계획에 기초하여 경비업무용 기계장치를 운용하도록 경비원 기타의 자를 감독하는 일

2. 지령업무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령업무를 통제하기 위해 지령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하는 일

3. 경비원에게 경찰기관에의 연락에 대해 지도를 행하는 일

4. 기타 경비원의 현장교육·훈련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고 감독하는 일

제4조 [즉응체제의 정비]

① 기계경비업자는 기지국에서 도난 및 사고발생에 관한 정보를 수신한 경우에 신속하게 현장경비원에 의한 사실의 확인 및 기타 필요한 조치가 강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수의 경비원, 대기소 및 차량 기타 장비를 적절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② 기계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의 송신기기로부터 정보를 수신한 경우에 신속히 경찰기관 및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정보에 응한 조치 및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경비업자의 의무]

기계경비업자는 기계경비업무를 행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상대방에 대해 다음에 열거한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1. 당해 기계경비업무와 관련된 기지국 및 대기소의 명칭, 주소지
2. 기지국에서 도난 등의 사고발생에 관한 정보를 수신한 경우에 기계경비업자가 취할 조치
3. 도난 등의 사고발생에 관한 정보를 감지하는 기기의 설치장소 및 종류, 기타 기계경비업무용 기계장치의 개요
4. 송신기기의 유지·관리 방법
5. 당해 경비업무대상시설에 있어서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의 범위 및 손해배상액에 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

제6조 [관련서류의 비치]

기계경비업자는 기지국마다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1. 대기소마다 배치할 경비원의 씨명

2. 경비업무대상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시행령 [서류등의 비치]

1. 기지국별 대기소의 위치 및 대기소별 경비업무대상시설의 위치(지도상에 기재하는 것으로 한다).
2. 대기소별 경비업무대상시설의 수
3. 경비업무대상시설별 대기소로부터 대상시설까지의 노정 및 도난 등의 사고발생에 관한 정보를 수신한 때로부터 경비원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통상 소요되는 시간
4. 대기소별 배치차량 및 장비의 종류 및 수량
5. 도난 등의 사고발생에 관한 정보를 수신한 일시, 소재지 및 그 정보에 응해 강구한 조치 및 결과(이 사항을 기재한 서류는 당해 정보를 수신한 날로부터 1년간 비치해 두어야 한다).

부칙 [경과조치]

1. 개정법률의 시행 당시 이미 기계경비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정법률에 따른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Ⅵ. 誤報對策과 卽應體制構築

1. 美國의 誤報問題點과 對策

가. 誤報問題

미국의 경우, 경보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는 주택은 1980년대 초기에 전체의 2% 내지 5%였던 것이 1980년대 중반에는 7%로 증가하였고[57] 1980년대말까지 그 숫자는 10%까지 상승하며[58] 2000년까지는 이보다 2배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산되고 있다.[59]

Hallcrest Report의 시장분석에 의하면 경비회사와 경보기기의 설치가 급성장함에 따라 오보도 급증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 경보에 대응하는 업무부담량은 경찰의 활동을 크게 疲弊시키고 있으며, 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이미 한계점에 도달하여 경보에 대한 대응을 완전히 중지하거나 시정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정지하고 있는 곳도

2. 경비업무대상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시행령 [서류등의 비치]

1. 기지국별 대기소의 위치 및 대기소별 경비업무대상시설의 위치(지도상에 기재하는 것으로 한다).
2. 대기소별 경비업무대상시설의 수
3. 경비업무대상시설별 대기소로부터 대상시설까지의 노정 및 도난 등의 사고발생에 관한 정보를 수신한 때로부터 경비원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통상 소요되는 시간
4. 대기소별 배치차량 및 장비의 종류 및 수량
5. 도난 등의 사고발생에 관한 정보를 수신한 일시, 소재지 및 그 정보에 응해 강구한 조치 및 결과(이 사항을 기재한 서류는 당해 정보를 수신한 날로부터 1년간 비치해 두어야 한다).

부칙 [경과조치]

1. 개정법률의 시행 당시 이미 기계경비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정법률에 따른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Ⅵ. 誤報對策과 卽應體制構築

1. 美國의 誤報問題點과 對策

가. 誤報問題

미국의 경우, 경보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는 주택은 1980년대 초기에 전체의 2% 내지 5%였던 것이 1980년대 중반에는 7%로 증가하였고[57] 1980년대말까지 그 숫자는 10%까지 상승하며[58] 2000년까지는 이보다 2배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산되고 있다.[59]

Hallcrest Report의 시장분석에 의하면 경비회사와 경보기기의 설치가 급성장함에 따라 오보도 급증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 경보에 대응하는 업무부담량은 경찰의 활동을 크게 疲弊시키고 있으며, 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이미 한계점에 도달하여 경보에 대한 대응을 완전히 중지하거나 시정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정지하고 있는 곳도

있다.

한편 경보대응에 관한 경찰연구에 의하면, 경보에 의한 통보가 통보 전체의 10% 내지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95%에서 99%가 오보라고 한다. 그리고 Hallcrest Report(1985)는 과다한 오보로 인한 경찰의 부담이 법집행기관과 기계경비업자와의 양호한 활동관계 구축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가 된다고 확인하고 있다[60]. 특히 경보시스템은 규모와 복잡성, 이용하는 고객, 비지니스의 실무관행 등의 면에서 다양하며, 염가의 일반소매용 경보시스템이 보급되고 고객이 스스로(do it yourself) 설치하는 케이스가 급증함에 따라, 오보감소를 위한 대책의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다.

주택을 중심으로 한 경보시스템의 수요급증과 그에 의한 경찰 및 경보업체의 부담증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지도 모르는 요인으로, 다음에 열거하는 5가지 요인이 거론되고 있다. 즉, ① 일반소매용 경보시스템과 경보기기의 자기설치 증가, ② 도난보험료의 할인과 경비요금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③ 경보시스템의 처리향상을 위한 경보의 송신능력 개선, ④ 지역 벨 회사(Regional Bell Operating Companies)의 경보시스템 시장진출, ⑤ 신형차의 자동차용 경보기기의 표준장치라는 요인이다. 이러한 요인이 서로 복합될 경우, 경찰에의 통보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나. 警報에 대한 對應과 그 請負

경보에 대한 대응은 단지 법집행기관과 경보업체의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는 문제라고 말하여지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관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첫째로 경보에의 대응은 경찰의 책무가 아니며, 경찰이 대응하는 것은 경보시스템을 설치할만한 여유가 있는 일부시민만을 편중하는 것이고 결국 경보업체가 경찰의 희생 위에서 이익을 챙기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둘째는 법집행기관에 따라서는 이미 경보에 대응할만한 인원이 한계에 도달했으며 이것이 경보에의 대응을 민간에 이행시키는 추진력이 될른지도 모른다는 관점이다.

실제로 경보에 대한 경찰의 대응과 오보부담의 해소책으로 그를 민간에 이관시키는

57) William Cunningham and Todd Taylor, The Hallcrest Report: Private Security and Police in America, p.137(See Cha5 and 10 for a detailed discussion of the alarm industry and the false alarm problem.)

58) Crime Prevention Meas Bureau of Justice Statics, U.S. Department of Justice, 1986.

59) Interview with Charles Lavin, Executive Director, National Burglar and Fire Alarm Association(NBFAA), October 10, 1989.

60) Cunningham and Tylor, Chapter 10.

방안이 오래전부터 제안되어 왔다. 1980년대 초기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법집행기관의 간부 약 400명 가운데 57%가 경보에의 대응을 민간에 이관함에 찬성하고 있으며[61], 경보업체 기지국의 매니저들도 경보에의 대응을 업무로 받아들이는 것에 지지하거나 혹은 그 기회가 있으면 고려하였을 것이라고 답하고 있다. 오늘날 전국적인 규모의 대기업중에는 경보에 대한 대응청부를 성장가능성이 있는 영역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경비·순찰업체의 지방 매니저의 10명중 8명도 경보에의 대응에 찬성하고 있다.

다. 誤警報의 原因

오경보에 대해 연구한 "전국방범화재경보협회"(National Burglar and Fire Alarm Association)와 기타 그룹에 의하면, 오경보에는 3가지 주요원인과 몇몇 부차적인 요인이 있다. 3가지 요인이란, ① 경보시스템의 고객과 가입자의 오조작(50%-70%), ② 경비시스템의 설치 및 서비스를 행하는 경보업체직원(10%-20%), ③ 기기의 결함(10%-20%)이며, 부차적 요인으로는 전화선의 문제와 異常氣象이라는 이유를 달았다.

또한 많은 오경보는 경보센서장치의 본래 용도이외의 사용에서 기인하고 있다. 시스템 콤포넌트의 잘못된 선택과 부적절한 판매활동에 기인하는 것이다. 또한 최신형 경보시스템의 많은 부분은 주위환경의 상태에 영향을 받기 쉽게 되어 있다. 고객과 가입자의 시스템 오용에 기인하는 오경보는 고객에 대한 교육을 충실하게 하거나 고객 및 경보업체에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오경보를 줄일 수 있다. 또한 경보기의 설치工事와 서비스에 관한 문제도 기기의 기술설계 개선을 통해 점차 주의깊게 취급되고 있다. 자기진단능력과 경보검정의 메커니즘을 갖춘 "스마트 센서"(smart sensor)의 출현은 오경보의 감소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법집행기관의 관리운영자나 순찰경관은 오보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그다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이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순찰시간의 상당부분이 경보대응에 소비되고 만다는 점이다. 경찰은 오경보를 침입절도나 강도의 범행 혹은 그 미수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보신호가 작동한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경찰의 대응을 요하는 경보작동조건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잘못된 통보가 행해진 경우를 오보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오보가 경찰업무량에 부여하는 임팩트가 경찰에 행해진 모든 통보를 기준으로 한 오보의 비율로 측정된다.

이에 대해 경보업체는 오보율을 당해 지구에서 작동중인 경보시스템의 총수를 기준

61) Ibid, p.294.

으로 계측하며 이를 警報시스템當 誤警報數라고 하는데, 그들의 정의에 따른다면 대부분의 경보시스템의 작동기록은 상당히 양호하다는 결과가 된다. 경보업체는 경찰이 오보라고 간주하는 경보 가운데 실은 침입미수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으며, 환경적인 조건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원인불명의 많은 부분은 순찰경관의 경보시스템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경찰관의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곧장 확인할 수 있는 침입의 흔적이 없으면 대강대강 체크해 버린다고 고충을 털어놓고 있다.

라. 誤警報에의 對處

오경보에 대한 대처방법의 기준이 되는 것은 경보규제조례의 입법과 경보업체에 의한 고객의 교육 및 계발 프로그램의 책정이다. NBFAA가 추계한 바에 따르면, 경보규제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수가 2천 이상에 달하며, 그 내용은 대체로 ①경보시스템의 설치허가, ② 오경보의 허용한도(시스템당 연 3회에서 5회), ③ 징벌조치(단계적인 벌금형식의 방식), ④ 최종조치(문제장소에 대한 대응의 정지)로 되어 있다[62].

경찰본부에 따라서는 경보시스템의 총설치수나 경보에 대응하는 경찰의 업무량을 기준으로 볼 때 오보의 감소에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고객에 대한 교육 캠페인은 통상 경보시스템의 적절한 사용법의 지도를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Hallcrest Report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경보업체측에만 가혹한 부담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법집행기관까지 포함한 3자간의 협동을 육성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시사하고 있다.

또한 오경보문제의 대부분은 자치단체나 주 레벨의 대책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방 레벨의 전략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되고 있다[63]. 연방 차원의 전략을 세우기 위한 제1단계는, 경보시스템의 효과와 경찰업무에 미치는 오경보의 영향에 관한 경험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다. 또한 재산범죄의 억제라는 점과 침입절도 및 강도수사에 임하는 경찰업무량의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다른 도시간의 비교검토를 목적으로 한 연구가 행해질 필요가 있다.

최근 경비업체중에는 엔지니어링과 시스템설계를 개선함으로써 오경보가 잘 발생하

62) Keneth Kirschenbaum, "False Alarms", Security Dealers, February 1990, p.21.

63) 그러나 W.C.Cunningham/J.J.Strauchs/C.W.Van Meter, Private Trends 1970-2000, 1990, p.329는, 지방자치체 레벨의 경보조례입법이나 벌금에 의한 오경보의 억제방법이 비생산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연방 차원에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 않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왔다. 또한 다수의 경보업체가 고객에 대한 교육을 충실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경보의 오용과 오경보의 감소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NBFAA는 1980년대 후반에 경보기술자의 훈련과 인정을 위한 전국훈련학교의 제도를 발족하였는데, 이 훈련 프로그램은 연방 NBFAA의 지부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경보기술자의 훈련도를 높임으로써 오경보의 발생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현재 경비업체의 책임자들도 오경보문제를 컨트롤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 日本의 誤報對策과 卽應體制의 構築[64]

가. 誤報對策과 卽應體制의 整備

기계경비업무란 대상시설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기계장치를 이용한 원격감시, 원격경계활동으로 성립되어 있으므로 현장정보에 대한 파악의 適否, 이상발보(경보)를 수신한 경우의 대응조치의 適否 등에 의해 경비업무의 효과가 크게 좌우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이야 말로 상주경비에는 볼 수 없는 기계경비의 특징이라 할 것이며 그에 수반하는 문제점도 적지 않다.

첫째로, 대상시설의 정보가 얼마나 정확하게 송신되고 수신되는가 라는 문제이다. 기계경비는 인간의 五感作用 대신에 센서를 사용하게 되지만, 센서에 의해 송신되어 오는 정보는 어디까지나 단편적인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수신한 경비원은 현장의 종합적인 정세를 판단할 여유가 없이 경찰기관에 통보하는 경우가 많다. 즉 오보 혹은 부정확한 정보에 의한 부적절한 경비업무의 문제이다.

둘째로, 대상시설의 정보를 수신한 경우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조치의 확보에 관한 문제이다. 기지국의 부적절한 지령업무와 현장에서의 뒤늦은 사실확인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되는 사안이 발생하기 쉽다는 점이다. 즉, 즉응체제의 정비에 관한 문

64) 일본경찰은 긴급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都道府縣 경찰별로 통신지령실을 운용하고 있다. 지령실은 신고를 받는 즉시 순찰차와 파출소의 경찰관을 현장에 급파하는 동시에 사고규모를 감안하여 긴급배치를 내리고, 타지역 경찰에게도 통보하여 기민하고 조직적으로 인명구조와 사고수습에 나선다. 교통체증과 시설물의 복잡화 등으로 대응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통신지령실에 지도자동표시 시스템을 운용하고 컴퓨터로 상황정보의 처리 및 시달을 신속화하며, 택시회사와 경비회사 등 민간과도 신속한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다. 경찰이 1993년 1년간 시민들로부터 신고받은 자진피해를 비롯한 각종사고는 4만 3,348건이었으며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5분 47초였다. 동아일보 1994년 10월 37일자 기사 "선진국의 구조-구난체계" 참조.

지 않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왔다. 또한 다수의 경보업체가 고객에 대한 교육을 충실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경보의 오용과 오경보의 감소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NBFAA는 1980년대 후반에 경보기술자의 훈련과 인정을 위한 전국훈련학교의 제도를 발족하였는데, 이 훈련 프로그램은 연방 NBFAA의 지부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경보기술자의 훈련도를 높임으로써 오경보의 발생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현재 경비업체의 책임자들도 오경보문제를 컨트롤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 日本의 誤報對策과 卽應體制의 構築[64]

가. 誤報對策과 卽應體制의 整備

기계경비업무란 대상시설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기계장치를 이용한 원격감시, 원격경계활동으로 성립되어 있으므로 현장정보에 대한 파악의 適否, 이상발보(경보)를 수신한 경우의 대응조치의 適否 등에 의해 경비업무의 효과가 크게 좌우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이야 말로 상주경비에는 볼 수 없는 기계경비의 특징이라 할 것이며 그에 수반하는 문제점도 적지 않다.

첫째로, 대상시설의 정보가 얼마나 정확하게 송신되고 수신되는가 라는 문제이다. 기계경비는 인간의 五感作用 대신에 센서를 사용하게 되지만, 센서에 의해 송신되어 오는 정보는 어디까지나 단편적인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수신한 경비원은 현장의 종합적인 정세를 판단할 여유가 없이 경찰기관에 통보하는 경우가 많다. 즉 오보 혹은 부정확한 정보에 의한 부적절한 경비업무의 문제이다.

둘째로, 대상시설의 정보를 수신한 경우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조치의 확보에 관한 문제이다. 기지국의 부적절한 지령업무와 현장에서의 뒤늦은 사실확인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되는 사안이 발생하기 쉽다는 점이다. 즉, 즉응체제의 정비에 관한 문

64) 일본경찰은 긴급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都道府縣 경찰별로 통신지령실을 운용하고 있다. 지령실은 신고를 받는 즉시 순찰차와 파출소의 경찰관을 현장에 급파하는 동시에 사고규모를 감안하여 긴급배치를 내리고, 타지역 경찰에게도 통보하여 기민하고 조직적으로 인명구조와 사고수습에 나선다. 교통체증과 시설물의 복잡화 등으로 대응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통신지령실에 지도자동표시 시스템을 운용하고 컴퓨터로 상황정보의 처리 및 시달을 신속화하며, 택시회사와 경비회사 등 민간과도 신속한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다. 경찰이 1993년 1년간 시민들로부터 신고받은 자진피해를 비롯한 각종사고는 4만 3,348건이었으며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5분 47초였다. 동아일보 1994년 10월 37일자 기사 "선진국의 구조-구난체계" 참조.

제이다.

셋째로, 기계경비업무에 있어서는 대상시설의 정보를 수신하고 지령·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는 업무와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필요한 경비조치를 취하는 업무가 분업화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업무의 분업화와 업무내용의 다양화로 인해 금후 정보처리와 지령·통보업무만을 행하는 경비업무가 출현할 경향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 개정전의 경비업법에서는 당시의 기계경비업의 미발달로 이러한 사정을 예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기계경비업에 대한 법적 규제가 전혀 규정되지 않았었다[65]. 그러나 그 후 개정논의가 이루어질 당시에는 이미 상당수의 기계경비업자가 존재하였고[66], 수신후의 부적절한 조치와 오보문제[67]가 심각하게 제기되게 되었다. 이에 개정된 경비업법은 기계경비업무의 특징을 고려하여 즉응체제의 정비를 의무화한 규정을 새롭게 추가하게 되었다[68].

경비업법 제11조의 7 [즉응체제의 정비]

"기계경비업자는 都道府縣 公安委員會則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基地局에 있어서 도난 등의 사고발생에 관한 정보를 수신한 경우에 신속히 현장에 있어서의 경비원에 의한 사실의 확인 기타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수의 경비원, 대기소(경비원이 대기하는 장소를 말한다) 및 차량 기타의 장비를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일본의 오보해소 대책과 즉응체제정비의 운용에 대해 소개하기로 한다.

나. 警察廳의 "運用要領"

일본에 있어서 기계경비업에 대한 본격적인 오보대책은 이미 1985년 부터 강구되기

65) 개정전의 경비업법 규정에는 "기계경비"라는 문언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66) 예컨대 1981년 현재 기계경비업자수는 456명이었고 기계경비원수는 약 7,500명이었다. 衆議院 지방행정위원회 조사실 자료, 警備保障新聞 제156호(1982.5.21) 참조.

67) 경찰청이 오보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981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개월간 오보는 약 75%였다고 한다. 警備保障新聞 제156호(1982.5.21) 참조.

68) 개정 당시, 경비업무용 기계장치의 성능, 설치상황, 보수관리상황 등에 대해서도 법적 규제조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기계경비용 센서의 개발이 계속해서 진전할 상황에 있었다는 점, 오보에 대해 제1차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경비업자 자신이며 그들의 기업노력으로 개선이 기대된다는 이유로, 법적 규제에 대한 규제입법은 행해지지 않았다. 警備業法の解說, 93면 참조.

시작되었다. 警察廳은 기계경비업자의 110번[69] 통보방법과 오보대책, 즉응체제 정비의 추진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1985년 6월 7일 "警察機關에 대한 機械警備業者의 連絡 등에 관한 運用要領"(이하 "運用要領"이라 한다)을 각 都道府縣 경찰에 通達하고, 같은 날 "警察機關에 대한 機械警備業者의 신속하고도 적절한 連絡·通報의 實施 등에 대해"라는 요청문을 全國警備業協會長에게 보내 관계회사에 대한 周知와 指導를 요청하였다[70][71].

이 운용요령은, 1982년 경비업법이 개정되었을 때 추가된 제11조의 7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달된 것인데, 동 규정의 입법취지에 대해 일본 경찰청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 이 규정은 경비업자가 기지국에서 異常發報(경보)를 수신한 경우에 현장에서 사실확인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만큼의 체제를 갖추지 않은 채 경비업무대상시설을 무제한 늘리는 등 영리추구에만 열중하는 영업형태를 많이 볼 수 있으며, 그 결과, ① 기계경비업자가 대상시설로부터의 정보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안이하게 경찰기관에 연락만을 반복할 뿐, 즉응체제를 갖추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② 경비원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지 않아 도난 등의 피해를 확대시키고, ③ 경비원이 현장에 도착하더라도 현장검색을 소홀히 한 나머지 피해사실을 간과하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다발하고, 경비업무의 적정한 실시에 해를 줄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2. 基地局에서 異常發報(경보)를 수신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경비원에 의한 사실확인 등의 방법으로 정보내용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파악하여 경찰기관에의 연락·통보,

---

69) 110번은 우리나라의 112와 같다. 일본의 경우, 긴급통보는 관할 都道府縣의 구역내에서 110번으로 행하도록 하고 있다. 즉, 항상 110번 이외의 방법으로 행하는 것은 110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경찰이 신속하고도 적절한 初動措置를 강구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기계경비업자 및 경비원이 불가피하게 항시 110번 이외의 방법으로 긴급통보를 행하는 경우에는, 경비업자는 그 내용 및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전에 都道府縣 경찰본부의 경비담당과에 그 검토내용을 보고하고 긴밀한 연락을 취해야 한다. 또한 일반가입자로 부터 자동전송장치를 설치한 가입전화(전송전화)를 통해 110번으로 긴급통보를 행하는 것은, 110번 특유의 발신전화기의 "保留機能" 및 "送信(逆信)機能"을 활용할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70) "機械警備業者からの警察機關への連絡等に關する運用要領","機械警備業者からの警察機關に對する迅速かつ適切な連絡·通報の實施等について(要請)", 防犯防災新聞 昭和60년 7월 15일자 참조.

71) 消防廳도 1987년 8월 기계경비업자가 행하는 "즉시통보"에 관한 당면의 방침과 즉시통보를 인정하기 위한 조건을 통지하고, 1988년 2월 26일에는 즉시통보의 "운용상의 유의점"과 "조사·보고요령"을 각 都道府縣 消防主管部長에게 통지하였다고 보도되고 있다. 防犯訪災新聞 165호 (1988.3.1) 참조.의거

현장보존 등의 필요한 조치가 신속하게 취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경비원, 대기소 및 차량 기타 장비를 적절하게 배치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3. 경비업무의 중요성과 사회적 역할을 감안할 때, 경비업자의 규모에 관계없이 적정한 경비업무의 획득·제공이 행해져야 할 것이며, 그를 위해 경비업자 스스로의 책임하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4. 특히 기계경비업무는 경비업무대상시설로부터 떨어진 기지국에서 어떤 이상사태가 발생하였다고 생각되는 정보를 수신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활동을 행하는 것이므로, 기계경비업자는 즉응체제를 정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정보를 수신한 경우에는 즉시 당해 정보의 사실확인 등의 경계조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일반적인 경비업무용 기계장치는 인간의 五感作用에 필적할 만큼 사고 등의 발생에 관한 정확한 認知, 내용파악이 가능한 성능을 갖추었다고는 말할 수 없으므로, 기지국에서 수신한 정보에 기초하여 현장경비원에 의한 사실확인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경찰청은 기계경비업자가 현장경비원에 의한 사실확인을 행하기 전에 경찰기관에 연락하는 "卽時通報"와 경비원이 현장을 확인한 후에 경찰의 긴급출동을 요청하는 "確認通報"의 두가지로 구분하여, "確認通報"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卽時通報"를 행하도록 하였다.

① 기지국에서 이상발보(경보)를 수신하였는데 경비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이전에 대상시설로 부터 이상발생의 연락이 있었을 때 등 현장에서 이상을 확인한 경우

② 二重發報[72]를 수신한 경우 및 푸시 버튼(Push Button) 방식의 발신기를 설치한 대상시설로부터 이상발보를 받고 기지국에서 그 대상시설에 사실을 확인하는 전화연락을 취했지만 응답이 없는 경우에, 당해 대상시설, 정보의 종류 및 수신시기 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당해 정보가 진정 도난 등의 사고발생에 따른 정보일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된 때

③ 특정 대상시설 또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동일수법의 중요침입도범이 다발하고 있는 등의 상황에서, 당해 사범의 방지와 조기해결을 위해 특정 대상시설 또는 특정지역에 있어서 당해 都道府縣 경찰의 기준에 기초하여 일정기간 즉시통보를 행하는 경우

72) 하나의 대상시설에 두 계통의 발신기를 설치해 둔 경우, 그 복수의 발신계통으로 부터 전후하여 사고발생에 관한 정보가 발신되는 것을 말한다.

④ 일정한 지역, 시간대, 대상시설에 대해 당해 都道府縣 경찰의 기준에 의거하여 즉시통보를 행하는 경우 등이다.

동시에 警察廳은 각 都道府縣 경찰이 경비업자에 대해 卽時通報에 관한 지도를 행하는 경우의 유의사항으로, 당해 都道府縣 경찰본부의 경비업 담당과가 관계업자를 초치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통보기준, 그 이유 및 실시시기 등을 명시한 문서를 교부하고, 즉시통보를 효과적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통보기준의 확인 및 경비원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기계경비업자가 기지국에서 이상발보를 수신한 경우에 경비원에 의한 사실확인에 기초하여 경찰기관에 연락·통보(확인통보)를 행할 때의 그 필요성의 판단요령 및 시기 등에 대해서는 都道府縣 경찰이 구체적으로 지도하도록 하였다. 그 경우 오보를 두려워 한 나머지 통보시기를 놓친다거나 경비원의 공명심 등으로 통보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또한 경찰기관에의 연락에 오보가 있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① 경비업자는 오보의 원인조사 및 개선조치를 강구하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경찰에 통보한다.

② 동일한 경비대상시설에서 계속하여 2회 이상의 오보가 있은 경우 또는 동일한 기계경비업자의 경비대상시설에서 오보가 다발하는 경우, 경비업자는 당해 대상시설에 관한 오보방지에 대해 발본적인 개선조치를 강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경찰에 보고한다.

③ 오보율이 현저하게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오보의 원인이 지령업무 혹은 경비업무용 기계장치의 유지관리 미비에 기인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비업자는 발본적인 개선조치를 강구한다.

그리고, 기계경비업무중에 경비원이 대상시설을 순회하는 경우에 ① 즉응체제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 즉 25분(30분) 이내에 [73] 다른 현장에 경비원을 도착시킬수 없는 구역이 발생하는 경우와, ② 그 기준 이내에 경비원을 도착시킬 수 없는 점에 대해 교통사고, 天災 등 부득이한 이유가 없는 때에는 경비업법에 위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급히 즉응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다[74].

경찰청의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사이타마현(埼玉縣) 경찰본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防犯課, 捜査三課, 通信司令部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해 '운용요령'을 책정하여 1986년 7월 1일 부터 실시하였고[75], 東京都 警視廳은 1988년 8월 1일부터 시험적으로 이를

운용하기 시작하였다[76].

다. 警視廳의 "誤發報 狀況調査"

그러나 誤報問題 解消를 위한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였던 것 같다[77].

이에 警視廳 防犯總務課는 기계경비의 센서에 의한 誤報問題를 해소하기 위하여 異狀發報狀況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는 우리에게도 많은 참고가 된다고 판단되므로 상세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먼저 경시청 방범총무과가 1991년 9월 1일부터 1개월간 98개 기계경비실시업자를 상대로 경보상황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眞報率은 200건에 1건의 비율에 불과하여

---

73) 일반적으로 출동시간에 대해서는 警備業法에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되고 있으나 이는 오류이다. 경비업법 제11조의 7에 의한 경비원, 대기소 및 차량 기타 장비의 배치 등 즉응체제의 기준에 관해서는 都道府縣 公安委員會規則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에 의하면 기지국에서 도난 등의 사고발생에 관한 정보를 수신한 경우에는 수신한 때로 부터 25분 이내(교통편이 특히 나쁜 지역내에 소재하는 경비업무 대상시설에 있어서는 30분 이내)에 현장에 경비원을 도착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25분(30분) 이내라는 시간은, 기계경비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시간대의 통상의 상황하에서 25분(30분) 이내에 도착하도록 하는 것이지, 현장까지의 경로에 항상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체시간을 포함하여 25분(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다. 또한 25분(30분)이라는 시간은 단지 대기소에서 대상시설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25분(30분)이면 된다는 뜻이 아니며, 그 관단에 있어서는 당해 기계경비업무의 상황 전반을 고려하여야 한다. 예컨대 소수의 경비원으로 다수의 대상시설에 대한 경비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 동일 시간대의 이상발보 건수가 경비원수를 항상 상회하여 경비원 한사람이 계속해서 2개소 이상의 시설을 순회해야 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나중에 순회하는 현장에 25분(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적정하게 경비원을 배치할 의무에 위반된다고 해석되고 있다. 警察廳保安部 防犯企劃課 감수, 警備業法の解說[개정초판], 1987, 全國警備業協會, 106쪽 이하 참조. 그러나 복잡한 교통사정과 인간의 다양화는 25분(30)이라는 시간을 엄수하기 어렵게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50분~60분이나 걸리는 현상이다.

74) Security System은 크게 英美를 비롯한 "歐美 타입"과 "日本 및 아시아 타입"의 둘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긴급대처를 행하는 것은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국가의 특징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미국의 Security System은 오랜 동안 (1) 이상감지기능과 경보기능의 경보기 시스템과, (2) 이상을 감지하고 온라인으로 관제센터에 통보하면 관제의 통보원이 경찰서와 소방서에 통보하는 시스템의 두가지 방식으로 운용되어 왔다. (2)의 경우의 긴급대처는 경찰관과 소방관이 행한다. 그런데 작금에 이르러 캘리포니아의 베벌리힐즈나 산타모니카를 비롯한 고급주택가를 중심으로 긴급대처를 중시하는 일본 및 아시아 타입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加藤善次郎, 諸外國のセキュリティ事情, 警備業年鑑 1993, 88쪽 이하 참조.

75) 防犯防災新聞 제140호(1986.9.15) 참조.

76) 防犯防災新聞 제175호(1988.8.1) 참조.

오보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냈다(〈표 6-1〉 참조).

〈표 6-1〉 정보상황(기계경비 대상시설 66,630 개소)

구 분		항 목	
異常發報件數	26,282건	異常發報率	39.44%
眞報件數	125건	眞報率	0.48%
誤報件數	26,157건	誤報率	99.52%
警察機關에의 連絡件數	177건	通報率	0.67%

이어서 기계경비의 개선을 목적으로 관내 기계경비업자의 이상경보상황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함께 검토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를 동년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無人센서와 有人센서별로 각각 경보건수, 진보건수, 오보건수, 오보율을 집계하고, 오보가 있을 때마다 그 사유를 고객측과 警備會社側이 각각 기입하여 다음해 1월 1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리고 1개월간을 개선기간으로 정한 후에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誤發報 調査表"에 기입하여 회답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조사하고, 그 개선책을 보고·제출토록 하였다.

〈표 6-2〉 무인센서에 의한 오경보상황

조사(보고)시기	대상건수	경보건수	경보율	진보건수	진보율	오보건수	오보율
기초데이터(1993.10)	62,645	22,967	36.7%	186	0.8%	22,781	99.2%
제1회 보고(1992.2)	67,122	23,156	34.5%	161	0.7%	22,995	99.3%
제2회 보고(1992.3)	65,718	23,554	35.8%	150	0.6%	23,404	99,4%
제3회 보고(1992.4)	66,592	22,574	33.9%	169	0.7%	22,405	99.3%

먼저 "無人센서"의 경우, 경보율은 대략 35% 전후로 추이되고 있는데 경보건수에 대한 진보율은 평균 0.7%에 불과하고 오보율은 무려 9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2〉 참조).

77) 예를 들면 東京都 警視廳의 조사에 의하면, 1988년 1월 1일부터 동년 6월까지 총 229건의 통보 가운데 眞報率이 72%였다고 밝히고 있는데 대해, 1992년 2월부터 4월까지의 조사결과에는 無人센서에 의한 오보율이 무려 99.3%에 달하였고 진보율은 기껏해야 0.7%의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볼 때 이를 증명할 수 있다.

〈표 6-3〉 경비회사측에 기인하는 오보원인(무인센서의 경우)

오 보 원 인	오 보 건 수			
	기초 데이터	재1회 보고	제2회 보고	제3회 보고
기계의 노후	265(3.0)	1,931(22.1)	401(4.9)	422(5.2)
기타	8,699	6,800	7,925	7,655
센서의 調整不良	231(2.6)	191(2.2)	1,557(18.7)	1,706(21.1)
센서의 設置場所不良	102(1.1)	67(0.8)	119(1.4)	22(0.3)
센서의 誤選擇		19(0.2)	29(0.3)	22(0.3)
유지관리시의 不解除		18(0.2)	8(0.1)	2(0.02)
원인불명	8,256(92.1)	6,505(74.5)	6,212(74.6)	5,903(73.1)
계	8,964	8,731	8,332	8,077

〈표 6-4〉 유저측에 기인하는 오보원인(무인센서의 경우)

오 보 원 인	오 보 건 수			
	기초 데이터	제1회 보고	제2회 보고	제3회 보고
센서의 不解除	7,477(54.1)	8,848(62.0)	7,875(52.5)	8,954(62.5)
기타	6,340	5,416	7,197	5,374
부적절한 기기조작	992(7.2)	397(2.8)	352(2.3)	331(2.3)
창문 등의 시건망각	848(6.1)	875(6.1)	46(0.3	864(6.0)
기상현상 및 동물 등		1,105(7.7)	1,128(7.5)	306(2.1)
유지관리시의 不解除		353(2.5)	1,498(9.9)	301(2.1)
원인불명	2,003(14.5)	2,686(18.8)	4,173(27.7)	3,572(24.9)
계	13,817	14,264	15,072	14,328

이 가운데 경비회사측에 기인한 오보율이 약 37%이며 고객측에 기인한 오보율은 62.8%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오보의 원인을 각각 살펴 보면 경비회사측의 원인으로는 "기계의 노후"에 의한 오보가 8.8%였고 "센서의 조정불량" 등 인위적인 미스가 12.1%, 기타 "원인불명" 78.6%로 밝혀졌으며(〈표 6-3〉 참조), 유저측의 원인으로는 "센서의 不解除"가 57.7%로 가장 높고 "부적절한 기계조작"과 "창문의 不施鍵이 8.8%로 나타났다(〈표 6-4〉 참조).

한편 "有人센서"의 경우 발보율은 0.75%로 극히 낮았으나, 無人센서에 비해 오보율

이 당연히 낮을 것으로 기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결과 오보율이 무려 9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인센서의 효과에 의문을 낳게 하였다(〈표 6-5〉 참조).

〈표 6-5〉 유인센서에 의한 오발보상황

조사(보고)시기	대상건수	경보건수	경보율	진보건수	진보율	오보건수	오보율
기초데이터(1993.10)	16,127	155	0.95%	5	3.2%	150	96.8%
제1회 보고(1992.2)	16,949	102	0.60%	4	3.9%	98	96.1%
제2회 보고(1992.3)	17,578	152	0.86%	6	3.9%	146	96.1%
제3회 보고(1992.4)	17,780	101	0.57%	2	2.0%	99	98.0%

〈표 6-6〉 유인센서에 있어서의 오보원인

오보원인			오보건수			
			기초 데이터	제1회 보고	제2회 보고	제3회 보고
경보건수			155	102	152	101
오보건수			150	98	146	99
경비회사측에 원인			4(2.7)	3(3.1)	1(07)	2(2.0)
오보원인	기계의 노후		2(1.3)			
	기타		2	3	1	2
		기기 불량	1(0.7)	2(2.0)		
		배선 불량	1(0.7)	1(1.0)		
		원인 불명			1(0.7)	2(2.0)
유저측에 원인			146(7.2)	95(96.9)	145(99.3)	97(98.0)
오보원인	오조작		70(6.1)	84(85.7)	116(79.5)	79(79.8)
	물건접촉		34	7(7.1)	19(13.7)	3(3.0)
	기타		39	3(3.1)	7(4.8)	9(9.1)
	원인불명		3(14.5)	3(3.1)	3(2.1)	6(6.1)

주; 괄호안의 숫자는 오보건수에 대한 비율을 나타냄.

총 오보건수(483건) 가운데 경비회사측에 기인한 오보율은 2%로 극히 낮은데 비하여 고객측에 기인한 오보율은 98%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오보의 원인을 각각 살펴 보면 경비회사측의 원인으로는 "기계의 노후", "기계불량", "배선불량" 등이 원인

이었고, 고객측의 원인으로는 "오조작"이 70.8%로 대단히 높고 "물건접촉에 의한 경보"라는 극히 단순한 미스에 의한 오보도 1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6〉 참조). 따라서 유인센서의 오보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저대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무인센서와 유인센서 공히 고객측에 의한 오보가 과반수를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따라서 유저에 대한 계몽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즉응체제 정비에 있어서 급선무이며, 그에 따라 대폭적인 거선을 가능성이 엿보였다. 한편, 경비업자측의 오보원인 가운데 특징적인 점은 "원인불명"이 약 8할에 달하고 있는 사실인데, 그것은 이상발보를 수신하고 현장대처에 급행하는 경비원이 시스템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고 정기점검 등의 관리업무를 소홀히 했다는데 기인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라. 警視廳의 "誤發報 抑止策"

이상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警視廳은 "적은 인원으로 효율높고 良質의 警備를 제공하기 위하여"라는 副題目의 "誤發報 抑止策"[78]을 작성하여, 1992년 10월 21일 설명회에 참석한 기계경비업자에게 배포하고 검토와 개선을 행하도록 요청하였다. 동 "抑止策"은 센서 設置上의 留意點을 센서 종류에 따라 상세하게 기술하고 동시에 유저 對策上의 留意點까지 기술한 방대한 것이었다. 이러한 행정의 노력에 부응하여 기계경비업자도 오보대책에 착수한 결과, 1993년의 조사는 誤發報가 대폭적으로 개선되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즉, 1993년 상반기에 있어서의 경비회사로부터의 110번 통보 1,526건 가운데, 眞報 42%, 誤報 58%, 眞報 641건에 대한 검거율은 13.3%였다. 885건의 오보내용을 보면 관리부족 469건(53%), "고장" 330건(37.3%), 기타 9.7%로 나타났는데, 소음, 유지관리, 고장 등이 37%, 인위적 미스가 52%에 달해 기기 등에 대한 補修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각 경비회사가 행한 구체적인 개선책을 보면, ① 영업사원과 현장대처원이 일체가 되어 유저 대책을 강구하였다, ② 현장대응시간을 개선하여 대기소를 증설하였다, ③ 경보시간을 개선하여 근무시간대를 연장하였다, ④ 원거리에 있는 경비대상시설의 계약을 해제하였다, ⑤ 설치기기를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였다. ⑥ 현장대처요원의 교체

78) 警備業年鑑 1993, 警備保障新聞社, 158-179쪽.

등이었다. 특히 모회사의 경우, 사장 스스로의 진두지휘하에 철저한 유저 계몽대책을 실시한 결과, 매월 900건이었던 警報件數를 500건으로까지 감소시키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고 소개하고 있다[79].

3. 提　言

오보문제는 미국과 일본의 기계경비분야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난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앞으로 경찰과 기계경비업자와의 관계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미 일선파출소의 경찰관은 오보에 의한 경찰력의 부담문제를 호소하는 등, 오보는 외국만의 문제점이 아니라 오늘 그리고 내일의 우리의 현안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은 오래 전부터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오보해소에 착수하여 왔으나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우리는 미국과 일본의 경험칙으로 부터 다음과 같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로, 즉응체제의 정비라는 측면에서 그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적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일본 경찰청이 즉시통보와 확인통보의 기준을 마련하여 기계경비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동경 경시청이 오보원인을 규명하여 그 억지책을 제시할 수 있는 것도 즉응체제의 정비라는 경비업법상의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미국의 경우에는 즉응체제의 정비가 법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과는 달리 더욱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둘째로 오보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보원인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원인규명이 선행되지 않은 대책수립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보의 대부분이 고객의 오조작, 기기의 불량, 설계자 및 설치자의 미숙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의 112 신고체제를 감안한 오보원인의 규명작업에 시급히 착수하여야 한다.

셋째로, 오보감소책은 단지 벌칙이나 행정처분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도

79) 1988년에 消防廳이 설치한 자동통보시스템 조사연구위원회의 보고서는, 자동통보시스템을 구축에는 즉시통보와 복지시설·병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비상통보시스템의 보급이 열쇠가 된다고 하고 있다. 그 가운데 즉시통보는 그 과반수가 자동화재통보설비의 임의설치대상물이기 때문에 즉시통보대상으로 하는 데에는 기기설치와 보수 등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으며, Home Security에 대해서는 그 기능과 체크기능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등이었다. 특히 모회사의 경우, 사장 스스로의 진두지휘하에 철저한 유저 계몽대책을 실시한 결과, 매월 900건이었던 警報件數를 500건으로까지 감소시키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고 소개하고 있다[79].

3. 提　言

오보문제는 미국과 일본의 기계경비분야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난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앞으로 경찰과 기계경비업자와의 관계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미 일선파출소의 경찰관은 오보에 의한 경찰력의 부담문제를 호소하는 등, 오보는 외국만의 문제점이 아니라 오늘 그리고 내일의 우리의 현안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은 오래 전부터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오보해소에 착수하여 왔으나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우리는 미국과 일본의 경험칙으로 부터 다음과 같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로, 즉응체제의 정비라는 측면에서 그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적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일본 경찰청이 즉시통보와 확인통보의 기준을 마련하여 기계경비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동경 경시청이 오보원인을 규명하여 그 억지책을 제시할 수 있는 것도 즉응체제의 정비라는 경비업법상의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미국의 경우에는 즉응체제의 정비가 법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과는 달리 더욱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둘째로 오보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보원인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원인규명이 선행되지 않은 대책수립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보의 대부분이 고객의 오조작, 기기의 불량, 설계자 및 설치자의 미숙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의 112 신고체제를 감안한 오보원인의 규명작업에 시급히 착수하여야 한다.

셋째로, 오보감소책은 단지 벌칙이나 행정처분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도

79) 1988년에 消防廳이 설치한 자동통보시스템 조사연구위원회의 보고서는, 자동통보시스템을 구축에는 즉시통보와 복지시설·병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비상통보시스템의 보급이 열쇠가 된다고 하고 있다. 그 가운데 즉시통보는 그 과반수가 자동화재통보설비의 임의설치대상물이기 때문에 즉시통보대상으로 하는 데에는 기기설치와 보수 등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으며, Home Security에 대해서는 그 기능과 체크기능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감독청인 경찰의 주도하에 기계경비업자와 고객이 삼위일체가 되어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일방적으로 기계경비업자에게 오보해소를 요구하거나 벌칙을 가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은 외국의 사례에서 명백히 밝혀졌기 때문이다.

Ⅶ. 認許可 및 行政指導

1. 認許可 및 法的規制의 必要性

오늘날 사경비분야의 임무가 점차적으로 범죄의 탐지와 예방에 있어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종전에는 공권력에 의해 행해졌던 많은 업무들이 民營化(privatization)됨에 따라서 오늘날 사경비원들은 많은 경우에서 그들이 수행하는 일의 성격상 경찰관들과 매우 유사하고 시민들의 법적으로 규정된 권리를 위반할 수 있는 동일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공적인 법집행 공무원들이 받는 체계적이고 전문적 훈련이나 교육 등을 받지 못하고, 또한 공적인 법집행관들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행정적인 또는 법적인 통제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오늘날 사경비원들에 의한 시민권의 침해, 권한의 남용, 비윤리적인 기업행위나, 총기류오용, 부적절한 지휘감독 등의 제반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다. 또한 사경비업체에서 제공되는 경보장치 서비스도 종종 공적인 법집행관들에게 심각한 문제들을 제공한다. 한 예로서 경보서비스는 기계에 대해서 잘 알지못하는 소비자들에게 사기적인 방법으로 잘못 판매되기도 하며, 정상적인 경보서비스들도 높은 誤警報(false alarm)율로 인하여 많은 논쟁과 마찰의 주요 원인으로서 경찰기관에 업무상의 혼란과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오늘날 점차 정부의 간섭 및 규제를 줄여나가는 전반적인 추세속에서도 경비업무활동을 단지 민법상의 규율에만 맡기지 않고 공법상의 규제를 가하는 것은, 고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며 건전한 사경비업체의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경비업계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규제와 인허가는 매우 광범위한 부정적 결과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법무부에 의해 1985년에 시행된 사경비업에 관한 한 연구는[80]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들을 제시하고 있다: 낮은 수준의 인력, 근무자들의 높은 이직율, 사업수명의 단명, 내부적인 사기와 범죄행위, 위험한 상황에 대한 대처회피, 책임보험

감독청인 경찰의 주도하에 기계경비업자와 고객이 삼위일체가 되어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일방적으로 기계경비업자에게 오보해소를 요구하거나 벌칙을 가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은 외국의 사례에서 명백히 밝혀졌기 때문이다.

Ⅶ. 認許可 및 行政指導

1. 認許可 및 法的規制의 必要性

오늘날 사경비분야의 임무가 점차적으로 범죄의 탐지와 예방에 있어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종전에는 공권력에 의해 행해졌던 많은 업무들이 民營化(privatization)됨에 따라서 오늘날 사경비원들은 많은 경우에서 그들이 수행하는 일의 성격상 경찰관들과 매우 유사하고 시민들의 법적으로 규정된 권리를 위반할 수 있는 동일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공적인 법집행 공무원들이 받는 체계적이고 전문적 훈련이나 교육 등을 받지 못하고, 또한 공적인 법집행관들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행정적인 또는 법적인 통제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오늘날 사경비원들에 의한 시민권의 침해, 권한의 남용, 비윤리적인 기업행위나, 총기류오용, 부적절한 지휘감독 등의 제반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다. 또한 사경비업체에서 제공되는 경보장치 서비스도 종종 공적인 법집행관들에게 심각한 문제들을 제공한다. 한 예로서 경보서비스는 기계에 대해서 잘 알지못하는 소비자들에게 사기적인 방법으로 잘못 판매되기도 하며, 정상적인 경보서비스들도 높은 誤警報(false alarm)율로 인하여 많은 논쟁과 마찰의 주요 원인으로서 경찰기관에 업무상의 혼란과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오늘날 점차 정부의 간섭 및 규제를 줄여나가는 전반적인 추세속에서도 경비업무활동을 단지 민법상의 규율에만 맡기지 않고 공법상의 규제를 가하는 것은, 고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며 건전한 사경비업체의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경비업계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규제와 인허가는 매우 광범위한 부정적 결과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법무부에 의해 1985년에 시행된 사경비업에 관한 한 연구는[80]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들을 제시하고 있다: 낮은 수준의 인력, 근무자들의 높은 이직율, 사업수명의 단명, 내부적인 사기와 범죄행위, 위험한 상황에 대한 대처회피, 책임보험

의 부족, 허위 광고, 부적절한 장비, 상충되는 근무복 디자인, 공격적이고 비전문적인 기술, 허위적인 판매기술, 잘못된 응찰과정등.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가장 광범위하게 논의되는 처방으로서는 첫째로, 훈련과 교육에 대한 강조, 면허증이나 자격증제도 실시, 인허가의 기준강화 등을 통한 경비업의 '상향적인 標準化'(standardization)와, 둘째로는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지도감독 등을 통한 '공적인 規制'(regulation)의 강화이다. 즉 공권력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경비업에 대한 적절한 규제나 지도감독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81] 이러한 전문성에 대한 추구에는 더 많은 인허가에 관한 요구사항들과, 업무와 교육훈련에 대한 계량화된 기준들이 요구된다. 오늘날 각국에서 일정 수준의 훈련을 요구하는 정부의 규제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들에는 반드시 교육훈련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이다. 즉 오늘날 각국의 사경비업계는 인허가요건과 정부의 규제, 경비원의 교육, 훈련 등이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2. 韓國의 認許可 및 法的規制

사경비의 문제들에 대한 처방으로 가장 먼저 논의되는 것이 업체의 설립에 대한 인허가과정이다. 국가는 이를 통해 사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80) Crime and Protection in America: A Study of Private Security and Law Enforcement Resources and Relationships,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1985.

81) 미국의 경우 사경비의 규모나 활동이 공권력 이상으로 발달하였지만 그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사경비업무의 특수성과 일반 시민들의 基本權 侵害에 대한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주장되고 있다.(U.S. Advisory Commission on Inter-governmental Relation, State and Local Relation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1981, p.28.)

① 사경비업은 개인의 생명재산을 범죄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 바, 그 職務를 行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사경비의 目的이 犯罪의 防止에 있는 한, 일반 시민과의 접전이 불가피하다. 이때문에 체포 구금 수색 압수 그리고 자백 증언 등을 요구하는 수도 있고, 이것들은 憲法上의 기본적 인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경찰에 대해서도 強制力의 行使에 있어서 엄격한 제약을 두고 있는 이상, 사경비에 대해서도 같은 제약이 필요하다.

③ 위험한 범죄로 부터 自身의 身邊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경비원이 武器를 携帶하여 상대를 殺傷할 가능성이 있는 한, 무기의 휴대, 사용에 관한 규제가 필요하다.

④ 사경비업의 제복이나 장비는 경찰의 그것과 유사하여 일반시민의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같은 오해에서 시민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의 부족, 허위 광고, 부적절한 장비, 상충되는 근무복 디자인, 공격적이고 비전문적인 기술, 허위적인 판매기술, 잘못된 응찰과정등.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가장 광범위하게 논의되는 처방으로서는 첫째로, 훈련과 교육에 대한 강조, 면허증이나 자격증제도 실시, 인허가의 기준강화 등을 통한 경비업의 '상향적인 標準化'(standardization)와, 둘째로는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지도감독 등을 통한 '공적인 規制'(regulation)의 강화이다. 즉 공권력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경비업에 대한 적절한 규제나 지도감독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81] 이러한 전문성에 대한 추구에는 더 많은 인허가에 관한 요구사항들과, 업무와 교육훈련에 대한 계량화된 기준들이 요구된다. 오늘날 각국에서 일정 수준의 훈련을 요구하는 정부의 규제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들에는 반드시 교육훈련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이다. 즉 오늘날 각국의 사경비업계는 인허가요건과 정부의 규제, 경비원의 교육, 훈련 등이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2. 韓國의 認許可 및 法的規制

사경비의 문제들에 대한 처방으로 가장 먼저 논의되는 것이 업체의 설립에 대한 인허가과정이다. 국가는 이를 통해 사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80) Crime and Protection in America: A Study of Private Security and Law Enforcement Resources and Relationships,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1985.

81) 미국의 경우 사경비의 규모나 활동이 공권력 이상으로 발달하였지만 그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사경비업무의 특수성과 일반 시민들의 基本權 侵害에 대한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주장되고 있다.(U.S. Advisory Commission on Inter-governmental Relation, State and Local Relation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1981, p.28.)

① 사경비업은 개인의 생명재산을 범죄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 바, 그 職務를 行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사경비의 目的이 犯罪의 防止에 있는 한, 일반 시민과의 접전이 불가피하다. 이때문에 체포 구금 수색 압수 그리고 자백 증언 등을 요구하는 수도 있고, 이것들은 憲法上의 기본적 인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경찰에 대해서도 強制力의 行使에 있어서 엄격한 제약을 두고 있는 이상, 사경비에 대해서도 같은 제약이 필요하다.

③ 위험한 범죄로 부터 自身의 身邊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경비원이 武器를 携帶하여 상대를 殺傷할 가능성이 있는 한, 무기의 휴대, 사용에 관한 규제가 필요하다.

④ 사경비업의 제복이나 장비는 경찰의 그것과 유사하여 일반시민의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같은 오해에서 시민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

제시하고 이를 통해 사경비업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 나아가 민생치안에 기여한다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민간경비의 인허가는 '許可制'를 취하고 있어 그 허가의 기준만 통과하면 누구나 사경비업을 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허가의 기준이 문제되는데 법규정도 미약할 뿐 아니라 허가의 심사를 맡고있는 경찰의 인력부족 등으로 충분한 사전심사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한다는 그 임무에 비추어 볼때 이처럼 허술한 허가는 결국 사경비서비스의 소비자인 국민의 피해와 직결되는 것이므로 시급한 해결을 요하는 문제이다.

현재 용역경비업법의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우선 용역경비업법 제 3조(용역경비업체의 제한)에서 "용역경비업은 法人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해 법인만이 경비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동법 제 4조 (용역경비의 허가)에서는 허가 기준 및 구체적인 신고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① 용역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구역이 2개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 구역에 걸칠 때에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용역경비업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
2.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한 때
3.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폐지한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경비시설을 설치 폐지 변경한 때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

그리고 용역경비업법 시행령에서는 용역경비업체 설립을 하고자 했을 때의 신청서류와 허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허가신청) ① 법 제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경비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법인임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2. 법인 임원의 이력서 및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에 한한다) 구청장 읍 면장이 발행한 신원증명서(법 제5조의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것)
3. 공탁을 증명하는 서류, 이행보증보험이나 공제에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4. 법인정관

5. 경비장비 보유현황조서 또는 확보계획서

②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장비확보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허가를 받은 후 1월이내에 경비장비를 갖추어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 (허가절차등) ① 제2조의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허가관청은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의 유무와 법인의 재산정도 대표자와 임원의 경력 및 신용정도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허가관청이 용역경비업을 허가한 때에는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허가관청이 용역경비업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뜻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용역경비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을 그 주사무소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용역경비업자는 그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허가증이 못쓰게 된 때에는 허가증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허가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증

이외에도 동법 시행령 제5조(폐업신고), 제6조(휴업신고), 제7조(허가사항등의 변경신고), 제20조(허가 등의 수수료)에서 용역경비업의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제시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여러 항에 걸친 규제내용을 가지고 있음에도 용역경비업법 제5조(법인임원의 결격 사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자도 법인을 설립해서 용역경비업을 할 수 있는 다소 애매한 규정을 하고 있다. 즉, 용역경비업법 제 5 조는 "다음의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용역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와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법인의 임원으로서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지만 않으면 누구나 허가를 받을 수 있기에 처음부터 사경비업의 전문성 내지는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경비업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등장한 영세업체의 진출과 난립, 그에 따른 덤핑계약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1990년 용역경비업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그나마 사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 교육장 15평 이상, 사무실 20평 이

상의 최소 35평 이상의 면적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그러한 규정마저 없어져 법인만 설립하면 무조건 영업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인허가 기준의 완화가 곧바로 업계의 난립으로 이어졌고 상당수의 무허가 업체도 존재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이같은 상황에 처해지자 최근 많은 업체들이 스스로 인허가 기준의 강화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기존업체의 기득권 수호 차원이 아닌 무허가 업체의 난립에 따른 사경비업계 전체의 이미지 훼손 및 질적 저하 현상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점차 관의 규제가 풀리고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따른 시장질서가 형성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경비업무의 공공적 성격과 관의 규제완화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인허가를 통한 일차행정규제가 끝난뒤에는 지속적인 행정지도 감독과 행정규제행위가 이어져야 한다. 먼저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용역경비업법 제13조(감독)에 의해 경찰청장이 용역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의 적정한 실시를 위해 업자를 지휘, 감독상의 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수시로 관내 경비업자와 경비원 배치장소에 임하여 근무상황 및 교육훈련상황을 감독하며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외에도 동법 제11조(보고 및 임검등), 용역경비업법 시행령 제11조(위반행위 보고), 용역경비업법 시행규칙 제4조(경비원 명부의 비치와 채용신고 등), 제5조 (경비원의 배치 및 폐지신고), 제6조 (임검) 등을 통하여 허가관청과 경찰서장들이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행정력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모든 민간경비분야의 업무가 경찰청 경비과 소속으로 집결되다 보니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 이러한 지도 감독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 따라서 사전예방적 차원의 지도감독이 아니고 문제발생후 사후대처적인 행정처분이 보다 강화되어 있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행정처분은 용역경비업법 제12조 (행정처분)에 의하면

① 허가관청은 용역경비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관청은 용역경비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용역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1년 이상 휴업한 때
3. 삭제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③ 허가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용역경비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용역경비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행정처분이 대단히 엄격한 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신중을 기하기 위한 청문의 기회를 주고 있다. 이러한 행정처분에 관한 법규정은 용역경비업법 제16조(벌칙), 제17조(과태료), 제18조(양벌규정), 용역경비업법 시행령 제10조(경비원의 해면명령), 제12조(행정처분의 기준), 제13조(청문절차), 용역경비업법 시행규칙 제9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이 있다. 그러나 행정처분 규정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적용 혹은 감독기관으로서의 철저한 사전 지도감독을 통한 예방노력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는 의심스럽다.

이처럼 한국의 사경비업의 인허가와 행정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의 문제는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 뿐 아니라 감독기관으로서의 경찰의 수준높은 행정력이 보다 요구되는 부분이다. 즉, 무엇보다도 행정기관의 지속적이고 올바른 행정지도와 감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인허가를 비롯한 허가사항 변경신고 처리, 분기별로 실시하게 되어있는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업체의 휴폐업 신고처리 등의 업무가 실제업무와 관련된 방범과 소속이 안닌 警備課 관할로 되어 있고 또한 경비과 소속의 경위 1명이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어서, 업무의 과다와 인원의 절대부족등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행정지도 감독이 불가능한 형편이다. 이처럼 한국의 사경비업은 행정기관의 전문성 결여와 행정인력의 부족, 제도상의 문제점 등으로 행정기관이 사경비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한 행정지도와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경찰업무의 기능별 분화 실시로 전문성을 띤 행정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용역경비 관련업무를 방범과로 전폭 이전하고 그에 따른 사경비업무 담당조직과 인원, 예산의 확충 등 제도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전반적으로는 사경비업의 건전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행정처분의 법적 보완과 함께 사전에 지도감독하는 행정지도 감독의 강화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3. 美國의 認許可 및 法的規制

미국의 경우도 사경비업계의 급속한 성장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비업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③ 허가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용역경비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용역경비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행정처분이 대단히 엄격한 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신중을 기하기 위한 청문의 기회를 주고 있다. 이러한 행정처분에 관한 법규정은 용역경비업법 제16조(벌칙), 제17조(과태료), 제18조(양벌규정), 용역경비업법 시행령 제10조(경비원의 해면명령), 제12조(행정처분의 기준), 제13조(청문절차), 용역경비업법 시행규칙 제9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이 있다. 그러나 행정처분 규정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적용 혹은 감독기관으로서의 철저한 사전 지도감독을 통한 예방노력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는 의심스럽다.

이처럼 한국의 사경비업의 인허가와 행정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의 문제는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 뿐 아니라 감독기관으로서의 경찰의 수준높은 행정력이 보다 요구되는 부분이다. 즉, 무엇보다도 행정기관의 지속적이고 올바른 행정지도와 감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인허가를 비롯한 허가사항 변경신고 처리, 분기별로 실시하게 되어있는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업체의 휴폐업 신고처리 등의 업무가 실제업무와 관련된 방범과 소속이 안닌 警備課 관할로 되어 있고 또한 경비과 소속의 경위 1명이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어서, 업무의 과다와 인원의 절대부족등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행정지도 감독이 불가능한 형편이다. 이처럼 한국의 사경비업은 행정기관의 전문성 결여와 행정인력의 부족, 제도상의 문제점 등으로 행정기관이 사경비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한 행정지도와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경찰업무의 기능별 분화 실시로 전문성을 띤 행정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용역경비 관련업무를 방범과로 전폭 이전하고 그에 따른 사경비업무 담당조직과 인원, 예산의 확충 등 제도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전반적으로는 사경비업의 건전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행정처분의 법적 보완과 함께 사전에 지도감독하는 행정지도 감독의 강화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3. 美國의 認許可 및 法的規制

미국의 경우도 사경비업계의 급속한 성장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비업

무의 공공적 성격과 관련하여 오늘날 많은 공공정책상의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처방으로서 위에서 언급되었던 것 처럼 제반요건(교육.훈련, 자격증제도, 인허가 등)의 기준 강화를 통한 경비업의 標準化(standardization)와 지도.감독 등을 통한 公的 規制(regulation)의 강화 등이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다.

미국의 사경비에 관한 종전의 많은 연구들[82]은 표준화와 그에 따른 認許可(licensing) 기준의 강화, 법적인 규제들을 통한 정부의 감독강화가 오늘날 사경비업계가 안고 있는 여러 현안문제들의 해결에 가장 효과적인 사전예방적 장치라고 일관성있게 주장하여 왔다.

한 예로서 사경비에 관한 국가자문회의의 한 연구결과(NACOCJSG, 1976)에 의하면, 경비업의 업무 자체가 상당히 많은 부문에 있어서 공공적 성격을 지니기에 주정부 수준에서의 규제입법이 가장 적절하며 효율적인 통제장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사경비업계가 자율적으로 인허가조건이나 규제를 효과적으로 제정하는 노력이 거의 없었으며, 업계가 다양한 업체로 구성되어 있기에 복잡한 이해관계의 연계와 상충등으로 통일된 목소리를 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대규모의 사경비업체는 규제의 강화에 대해 매우 민감하여 지나치게 간섭한다거나, 업체에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될까 우려하여 상당히 방어적이었다. 반면에, 중소규모의 사경비업체들은 흔히 표준과 규제는 이러한 표준과 규제를 보다 잘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대규모업체에게 더 많은 시장을 점유하도록 작용하는 수단이라고 간주하여 왔다. 이처럼 사경비업체는 이해 당사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들이 지니고 있는 기득권으로 인하여 객관적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인허가나 규제가 최소한으로나마 수용가능한 사경비 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그래서 사경비업계의 전문가들은 표준을 확립하고 그것을 따르도록 유도하는 것이 사경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권한의 남용을 예방하고, 비윤리적인 사업행위를 감소시켜서 결과적으로 범죄의 예방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여 왔다. 표준화의 대상에는 인원의 선발, 훈련, 행동과 윤리, 경보시스템, 고등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연구, 정부의 규제 등의 광범위한 사항이 포함된다.

본 장에서는 人警備業, 警報시스템 請負業(alarm system contractors) 또는 機械警備

82) Private Police in the United States, Rand Corporation, 1971; National Advisory Committee on Criminal Justice Standards and Goals(NACOCJSG), Private Security: Report of the Task Force on Orivate Security, 1976; The Hallcrest Report I, Private Security and Police in America, 1985; The Hallcrest Report II, Private Security Trends, 1990.

業, 私設探偵業에 관한 미국의 현존하는 주정부의 법규들을 검토한다. 특히 그들의 내용을 분석하여 주정부의 기준과 그에 따른 규제－ 특히 인허가와 면허발급 및 취소, 기타 부문에서의 중요한 요구사항(requirements) 등－의 본질을 파악하여 우리의 사경비업계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가. 認許可 基準 및 法的規制의 強化

미국의 사경비업과 관련된 법규는 계속 증가되어 1990년에는 약 45개 주들이 상기의 세 분야중에 적어도 한 분야에서 주정부가 사경비업체와 그 고용인들의 일정 측면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39개 주가 인경비업(guard and patrol)에 관한 인허가규정들을 가지고 있으며, 사설탐정들(private investigators)은 37개 주에서 규제되고 있다. 이중 다수의 주에 있어서는 사설탐정 또는 사설조사관등의 용어가 다양한 경비행위를 기술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일부지역에서는 사설탐정들이 경호업무도 함께 수행하도록 허용되고 있다. 한편 경보시스템 청부업 또는 기계경비업은 25개 주에서 주정부의 규제법령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The Hallcrest Report II, 1990; Security, 1990).

다음은 업체의 인허가나 면허증 또는 자격증 발급과 관련된 법규를 가지고 있는 주들이 업체의 인허가시 요구하는 중요사항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장 보편적인 중요 요구사항은 前科記錄確認(criminal history checks)으로, '重犯罪로 인하여 起訴된 사실이 없음'을 요구하고 있다. 29개 주가 이러한 의무사항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경비원, 주주, 그리고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비업체내에 근무하는 모든 자들에게 적용되는 사항이다. 그러나 29개 州중 8개주는 이러한 일반적인 규정에 대한 약간의 예외도 허용하고 있다. 즉 어떤 주는 기소 이후 허가증을 신청할 때까지 5년에서 20년까지의 시간제한을 두기도 하고 기소된 범죄가 도덕적으로 비열한 행위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제상황이 이러한 전과조회에 대한 필요성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데, 전과기록확인이 업체의 면허나 개인의 자격증 발급에 있어서 중요한 과정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15000여명의 경비원면허 신청자중에서 해마다 대략 20%의 사람들이 전과기록으로 인하여 면허가 거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전과조회의 과정이 없이는 해마다 상당수의 전과자들이 경비원으로서 근무하게 되었을 것이며 이러한 사경비원들에 의한 범법행위나 직무남용등의

사건들로부터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과조회는 업무의 공공적 성격과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경비업무의 특성들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주차장관리 등의 단순업무자를 제외한 모든 사경비원들에 대해서 사전에 전과를 확인하는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경비업법을 가지고 있는 주의 절반이 조금 안되는(17개) 주들은 경비업면허를 신청하는 자들에게 筆記試驗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시험이 면접으로 대체되거나, 신청자가 경비관련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자체가 면제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들은 시험과목이나 주제의 특정범위에 대해서는 명기하지는 않고, 통상 그러한 일은 면허담당기관의 재량에 맡겨 두고 있다.

경비업의 認許可를 규제하고 있는 39개 주중 25개 주는 신청자가 미국시민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34개 주는 면허신청자의 최저연령제한을 두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18세이나 21세에서 25세까지로 제한하는 주들도 있다.

한편 認許可 또는 免許發給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있는 37개 주중에서 31개 주들이 신청자들의 사경비 관련업무에서의 勤務經驗을 요구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이러한 경험은 다소 느슨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요구되는 근무년수도 1년이나 5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적인 법집행기관에서의 근무경력이 이러한 사경비 관련분야에서의 근무경험 요구에 대한 대체조건이 되기도 한다. 일리노이주에서는 고등교육기관에서 받은 경비관련분야의 교육이 부분적으로는 현장경험에 대한 대체 조건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免許의 期間은 대체적으로 1년(19주)이거나 2년(17주)이었다.

16개의 주들은 면허신청자들이 받아야 하는 일정 수준의 훈련(training)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주들에서는 총기를 휴대하거나 휴대하도록 허가된 모든 자들은 총기류에 관한 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4개의 주는 비무장 경비원들에게도 이러한 훈련을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다.

면허를 위한 주요한 실질적인 要求事項으로서 33개 주가 모두 서로 다른 액수의 申請費(application fee)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31개 주에서는 지문이나 사진중에 하나 또는 양자를 모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단지 9개 주에서 주정부의 지문조회를 그리고 5개 주에서는 연방수사국(FBI)의 지문조회를 요구하고 있다. 참고인명부의 제출도 18개 주에서, 신청자들의 전과기록은 15개주에서 요구되고 있다. 한편 책임보험이 11개 주에서 요구되고 있으며, 5개주에서는 책임보험과 보증보험의 양자가 요구되고 있다.

다음의 행위들이 경비업체의 免許를 取消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행

위는 면허법규의 위반으로서 37개중 31개 주에서 실시되고 있다. 보편적인 취소의 근거로서 면허신청서의 허위작성(26개주), 중범죄에 의한 起訴(21개주), 고객이나 면허관청에 대한 거짓행위 또는 詐欺(18개주), 경찰관 詐稱(16개주), 보증금 불이행(13개주), 비밀정보의 무단누출(10개주), 법원의 명령위반 또는 서비스 불이행(10개주), 거짓 광고(10개주), 업무수행능력 부족(8개주)등의 순서로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면허의 취소에 관한 근거는 면허의 거부요건과 유사하기 때문에 면허의 거부요건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있다.

오늘날 기업의 설립과 영업활동에 대해 대부분의 국가가 정부차원의 규제를 완화하는 전반적인 시대적 추세에 역행해서 이처럼 정부가 법적인 규제와 인허가의 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경비 업무의 공공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정부의 인허가 과정에서의 기준이나 행정감독의 강화는 사경비의 성장과 함께 발생하는 여러 종류의 사회문제들에 대한 사전예방적인 노력(proactive efforts)으로서, 자유방임후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단속적인 처벌규정(punitive ordinances)을 강화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사실에 거듭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례로서 사경비원들이 총기류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도록 허용된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심각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심지어는 사경비업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주들 조차도 총기훈련에 관한 기준들이 없거나 설상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은 공공 경찰관들에게 설정된 기준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

나. 기타 自律的 規制方案

이러한 법적인 규제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허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이동이 다소 완만하게 이루어지는 큰 이유중에 하나는, 경비직종과 경비원에 관한 주정부의 규제가 최근에 의회의 쟁점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고객들에게 크게 혜택이 되지 못하며, 단지 관련분야에 근무하는 자들의 이미지는 조금 고양시켜 줄지 모르나 자유경쟁을 방해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인허가제도 및 규제의 강화가 관련 서비스의 통일성을 보다 잘 확보해 주며 기만적이거나 그릇된 행위를 더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경비관련분야에 근무하는 자들의 자질을 보다 효과적이며 신속하게 향상시키도록 보장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찬반양론의 쟁점속에서 일부 사경비업계의 지도자들과

전문가들은 사경비업계가 안고 있는 현안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공적인 규제나 인허가제도의 강화 이외에 다른 방안들을 주창하기도 한다. 즉 사경비업체가 자율적으로 업계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표준(standards)을 제정하고 전국적인 수준에서 이를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영국의 사경비산업회는 이러한 가능성을 다소 보여주었는데 표준들에는 인원선발과정, 임금수준, 감독, 훈련, 책임보험, 그리고 시설 등에 관한 항목들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자율적 방법들중에서 유망한 것중에 하나는 미국 산업경비협회 (American Society for Industrial Security: ASIS)에서 시행하는 공인경비사(Certified Protection Professional: CPP) 프로그램과 같은 자격증제도의 도입이다. 경비분야에서 특정 임무를 수행하는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이러한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경비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관련지식과 전문적 책무에 대한 이해 도모를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경비업체에 공인(accreditation)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다른 방안으로서 제기되고 있다. 경비업종에 대한 공인제도는 경비협회나 기타 관련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자율적 규제(self-regulation)의 한 형태이다. 표준화된 기준에 의해 경비회사의 양적 규모나 업무수행능력, 교육훈련정도, 제반규정 준수여부 등의 요소에 따라 기준을 설정하고 이러한 기준에 합격한 경비회사에게는 서비스의 질을 공인하는 제도라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공인의 취득은 용역경비업계의 관리와 서비스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공인된 용역경비회사에게는 서비스의 품질을 인정받은 공인업체라는 사실을 내세워 매출증대를 호소할 수 있는 기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객들도 공인된 기관인가를 확인함으로써 손쉽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다. 免許의 等級化(Licensure Gradations)

미국의 경우 인허가 또는 면허제도를 통하여 사경비업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한편, 업무의 특성이나 인허가시의 요구사항을 차별화 시켜서 경비업종을 구분하거나 또는 등급화 시키기도 하였다. 대체적으로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문들에 보다 많은 면허 또는 인허가의 요구사항(requirements)들이 부과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사항들에는 업무의 성격, 신청자의 경력, 교육과 훈련정도, 보증금(bond), 연령, 그리고 정부의 간섭과 규제의 정도 등에 대하여 상이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첫째로, 경비업의 업무특성에 따라서는 1983년에 제정된 일리노이주의 사설탐정과

사경비법령(Private Detective and Private Security Act)을 참고로 살펴보면 경비업체가 다음과 같이 분류되어 있다(Nemeth, 1989: p. 31).

Class A: 사설 탐정업자 (Private Detective)

Class B: 사경비 청부업자 (Private Security Contractor)

Class C: 사설 경보장치 청부업자 (Private Alarm Contractor)

Class 1: 사설 탐정업체 (Private Detective Agency)

Class 2: 사경비 청부업 취급점 (Private Security Contractor Agency)

Class 3: 사설 경보장치 청부업 취급점 (Private Alarm Contractor Agency)

플로리다주에서 통과된 법안도 다소 유사하나 업무의 성격에따라 분류된 좀더 복잡한 등급화의 예를 보여준다 (ibid, p32−33).

Class "A" license : 사설 탐정 취급점 (private investigative agency)

Class "B" license : 인경비 청부업 취급점 (watchman, guard, or patrol agency)

Class "C" license : 사설 탐정 (private investigator)

Class "CC" license : 사설 탐정 인턴 (private investigator intern)

Class "D" license : 인경비원 (watchman, guard, or patrolman)

Class "E" license : 되찾아주는 자 (repossessor)

Class "EE" license : 되찾아주는 자 인턴 (repossessor intern)

Class "GBB" license : 분점 또는 지방 출장소 (branch office)

Class "G" license : 무장 경비원 면허(armed guard license)

Class "M" license : 관리자 (manager)

Class "K" license : 총기류과목 교관(firearms instructor)

* 폴로리다주에는 사설 경보장치 청부업 취급점(Private Alarm Contractor Agency)에 관한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계경비와 관련된 분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둘째로, 교육훈련은 이러한 분류체계의 매우 중요한 한 요소이다. 한 예로서 신청자들이 대학에서 관련 교과과정을 이수함으로써 특정 경력이나 경험에 관한 요구사항을 대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경력에 대한 점수(credit)를 부여함으로써 공적 법집행과 사적 법집행과의 상호관계를 촉진시키고 있다. 플로리다주에서도 일리노이주에서 처럼 경력에 대한 점수(credit)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 법령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강조되고 있는 것은 교육훈련이다. 이러한 교육훈련에 대한 강조는 신청자가 업무의 복잡성에 있어서 스케일의 위로 올라갈수록 더욱 그러하다.

플로리다주의 법령은 무장 경호원들에게 부여되는 중대한 임무를 인식하여 무장경호원들과 총기류 교사들 모두에게 매우 엄격한 지침을 부과하고 있다. 다른 요구사항외에도 Class G(statewide gun permit/ armed guard license)를 지원하는 신청자는, 첫째로 총기류에 대한 최소한의 훈련기준을 통과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기준으로는 관련부서에서 허가를 받은 총기류관련 교사에 의해 8시간의 강의실과 사격장에서의 훈련이 부과되고 있다. 둘째로 총기류 휴대를 위한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각 개인에 대해서 경찰의 기록확인과 전과정의 배경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셋째로, 경비업무의 등급화는 정부의 간섭과 규제의 정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주정부에서는 경비업체가 자체적으로 종업원들에 대한 업무감독을 해주길 바라나 경비업체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기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담당업무의 성격에 따른 차별적인 규제 및 행정지도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국의 경우를 참고로 해서 우리의 경비업도 업무의 특성에 따라 사경비업무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이러한 분류(또는 등급)에 따라 인경비와 기계경비업 각각에 대한 인허가의 기준이나, 교육훈련의 기준, 정부의 규제정도도 차별화 시킬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다양한 면허나 자격증제도의 실시가 가능할 것이다.

人警備業 : 오늘날 주요 국가시설이나 중요한 사업장등에 대한 경비업무가 점차 인경비에서 기계경비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해 볼 때 앞으로의 인경비는 꼭 필요한 부분에 최소의 정예화된 인원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인경비업무를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인허가 과정이나 교육훈련등에 있어서 차등적인 기준을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인경비중에서 가장 전문화된 수준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경비원이나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다. 특정의 연령제한(예: 18세이상 50세미만), 일정 수준의 학력(예 : 고졸정도), 적어도 현재의 청원경찰수준의 교육훈련실시(기본교육, 실무교육, 총기류 휴대법 및 사격술등을 포함하는 실질적 교육훈련), 군복무 및 관련 법집행기관의 근무경력, 공탁금이나 책임보험 등의 제반 요구사항에 있어서 가장높은 수준의 기준을 요하는 인경비분야이다. 우수한 자질을 지닌 인력을 선발하여 양질의 교육, 훈련을 제공하며 그러한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자격증이나 이수증을 교부하는 등으로 소수정예화시켜서 UR시대를 맞이하여 국가 중요시설물이나 주요 사업장 등에서 전문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적어도 현재 청경수준의 높은 보수를 보장할 수 있으며 현재 주요 국가시설물 등에 배치하도록 되어있는 청원경찰도 장기적으로

는 제도의 개편과 함께 이러한 분류에 발전적으로 통합하여 지금까지의 단순한 수위식의 경비근무에서 국가기밀유지 및 주요정보 보호라는 새로운 차원의 경비로 전환하여 발전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둘째는, 현재 대부분의 용역경비업체가 담당하고 있는 일반 빌딩의 경비업무 또는 이러한 분야에 근무하는 자.

셋째는, 현재 주로 소규모 용역경비업체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주차장관리 및 단순 빌딩관리업무 등의 단순 업무.

機械警備業: 오늘날 기계경비업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오경보 등의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오경보의 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져서 사설경비업자에 의해 설치되고 운영되는 경보에 공권력이 대응하는 것을 대폭 감소시키며 경비업자에 의한 자체 대응방식을 유도하자는 주장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기계경비업도 업무의 성격이나 서비스의 범위, 규모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분류에 따라 장차 기계경비업법의 인허가의 요구사항이나 교육훈련의 수준설정에 있어서 업체별로 차등적으로 적용시키는 데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중앙관제소(central station), 무선 기지국, 관제 유무선장비, 긴급출동차량, 긴급대처요원(alarm runner), 관제 컴퓨터 등의 전체적인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비하고서 가장 높은 수준의 총괄적인 전자기계경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다. 이러한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긴급대처 능력을 보유하여 직접 긴급사태에 즉응하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다.

둘째는, 상기의 요소중에서 일부를 구비하며 자체적인 긴급대처 능력은 보유하지 않으나, 이상을 감지하면 온라인으로 관제센터에 통보하고 관제센터의 관제원이 경찰이나 소방서 등에 경보를 통보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다.

셋째는, 단순히 경보장치나 기타 기계경비장비를 제조, 판매, 설치, 보수 등의 용역만을 제공하는 업체이다.

오늘날 공적인 사법제도의 업무가 점차 民營化(privatization), 전문화 됨에 따라서 경비업에 대한 규제가 증가되고, 교육과 훈련의 강화, 인허가 요건의 강화, 업무의 등급화 등의 현상들이 점차 발생하게 되었다. 이는 사경비원들의 임무가 점차적으로 범죄의 탐지와 예방에 있어서 더욱 중요해지고 보다 많은 권한과 재량이 부여되고 있음을 생각할 때, 훈련이 잘 안되고 장비도 부족한 경비원들에 의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이제 더 이상 존립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적절한 기준에 따른 훈련과 교육적인 준비가 결여되어 있다면 숙련되고 충실한 경비업무의 수행이 어려울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4. 日本의 認許可 및 法的 規制

일본의 경비업법은 경비업무의 적정한 관리운영을 확보하고자 제2장에 경비업의 영업에 관한 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즉, 제3조에는 경비업의 요건을 정하고, 제4조에서 제4조의 5까지의 규정에서는 경비업자가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認定制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 제6조의 2까지는 공안위원회가 경비업의 영업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届出義務가, 그리고 제6조의 3에서는 이들 규제의 실효를 담보하기 위한 명의대여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경비업법을 중심으로 법적 규제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가. 경비업의 요건

경비업법의 요건에 관한 규제는 1982년의 개정으로 대폭 강화되었다. 개정전의 경비업법 규정에서는 일정한 전과를 가진 자 및 그러한 자를 임원으로 둔 법인은 경비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었지만, 폭력단 관련자 등 부적격자가 적지 않게 경비업을 영위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기 때문에, 그들을 배제하기 위하여 경비업의 요건이 대폭 강화되었다.

경비업법 제3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금치산자 혹은 준금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2) 금고 이상에 처해지거나 경비업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에 처해져서,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게 되지 않게 된 날로 부터 기산하여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3) 최근 5년 사이에 경비업법의 규정과 경비업법시행령의 규정 혹은 처분에 위반하거나, 또는 경비업무에 관한 타법령의 규정에 위반하는 중대한 부정행위로 국가공안위원회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행한 자
4) 집단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적 불법행위 기타 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로 국가공안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데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왜냐하면 적절한 기준에 따른 훈련과 교육적인 준비가 결여되어 있다면 숙련되고 충실한 경비업무의 수행이 어려울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4. 日本의 認許可 및 法的 規制

일본의 경비업법은 경비업무의 적정한 관리운영을 확보하고자 제2장에 경비업의 영업에 관한 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즉, 제3조에는 경비업의 요건을 정하고, 제4조에서 제4조의 5까지의 규정에서는 경비업자가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認定制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 제6조의 2까지는 공안위원회가 경비업의 영업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届出義務가, 그리고 제6조의 3에서는 이들 규제의 실효를 담보하기 위한 명의대여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경비업법을 중심으로 법적 규제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가. 경비업의 요건

경비업법의 요건에 관한 규제는 1982년의 개정으로 대폭 강화되었다. 개정전의 경비업법 규정에서는 일정한 전과를 가진 자 및 그러한 자를 임원으로 둔 법인은 경비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었지만, 폭력단 관련자 등 부적격자가 적지 않게 경비업을 영위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기 때문에, 그들을 배제하기 위하여 경비업의 요건이 대폭 강화되었다.

경비업법 제3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금치산자 혹은 준금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2) 금고 이상에 처해지거나 경비업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에 처해져서,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게 되지 않게 된 날로 부터 기산하여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3) 최근 5년 사이에 경비업법의 규정과 경비업법시행령의 규정 혹은 처분에 위반하거나, 또는 경비업무에 관한 타법령의 규정에 위반하는 중대한 부정행위로 국가공안위원회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행한 자
4) 집단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적 불법행위 기타 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로 국가공안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데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5) 정신병자 또는 알코올[83], 마약, 대마, 아편 혹은 각성제의 중독자
6) 영업에 관해 성년자와 동일능력을 가지지 않은 미성년자(다만, 그 미성년자가 경비업자의 상속인으로 법정대리인이 1호에서 5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영업소마다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를 선임한다고 인정되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8) 임원중에 1호에서 5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등이다.

나. 認定制

경비업의 요건에 관한 제3조의 규정을 충족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영업개시전에 공안위원회가 심사하여,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확인된 자에 대해 업자로 취급한다는 認定制를 취하고 있다.

그렇지만 개정전의 경비업법에서는 경비업을 영위코자 하는 자가 공안위원회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届出書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届出制를 취하고 있었다. 이것이 1982년의 개정으로 届出制에서 認定制로 개정된 것이다. 고물영업법이나 전당포영업법과 같이 인적 결격사유를 규정한 영업규제입법은 허가제를 취하는 것이 통례이며, 실제로 입법과정에서는 보다 엄격한 결격사유를 정하여 許可制를 채용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벌어졌다.

허가제란 경찰목적을 위해 일반적으로 금지시키고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 한해서 해제하여 적법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적 처분을 말하는데, 경찰소관의 영업에 대해서는 허가제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가제를 취하지 않고 당초 届出制를 취했던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였다. 즉, 경비업의 실정에서 보아 당분간 일정한 전과를 가진 자를 배제하고 계출제로써 공안위원회가 업자의 실태를 장악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성함으로써 충분히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동시에 허가제를 취하는 경우에는 경찰공인의 영업이라는 색채가 계출제보다 강해지게 되므로 그에 수반된 폐해를 예상한 것도 허가제를 피

83) 1981년 1월 히로시마(廣野)에서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한 경력이 있는 경비원이 비번중에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접객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칼로 종업원을 죽인 사건이 이 조항 삽입의 계기가 되었다.

한 이유의 하나였다[84].

그러나 届出制로는 영업개시후 상당기간을 경과한 후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부적격자의 정확한 배제라는 법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1982년의 법개정으로 認定制로 강화되었다. "認定"이란 행정법학상의 확인행위이며 인정신청자가 경비업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공안위원회의 행정행위를 말한다. 인정신청을 하지 않고 경비업을 영위하는 자는 경비업법 제19조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은 경비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계출제 대신에 인정제를 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이를 허가제로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실정에 있다[85].

경비업의 認定은, 인정신청서를 공안위원회에 제출하고 공안위원회가 경비업의 요건에 대해 심사하여 그 결과 통지와 함께 인정증을 교부하는 순서의 절차를 밟게 된다. 경비업자로 認定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영업소[86]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안위원회에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주영업소 기타 영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3) 영업소마다 선임하는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의 성명 및 주소, (4)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 및 주소 등을 기재한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인정증의 更新制를 신설했다는 점이다(제4조의 4). 갱신제를 신설함으로써 일단 인정을 받은 자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경비업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경비업자로부터 배제되게 되는데, 감독상의 필요성, 영업의 자유, 업자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그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87] (제4조의 2 제3항). 공안위원회는 (1) 허위 기타 부정수단으로 인정 또는 인정증의 유효기간을 更新한 사실이 있거나, (2) 제3조의 각호에 열거한 해당자가 있다는 사실이 판

84) 谷安司, 警備業法諸問題, 警察學論集 26卷1號, 1973, 警備業關係論文集 소수, 全國警備業協會, 1989, 262면 참조.

85) 자본도 필요없고 전화기 한대와 연필 한자루만 있으면 누구나 영업할 수 있는 것이 경비업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진 경영자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黑津康司, 昭和六二年中における警備業の概況と都道府縣警備業協會等の課題 ——より良き明日のために——, セキュリティマニュアル 昭和六二年度版, 1988, 警備業關係論文集 소수, 全國警備業協會, 1989, 428쪽 참조.

86) 영업소란 본점, 지점, 지사, 사무소 등으로 칭해지는 것으로, 소속경비원의 일상적 배치, 일상업무의 통괄 기타 업무집행에 관한 사무가 행해지는 장소를 말한다.

87) 경비업계의 건전육성과 부적격업자의 배제라는 취지에서 볼 때, 우리도 예컨대 5년마다의 許可更新制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명되었을 경우에는(제7호는 제외)[88]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경비업자는 인정증을 주영업소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제4조의 3). 이는 위탁자나 立入檢査 즉 임검을 행하는 경찰관이 용이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경비업자는 주요영업소가 소재하는 都道府縣 이외의 都道府縣 구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당해 구역내에서 경비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都道府縣의 구역을 관할하는 공안위원회에 계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5조). 공안위원회는 각 都道府縣 구역에서 실시되는 경비업무에 대해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하기 위해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각 구역에 대해 상호 독립해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신청서를 수리한 공안위원회 이외의 공안위원회는 인정신청의 사실을 반드시 알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동시에 경비업무가 都道府縣 구역의 구별없이 행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안위원회가 그 관할하는 都道府縣의 구역내의 경비업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계출의무를 과한 것이다[89].

인정증을 교부받은 후 (1) 폐업한 때, (2) 인정이 취소된 때, (3) 인정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4) 인정증을 재교부받은 후 망실한 인정증을 발견하거나 회복한 때에는 인정증을 지체없이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안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또한 (1) 사망한 경우, (2) 합병으로 법인이 소멸한 경우에도 관계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안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제6조의 2). 경비업자는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제6조의 3).

다. 行政指導監督

경비업을 건전하게 육성해 가기 위해서는 경비업자에 대해 적절한 지도감독을 행할 필요가 있으며, 많은 경비업자들은 일본의 경비업계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급속히 발전한 이유중의 하나로 행정청의 적절한 지도감독을 들고 있다. 행정청의 지도감독에 대해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를 높이 평가하는 것은, 단지 법적 규제나 행정처분을 위한 지도감독이 아니라 악질 내지는 부적격자를 배제하고 우량경비업자를 표창[90]함으로써 경비업계의 건전육성에 공헌해 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1994년의 "保安警察의 당면 제문제"[91] 가운데 경비업에 대한 중점시책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88)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의 불선임을 취소사유에서 제외한 것은, 지시 또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시정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 경비업자에 대한 적절한 지도감독의 실시

경비업의 건전육성을 위해 경비업자 및 경비업무의 실시파악에 노력하고 경비업무가 적정하게 실시되도록 적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악질 또는 부적격한 업자를 배제함과 함께 우량업자를 표창하는 등 적절한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또한 경비업자 및 경비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경영자 및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 등에 대한 연수활동의 실시, 검정제도의 정착화를 꾀한다.

2) 협회활동의 활성화

경비업협회[92]는 경비업이 자주적으로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가는데 있어서 그 중심이 되어 기능할 조직이며, 그 조직활동의 강화는 경비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중요하다. 따라서 공안위원회가 행하는 강습의 수탁촉진 등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행함과 동시에 협회가입율의 향상 등에 의한 협회의 재정기반의 확립, 조직체제의 강화에 대해 지도를 행함으로써 협회활동의 활성화를 꾀한다.

5. 提　　言

오늘날 각국의 사경비는 대다수 국민의 삶의 방식에 직간접적으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 급성장하였다. 이와 함께 사경비원들에 의한 시민권의 침해, 권한의 남

89) 필자가 소개한 일본 경비업의 현황분석 통계는 모두가 경찰청의 자료를 인용한 것이다. 일본의 경비업의 실태가 광범한 범위에 걸쳐서 정확하고 상세하게 파악되고 있는 점은, 첫째로 그것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과, 둘째로 일본경찰의 세심한 행정지도 노력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비하여 우리의 현실은, 경찰이나 경비업협회 공히 실태파악을 위한 자주노력의 부족함을 상대적으로 느끼게 한다.

90) 참고로 1992년도 경비업자 및 경비원의 공로표창은 총 466건으로, 그 가운데 64건은 경비업자에 대한 표창이고 402건은 경비원에 대한 표창이었다. 협력내용을 보면 검거현장에서의 경찰관에 대한 협력이 198건, 현행범체포가 141건으로 현장에서의 경비원의 활약이 가장 많았다. 또한 1992년의 형법범검거건수 가운데 경비업자 및 경비원의 협력이 괴의자 특정의 단서로 된 것은 7,236건에 달하여 전체 검거수의 1.2%를 점하고 있다. 우리도 협력공로표창을 제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경비업자 또는 경비원에 대한 표창상황>

구　분	총　수	경비업자	경 비 원
총　수	466	64	402
형법범인	418	47	371
특별법범	25		25
기　타	23	17	6

1) 경비업자에 대한 적절한 지도감독의 실시

경비업의 건전육성을 위해 경비업자 및 경비업무의 실시파악에 노력하고 경비업무가 적정하게 실시되도록 적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악질 또는 부적격한 업자를 배제함과 함께 우량업자를 표창하는 등 적절한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또한 경비업자 및 경비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경영자 및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 등에 대한 연수활동의 실시, 검정제도의 정착화를 꾀한다.

2) 협회활동의 활성화

경비업협회[92]는 경비업이 자주적으로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가는데 있어서 그 중심이 되어 기능할 조직이며, 그 조직활동의 강화는 경비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중요하다. 따라서 공안위원회가 행하는 강습의 수탁촉진 등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행함과 동시에 협회가입율의 향상 등에 의한 협회의 재정기반의 확립, 조직체제의 강화에 대해 지도를 행함으로써 협회활동의 활성화를 꾀한다.

5. 提　　言

오늘날 각국의 사경비는 대다수 국민의 삶의 방식에 직간접적으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 급성장하였다. 이와 함께 사경비원들에 의한 시민권의 침해, 권한의 남

89) 필자가 소개한 일본 경비업의 현황분석 통계는 모두가 경찰청의 자료를 인용한 것이다. 일본의 경비업의 실태가 광범한 범위에 걸쳐서 정확하고 상세하게 파악되고 있는 점은, 첫째로 그것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과, 둘째로 일본경찰의 세심한 행정지도 노력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비하여 우리의 현실은, 경찰이나 경비업협회 공히 실태파악을 위한 자주노력의 부족함을 상대적으로 느끼게 한다.

90) 참고로 1992년도 경비업자 및 경비원의 공로표창은 총 466건으로, 그 가운데 64건은 경비업자에 대한 표창이고 402건은 경비원에 대한 표창이었다. 협력내용을 보면 검거현장에서의 경찰관에 대한 협력이 198건, 현행범체포가 141건으로 현장에서의 경비원의 활약이 가장 많았다. 또한 1992년의 형법범검거건수 가운데 경비업자 및 경비원의 협력이 괴의자 특정의 단서로 된 것은 7,236건에 달하여 전체 검거수의 1.2%를 점하고 있다. 우리도 협력공로표창을 제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경비업자 또는 경비원에 대한 표창상황>

구　분	총　수	경비업자	경 비 원
총　수	466	64	402
형법범인	418	47	371
특별법범	25		25
기　타	23	17	6

용, 비윤리적인 기업행위, 총기류 오용, 부적절한 지휘감독 등 제반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효율적 처방으로서 훈련과 교육에 대한 강조, 면허증이나 자격증제도 실시, 인허가의 기준강화등을 통한 경비업의 標準化(standardization), 지도감독의 강화를 통한 公的規制(regulation)의 強化등이 효과적인 사전예방적 장치로서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혹자는 오늘날의 民營化 추세나 自律性 제고에 따른 規制緩和라는 시대적 조류에 이러한 처방이 역행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사경비업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비밀을 직접적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과 그에 따라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업무상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정부의 사전예방적 차원의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이웃 일본과 미국에서도 사경비업체에 대해서는 인허가기준이나 법적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이유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앞으로 우리의 용역경비업법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들로서는 우선 허가와 면허증 발급요건의 강화(신청자의 자격, 공탁금, 책임보험 등)와 교육훈련 기준의 실질적 강화, 또한 이의 집행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협회 활성화, 전문교육기관 설립 또는 위탁교육제도의 활용, 허가갱신제도, 경비공단의 조성 등)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또한 오늘날 미국과 일본에서도 강력히 실행되고 있는 모든 경비원에 대한 자격요건(전과기록의 사전확인, 알코올중독이나 마약, 정신질환의 소지여부확인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서 처럼 경비업면허의 갱신제도를 실시하여 3년이나 5년마다(업계의 부담을 감안하면 5년 정도가 더 바람직함) 그동안의 영업실적이나 법규준수 등의 기준에 따라 재심사하여 업계의 난립과 부적격자를 배제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공적인 규제나 인허가제도의 강화 외에도, 사경비업체에 의한 자율적규제(self－regulation)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나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업계가 자체적으로 표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업체의 질적인 향상을 유도하는 경비업에 대한 공인(accreditation)제도의 도입이나, 미국의 공인경비사(certi-

91) 平成6年 "保安警察當面の重點諸問題", 警備業年鑑 1993, 12면 참조.

92) 일본 경비업법은 우리의 용역경비업법과는 달리 협회를 명문화하지 않고 있다. 물론 "전국경비업연합회"라는 단체가 있긴 하지만 사단법인으로 허가받지 못한 연합회의 성격을 띤 것이었다. 그러나 경비업계의 자주적인 노력의 결과 1980년 4월 전국경비업협회가 사단법인으로 허가받아 정식으로 발족함으로써 오늘에 이르고 있다. 警備保障新聞 제80호(1980.4.10) 참조. 참고로 1993년 10월 현재 가맹회원은 약 3,500개사에 달하고 있다. 木村淸, 全警協の事業活動について, 警備業年鑑 1993, 警備保障新聞社, 22쪽 참조.

fied protection professional) 프로그램과 같은 자격증제도의 도입 등도 고려되어야 하겠다. 공인제도란 자체적으로 표준화된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각 회사의 서비스의 질을 경비협회와 같은 관련기관이 공인하는 제도이다. 공인의 취득은 용역경비업계의 질적개선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인가된 용역경비회사에게는 서비스의 품질을 공인받은 업체라는 사실로 인하며 매출증대를 호소할 수 있는 기재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고객들에게도 공인된 기관인가를 확인함으로써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손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경비협회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으며, 업체간의 자율적 규제와 덤핑방지,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등의 여러 업무분야에서 선도적으로 협회의 역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끝으로 경비업무의 등급화 내지는 차별화로써 업무의 특성에 따라 본문에서 다소 언급된 것처럼 사경비업무를 분류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이러한 분류(또는 등급)에 따라 인허가의 기준이나 교육훈련의 기준, 정부의 규제정도를 차별화 시켜서 일률적인 법의 적용보다는 업체의 현실에 맞는 기준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다양한 면허나 자격증제도의 실시도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변혁의 요구는 한편으로는 사경비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외부적인 힘들에 의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산업이 자체적으로 전문화를 통하여 살아남기 위한 방안으로서도 절실히 요구되는 것으로 경비산업의 전문화와 UR등의 새로운 경쟁체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안도 될 수 있을 것이다.

Ⅷ. 民間警備의 健全育成과 警察의 役割

1. 民間警備와 警察과의 役割分擔

경찰의 인력 및 장비의 부족, 업무량의 과중으로 경찰이 치안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있어서는, 한정된 경찰력을 유효하고 적절하게 활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를 위해서는 경찰의 지금까지의 방범행정을 고쳐서 민간에 위탁가능한 것은 위탁하고 본래 민간이 실시해야 할 것은 민간에게 실시하게 하는 등, 민간의 자주방범활동을 제고하여 강력하게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사경비업을 적절하게 행정지도하고 이를 건전육성해 나가는 일은 민간의 자주방범·방재활동을 적절하게 추진하는 것이며, 특히 사경비업무 자체가 국민 개개인의 안전에

fied protection professional) 프로그램과 같은 자격증제도의 도입 등도 고려되어야 하겠다. 공인제도란 자체적으로 표준화된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각 회사의 서비스의 질을 경비협회와 같은 관련기관이 공인하는 제도이다. 공인의 취득은 용역경비업계의 질적개선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인가된 용역경비회사에게는 서비스의 품질을 공인받은 업체라는 사실로 인하며 매출증대를 호소할 수 있는 기재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고객들에게도 공인된 기관인가를 확인함으로써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손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경비협회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으며, 업체간의 자율적 규제와 덤핑방지,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등의 여러 업무분야에서 선도적으로 협회의 역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끝으로 경비업무의 등급화 내지는 차별화로써 업무의 특성에 따라 본문에서 다소 언급된 것처럼 사경비업무를 분류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이러한 분류(또는 등급)에 따라 인허가의 기준이나 교육훈련의 기준, 정부의 규제정도를 차별화 시켜서 일률적인 법의 적용보다는 업체의 현실에 맞는 기준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다양한 면허나 자격증제도의 실시도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변혁의 요구는 한편으로는 사경비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외부적인 힘들에 의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산업이 자체적으로 전문화를 통하여 살아남기 위한 방안으로서도 절실히 요구되는 것으로 경비산업의 전문화와 UR등의 새로운 경쟁체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안도 될 수 있을 것이다.

Ⅷ. 民間警備의 健全育成과 警察의 役割

1. 民間警備와 警察과의 役割分擔

경찰의 인력 및 장비의 부족, 업무량의 과중으로 경찰이 치안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있어서는, 한정된 경찰력을 유효하고 적절하게 활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를 위해서는 경찰의 지금까지의 방범행정을 고쳐서 민간에 위탁가능한 것은 위탁하고 본래 민간이 실시해야 할 것은 민간에게 실시하게 하는 등, 민간의 자주방범활동을 제고하여 강력하게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사경비업을 적절하게 행정지도하고 이를 건전육성해 나가는 일은 민간의 자주방범·방재활동을 적절하게 추진하는 것이며, 특히 사경비업무 자체가 국민 개개인의 안전에

직결되는 일이므로 경찰의 방범대책상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이 사경비업을 건전육성하는 것은 사회의 전반적인 방범능력을 제고하는 길이며 본 연구도 그러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자는데 있는 것이다.

2. 民間警備 健全育成의 理念

그렇다면 경비업의 건전육성이라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경찰은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운용해야 할 것인가? 운용에 있어서의 유의점으로는 다음 세가지를 들 수 있다[93].

첫째로, 경비업의 공공적 성격을 인식시키는 일이다. 경비업이란 단순히 영리산업이 아니라 특별한 사회적 역할을 가진 공공성이 강한 안전보장산업이다. 시민의 일상생활상의 안전과 평온에 직접 기여하고 있는 점에서 방범상 공공성을 띠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민간방범 시스템의 하나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비업이 가진 공공성을 경비업자에게 자각시킴으로써 상업주의로 빠지기 쉬운 체질에 대해 自戒를 구함과 동시에, 지도감독하는 경찰로서도 경비업의 공공성을 잘 이해하고 자주방범능력을 지탱하는 안전산업으로서 민간경비가 무엇이 가능한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해 환기시키고, 경비업협회를 통해 각종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갈 필요가 있다.

둘째로, 방범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즉, 양질의 경비업무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기업으로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 시민생활의 안전과 평온에 직접 기여하는 자로서 어떤 실적을 쌓아 민간경비의 사회적 유용성, 유익성을 증명할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실제로 범죄를 예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범인검거의 실력을 갖추지 못한 업자에 대해서 필요한 행정단속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경비업자의 지식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각종 연수활동, 기능경기대회 등을 경비업협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실시케 함과 동시에 오보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업노력방법 등의 구체적인 지도 등 적극적이고도 강력한 지도가 필요하다.

셋째로, 민간경비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일이다. 민간경비가 공공성을 가지고 있고 사회에 유용한 산업이며 자주방범활동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존재이지만, 역사가 짧고 성숙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회적 신뢰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93) 黒津康司, 警備業とは何か －警備業運用の基本方針と外勤警察官の役割－,保安と外勤, 14巻10號, 1988, 警備業關係論文集 소수, 381면 이하 참조.

직결되는 일이므로 경찰의 방범대책상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이 사경비업을 건전육성하는 것은 사회의 전반적인 방범능력을 제고하는 길이며 본 연구도 그러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자는데 있는 것이다.

2. 民間警備 健全育成의 理念

그렇다면 경비업의 건전육성이라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경찰은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운용해야 할 것인가? 운용에 있어서의 유의점으로는 다음 세가지를 들 수 있다[93].

첫째로, 경비업의 공공적 성격을 인식시키는 일이다. 경비업이란 단순히 영리산업이 아니라 특별한 사회적 역할을 가진 공공성이 강한 안전보장산업이다. 시민의 일상생활상의 안전과 평온에 직접 기여하고 있는 점에서 방범상 공공성을 띠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민간방범 시스템의 하나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비업이 가진 공공성을 경비업자에게 자각시킴으로써 상업주의로 빠지기 쉬운 체질에 대해 自戒를 구함과 동시에, 지도감독하는 경찰로서도 경비업의 공공성을 잘 이해하고 자주방범능력을 지탱하는 안전산업으로서 민간경비가 무엇이 가능한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해 환기시키고, 경비업협회를 통해 각종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갈 필요가 있다.

둘째로, 방범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즉, 양질의 경비업무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기업으로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 시민생활의 안전과 평온에 직접 기여하는 자로서 어떤 실적을 쌓아 민간경비의 사회적 유용성, 유익성을 증명할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실제로 범죄를 예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범인검거의 실력을 갖추지 못한 업자에 대해서 필요한 행정단속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경비업자의 지식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각종 연수활동, 기능경기대회 등을 경비업협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실시케 함과 동시에 오보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업노력방법 등의 구체적인 지도 등 적극적이고도 강력한 지도가 필요하다.

셋째로, 민간경비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일이다. 민간경비가 공공성을 가지고 있고 사회에 유용한 산업이며 자주방범활동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존재이지만, 역사가 짧고 성숙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회적 신뢰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93) 黒津康司, 警備業とは何か －警備業運用の基本方針と外勤警察官の役割－,保安と外勤, 14巻10號, 1988, 警備業關係論文集 소수, 381면 이하 참조.

못한 발전도상의 산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경비업의 건전육성이라는 사명을 가진 경찰로서는, 경비업의 사회적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전육성을 저해하는 각종 마이너스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는 대응이 필요하다. 예컨대 경비원교육을 적절히 실시하지 않고 저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비업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단속을 실시하여 배제시키는 한편, 우량업자와 건전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업자 그리고 검거에 공로가 있는 경비원에 대해서는 표창하거나 보도발표 등을 통해 건전육성을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경비원의 전과조회를 제도화시킴으로써 부적격자를 입구에서부터 차단하는 등의 대응도 필요할 것이다.

행정지도 혹은 단속 일변도가 아니라 행정작용과 사법작용을 복합시킨 유연한 대응이 시민의 수요에 부응한 경비업의 건전육성과 직결되고 결국 방범능력의 제고라는 효과를 낳게 될 것이다.

3. 警察組織의 改編과 地域警察의 觀點

그렇다면 이러한 건전육성의 이념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 것인가?

지금까지의 지도감독은 허가 및 변경사항의 점검, 폐업 및 휴업 등의 신고사항, 명부비치 등 경비업자를 대상으로 한 활동이었으며, 경비차원의 활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민간경비를 경비과가 담당하였기 때문에 방범 레벨의 대응이 소홀해지기 쉬웠으며, 더욱이 인력도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장의 방범체제를 일일이 점검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첫째로, 현행 경찰조직의 업무영역을 재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민간경비의 업무가 사실상 방범업무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고려하여 지금까지 경비국 내지 경비과의 업무로 되어 있던 것을 방범국 내지 방범과로 이관하는 것이다. 민간경비 담당부서를 방범과로 이전하는 것은 경찰과 민간경비와의 비상체제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로, 일선 파출소에 의한 실질적인 지역방범활동의 필요성이다. 민생치안의 첨병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파출소가 관할구역내의 민간경비 실태를 파악하고 조언을 하거나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지역방범체제의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파출소의 일선 경찰관은 경비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첫째로, 평소의 순찰활동 등 근무를 통해 관내의 경비업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

못한 발전도상의 산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경비업의 건전육성이라는 사명을 가진 경찰로서는, 경비업의 사회적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전육성을 저해하는 각종 마이너스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는 대응이 필요하다. 예컨대 경비원교육을 적절히 실시하지 않고 저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비업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단속을 실시하여 배제시키는 한편, 우량업자와 건전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업자 그리고 검거에 공로가 있는 경비원에 대해서는 표창하거나 보도발표 등을 통해 건전육성을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경비원의 전과조회를 제도화시킴으로써 부적격자를 입구에서부터 차단하는 등의 대응도 필요할 것이다.

행정지도 혹은 단속 일변도가 아니라 행정작용과 사법작용을 복합시킨 유연한 대응이 시민의 수요에 부응한 경비업의 건전육성과 직결되고 결국 방범능력의 제고라는 효과를 낳게 될 것이다.

3. 警察組織의 改編과 地域警察의 觀點

그렇다면 이러한 건전육성의 이념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 것인가?

지금까지의 지도감독은 허가 및 변경사항의 점검, 폐업 및 휴업 등의 신고사항, 명부비치 등 경비업자를 대상으로 한 활동이었으며, 경비차원의 활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민간경비를 경비과가 담당하였기 때문에 방범 레벨의 대응이 소홀해지기 쉬웠으며, 더욱이 인력도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장의 방범체제를 일일이 점검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첫째로, 현행 경찰조직의 업무영역을 재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민간경비의 업무가 사실상 방범업무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고려하여 지금까지 경비국 내지 경비과의 업무로 되어 있던 것을 방범국 내지 방범과로 이관하는 것이다. 민간경비 담당부서를 방범과로 이전하는 것은 경찰과 민간경비와의 비상체제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로, 일선 파출소에 의한 실질적인 지역방범활동의 필요성이다. 민생치안의 첨병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파출소가 관할구역내의 민간경비 실태를 파악하고 조언을 하거나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지역방범체제의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파출소의 일선 경찰관은 경비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첫째로, 평소의 순찰활동 등 근무를 통해 관내의 경비업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

악하는 일이다. 관할구역내에 있는 경비업자의 영업소, 기지국, 경비업무대상시설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결과를 경찰서 민간경비 담당부서에 보고하는 것이다. 예컨대 경비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소, 대기소 등의 시설상황, 장비기자재의 상황, 경비업자 및 책임자와 경비원의 태도, 경비원의 현장근무상황 등을 체크하고, 또한 고객에게는 경비업무용 기계장치의 보수점검상황과 이상이 있었을 경우의 대응상황에 대해 묻고 이를 담당부서에 보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민간경비의 건전육성과 정책방향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둘째로, 경비업자에 관한 구체적인 위반정보를 수집하고 부적절한 경비업무의 실시에 관한 정보를 보고하는 일이다. 무허가로 경비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경비원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채 경비업무를 행하고 있는 업자, 결격사유가 있는 경비원을 채용하고 있는 업자 및 경비원의 비행은 경비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성을 크게 해치고 경비업의 건전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신속하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경비업자에 대해 구체적인 방범정보 및 경비업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방범의 현황에 대해 설명하는 홍보활동을 실시하는 일이다. 예컨대 근래 발생하고 있는 강도사건의 발생상황과 범행수법은 경비업자에게는 대단히 필요하고 유익한 정보이며, 그것이 곧 사원교육이나 훈시의 유의점으로 활용될 것이므로 지역방범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것이다.

넷째로, 현장근무중인 경비원을 대상으로 경비업무의 실시가 부적절한 경우에 시의 적절한 지도를 실시하는 일이다. 경비원의 부적절한 근무태도와 언동은 경비업에 대한 사회의 신용을 떨어뜨리고 경비업의 실효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4. 共同住宅의 防犯能力 提高

마지막으로, 본 연구진은 용역경비 뿐만 아니라 일반기업 및 공동주택에서의 자체경비까지 포함한 "민간방범에 관한 기본법"(민간방범기본법)의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의 전체주거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35%에 달하는 등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94], 아파트 단지가 다중출입이 용이하고 특히 야간의 출입통제가 곤란하며 단독주택보다 상대적으로 입주자의 방범의식이 미약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동주택의 자체경비를 방범차원에서 파악할 필요성은 대단히 높다 할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령과 공동주택관리규칙의 개정으로 공동주택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에게 방범교육을

악하는 일이다. 관할구역내에 있는 경비업자의 영업소, 기지국, 경비업무대상시설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결과를 경찰서 민간경비 담당부서에 보고하는 것이다. 예컨대 경비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소, 대기소 등의 시설상황, 장비기자재의 상황, 경비업자 및 책임자와 경비원의 태도, 경비원의 현장근무상황 등을 체크하고, 또한 고객에게는 경비업무용 기계장치의 보수점검상황과 이상이 있었을 경우의 대응상황에 대해 묻고 이를 담당부서에 보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민간경비의 건전육성과 정책방향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둘째로, 경비업자에 관한 구체적인 위반정보를 수집하고 부적절한 경비업무의 실시에 관한 정보를 보고하는 일이다. 무허가로 경비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경비원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채 경비업무를 행하고 있는 업자, 결격사유가 있는 경비원을 채용하고 있는 업자 및 경비원의 비행은 경비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성을 크게 해치고 경비업의 건전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신속하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경비업자에 대해 구체적인 방범정보 및 경비업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방범의 현황에 대해 설명하는 홍보활동을 실시하는 일이다. 예컨대 근래 발생하고 있는 강도사건의 발생상황과 범행수법은 경비업자에게는 대단히 필요하고 유익한 정보이며, 그것이 곧 사원교육이나 훈시의 유의점으로 활용될 것이므로 지역방범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것이다.

넷째로, 현장근무중인 경비원을 대상으로 경비업무의 실시가 부적절한 경우에 시의 적절한 지도를 실시하는 일이다. 경비원의 부적절한 근무태도와 언동은 경비업에 대한 사회의 신용을 떨어뜨리고 경비업의 실효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4. 共同住宅의 防犯能力 提高

마지막으로, 본 연구진은 용역경비 뿐만 아니라 일반기업 및 공동주택에서의 자체경비까지 포함한 "민간방범에 관한 기본법"(민간방범기본법)의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의 전체주거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35%에 달하는 등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94], 아파트 단지가 다중출입이 용이하고 특히 야간의 출입통제가 곤란하며 단독주택보다 상대적으로 입주자의 방범의식이 미약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동주택의 자체경비를 방범차원에서 파악할 필요성은 대단히 높다 할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령과 공동주택관리규칙의 개정으로 공동주택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에게 방범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지만[95], 이는 어디까지나 시장의 위임에 의한 방범교육에 그칠 뿐 실질적인 지도감독의 권한은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 공동주택의 방범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일선 파출소 경찰관이 순찰중에 공동주택의 경비상황을 실질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방법으로는 주택관리사 시험과목에 경비업법 과목을 추가시키는 간접적인 방안과 아파트 관리소장 등 책임자에게 경비원교육을 수강토록 하는 직접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선 파출소의 경찰관은 경찰서의 담당부서에 비해 경비업무의 실시현장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므로, 이들 일선 파출소 경찰관의 주의나 지도활동이 곧 민간경비의 방범능력제고와 지역방범에 크게 공헌하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참고가 되는 것이 일본경찰의 巡廻連絡[96]제도이다. 1년에 2회, 제복을 입은 패트롤경찰관이 세대를 방문하여 거주자인원, 인적 관계, 연령과 성별, 취직여부와 직업, 자동차의 차종과 번호 등을 묻고, 새로 이사온 사람과 거동수상자, 최근 일어난 범죄 등이 없는지 묻는다. 또한 소기업도 방문하여 종업원명부와 경력, 영업시간, 숙직여부 등에 대해 치밀하게 조사한다.

순회연락제도는 일본경찰 독자적인 고오방(交番)제도[97]위에 성립되는 것인데, 고오방과 주재소를 중심으로 항상 지역과 밀착된 다양한 활동을 행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평온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경찰 활동은 양호한 치안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불가결한 존재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높은 관심과 평가를 받고 있기도

94) 공동주택의 점유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건설부 자료에 의하면, 1993년 7월 현재 전국의 공동주택의 점유율은 36%로, 1970년의 0.8%와 1970년의 12%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아파트가 전체의 34%, 연립주택이 9%를 차지하고 있어서 공동주택의 점유율은 무려 43%에 이르고 있다. 警察廳, 공동주택 방범요령, 4쪽 참조.

95) 공동주택관리령 제4조의 2[안전교육] (대통령령 제14352호 1994.8.3)
"시장 등은 공동주택단지안의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방범을 위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 제1항 제2호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범교육에 관한 사항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규칙 제3조의 2[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 (건설부령 제567호 1994. 11. 2)
1. 영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은 연 2회 이내로 하고 매회별 교육시간은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실시 14일전에 교육일시·교육장소 및 교육방법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6) デイビッド·H. ベイリー 著, 金重凱之/柳澤昊 譯, 新ニッポンの警察. サイマル出版會, 1991 (Forces of Order: Policing Modern Japan, California University, 1991), 120쪽 참조.

하다. 사회정세와 지역사회가 크게 변모하고 있는 오늘날, 이와 같이 지역에 뿌리를 내린 지역경찰체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찰의 쇄신을 도모하고 지역과 사회정서에 맞는 地域警察體制를 확립함과 동시에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다.

또한 고오방과 주재소가 보다 지역과 밀착한 활동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巡廻連絡 등을 통해 관내의 실태를 완전히 파악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중요범죄·중요절도범[98]에 중점을 둔 검거활동과 주민과의 연대, 지역에 용해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종래 이상으로 지역과 밀착된 활동을 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나아가, 복잡화·다양화하고 있는 사건·사고에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신사령실의 고도화, 효과적인 광역긴급배치체제의 확립은 물론 순찰용(警邏用) 무선전화기, 경찰용 선박, 경찰용 항공기 등 각종 경찰기동력을 최대한 발휘한 효과적인 운용 및 육해공의 경찰기동력이 일체가 된 종합적인 운영에 노력함과 동시에, 신속하고 정확한 초동활동과 사고의 발생실태를 기초로 한 방지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99].

일본 경찰청에서는 1993년 6월, "국민생활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시책을 연구하는 회"를 조직하여 국민의 불안의식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미 발생한 범죄의 단속활동에서 일보 전진한 범죄발생의 예방, 사고·재해 등 주변의 위험방지활동을 강화하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하였고, 1994년에는 保安部를 生活安全局으로 개편하여 지역방범을 비롯한 예방행정을 중심으로 시책을 전개해 나가기로 결정하고 있다[100].

---

97) 고오방에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도회지의 고오방(交番)이고 또 하나는 농촌지역의 駐在所이다. 고오방은 우리나라의 파출소와 비슷한 개념으로, 전국에 약 6천 7백개의 고오방이 있다. 예를 들면 東京에는 약 1000개의 고오방이 있으며, 평균 8천5백명의 인구와 약 570평방 미터의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재소란 주거시설이 부설된 고오방으로 한사람의 경찰관이 가족과 동거하므로 결국 24시간 근무하는 셈이다. 전국에 약 8천 6백개의 주재소가 있다. 최근 도시근교의 주택지역을 담당하는 고오방의 수가 증가하는 반면에 농촌부의 주재소의 수가 감소하는 등 고오방 제도에 변화가 일고 있다.

98) 도시방범센터의 "범죄의 피해와 방범의식 등에 관한 조사연구"에서도 범죄에서 가장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은 빈집털이의 66%로, 침입절도의 54.4%가 뒤를 잇고 있다. 警備業年鑑 1993, 79면 참조.

99) 平成5年中における防犯保安*地域警察の重點施策, 警備業年鑑 1993, 9면 참조.

100) 警備業年鑑 1993, 81면 참조.

Ⅸ. 結　　論

1. 提　　言

본 연구의 주요 연구대상에 관련된 제언과 이에 따라 예상되는 정책적 효과는 아래와 같다.

가. 二元的 運用體制의 改善方案

국내외적 환경변화와 나날이 다원화되는 경비수요 등에 따라 현행 청원경찰법과 용역경비업법의 이원화체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는 바, 먼저 세가지 개선가능방안을 제시하고, 다음으로 단기·.절충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1안 : 청원경찰법으로 단일화하는 방안

제2안 : 용역경비업법으로 단일화하는 방안

제3안 : 두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단일법안을 제정하는 방안

그러나, 1안과 2안은 본문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각각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단일법안(가칭 '民間防犯基本法')을 제정하는 제3안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새로운 단일법안은 향후 21세기의 사경비의 발전 방향을 예측하는 시각에서 새로운 유형의 방범수요에 걸맞는 세계적이고 전문적이며 지역특성에 적합한 경비공급을 창출하고 기존의 청원경찰법, 용역경비업법, 보안이 시급한 기계경비분야, 그리고 일반기업 및 공동주택에서의 자체경비분야, 사설탐정분야, 경호관련분야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법안이 되어야 한다. 그 방향은 세계화(Globalization), 민영화(Privitization), 지역사회화(Communitization)의 커다란 틀 속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제3안의 실현에는 많은 시간이 요구될 것으로, 현실을 감안하고 제3안에 도달하기까지 과도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기적·절충적 방안을 운용하면 될 것이다.

제4안 : 경비기능(청경업무)와 방범기능(용역업무)를 분리운용하는 방안

이 방안은 청경법과 용역경비업법을 존속시키면서 각 법안이 안고 있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절충하자는 것이다. 즉, 용역경비의 업무가 사실상 방범업무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고려하여 용역경비와 청원경찰의 업무를 방범기능(용역경비관장)과 경비기능(청경업무관장)으로 구분하여 각 기능에 상응하는 업무분담을 하게 하는 것이

다. 경비국(과) 업무 중에 방범업무에 가까운 용역경비 관련업무을 방범국(과)로 이관하고 청경업무는 경비국(과)에서 계속 관장하되, 주요보호시설에 대한 구분을 새로운 기준에 의해 재검토하여 청원경찰 대상업체를 최소화하고 여타업체는 가능한 용역경비 대상업체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 경찰조직의 경비과와 방범과간의 업무조정이 불가피한데, 경비과의 사경비관련 업무중 용역경비 관련분야를 방범과에 이관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 안의 예상되는 장점으로는 다음 세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상당수의 청원경찰 대상업체가 용역경비 대상업체로 전환됨으로써 현재 민감한 현안문제인 '용역청경' 문제가 자연 해결된다.

둘째, 용역경비업무가 방범과 소관으로 이관됨으로써 방범업무의 보다 효율적인 수행에 기여한다.

셋째, 정예화된 소수의 청원경찰에게만 총기류를 지급함으로써 총기소지로 인해 야기되는 제반문제의 예방과 이의 사용을 최소화하려는 세계적 추세에 부합한다.

나. 警備員의 敎育과 訓練

오늘날 경비업무는 업무자체가 다양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적절한 교육과 지속적인 훈련을 받은 유능한 인력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전문성의 추구에는 교육에 대한 한층 강화된 기준들이 요청된다. 교육훈련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경비업계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1) 교육내용과 시간의 현실화, (2) 업무별교육의 강화, (3) 현장책임자 중심의 교육강화 그리고 (4) 사경비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율적 시행 등 네가지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 및 예상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기본교육시간의 70여시간을 24시간 정도로, 교육과목도 현행의 17-8개 과목을 8개 과목 정도로 축소 조정함으로써 교육의 현실화,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

둘째, 기본교육을 축소하는 대신에 업무별 전문교육의 강화가 요구되는데 이는 경비와 관련된 다양한 전문분야의 출현과 연관되는 바가 크다. 이에 따라 대상업체의 성격과 신종 경비수요(컴퓨터 관련기밀, 신용 추적관리, 사설탐정, 경호경비 등)에 해당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간부급 인원에 대한 집중교육을 통한 경비의 질과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것으로,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 제도 및 '기계경비업무관리자' 제도 등의 채택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현장책임자 교육제도는 용역업체와 경찰관의 협조관계의 구축에 기반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교육기관들에서 사경비업에 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장기적으로는 전문대학이나 대학에 경비관련학과의 설립이나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나, 단기적으로는 대학내에서의 사경비 특별훈련과정의 설치나 특수대학원에서의 6개월 또는 1년 과정의 사경비 전문가 양성코스, 또는 사경비 최고경영자/관리자 과정 등의 프로그램이 현재의 교육여건 하에서도 실현가능한 대안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활성화는 상기에서 언급된 전문교육의 강화나 간부급 인원에 대한 집중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다. 機械警備業에 대한 法規定의 補完

우리의 용역경비업법에는 기계경비업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가이드라인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입법의 미비는 경비업의 기계경비업화 추세 및 목전에 다가온 시장개방 시기를 고려해 볼 때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美國과 日本의 기계경비분야의 입법 내용을 검토해 볼 때 그 내용은 기계경비업의 정의 및 분류, 업체의 면허, 경비요원의 자격, 일반 규제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美國의 경우, 기계경비업법의 존재여부와 그 내용에 있어서 각 주마다 매우 다양하지만, 기능적인 측면에서 요약 분류해 보면, 경보기능, 경보기능+통보기능, 경보기능+통보기능+대처기능의 세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즉 생산, 판매, 설치, 보수 그리고 대처서비스 등의 기능 보유여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美國과 日本 두 국가 모두 면허 허가와 요원 자격기준, 교육 훈련수준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 점차 확산추세에 있다.

특히 요원의 자질향상 및 업종의 다양화 추세에 맞추어, 일본의 '기계경비업무관리자' 제도와 미국의 '공인경비사' 제도가 확산 제정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는 즉응체제와 오보문제를 해결하기위하여 관련 내용을 입법화 시키는 추세에 있다. 현 우리의 단계에서는 美.日의 변화추세를 참작하여 보다 발전된 형태의 법안을 제정해야 하며, 본 연구에서 각 국의 입법을 참조하여 제시한 기계경비업법 조문의 내용에서 처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기계경비업의 정의
② 영업 및 폐업신고
③ 즉응체제의 정비
④ 기계경비업무 관리자 제도
⑤ 경비업자의 의무

⑥ 교육훈련의 기준

⑦ 경보기기의 형식승인 제도

⑧ 기 타

라. 誤報問題와 卽應體制의 構築

오보문제는 미국과 일본의 기계경비분야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난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앞으로 경찰과 기계경비업자와의 관계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미 일선파출소의 경찰관은 오보에 의한 경찰력의 부담문제를 호소하는 등, 오보는 외국만의 문제점이 아니라 오늘 그리고 내일의 우리의 현안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은 오래 전부터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오보해소에 착수하여 왔으나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의 경험으로 부터 다음 세 가지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로, 오보에 대한 경찰력의 부담을 줄이고 기계경비업체를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같이 즉응체제의 구축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일본 경찰청이 즉시통보와 확인통보라는 통보기준을 마련하여 기계경비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동경 경시청이 오보원인을 규명하여 그 억지책을 제시하는 것도 경비업법에 규정된 즉응체제의 정비라는 법적 근거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둘째로 오보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보원인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외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오보원인은 대체로 사용자의 오조작, 경보기기의 결함, 경보기기를 설치하는 업체직원의 오류로 나타났다. 이러한 외국의 조사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의 112 신고체제까지 감안하여 우리의 오보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에 착수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 오보감소책은 단지 벌칙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감독청인 경찰의 주도하에 기계경비업자와 고객이 삼위일체가 되어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일방적으로 기계경비업자에게 오보해소를 요구하거나 벌칙을 가하는 것이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은 외국의 사례에서 명백히 밝혀졌기 때문이다.

마. 警備業의 認許可 및 行政指導

사경비업의 업무가 시민권의 침해, 권한의 남용, 비윤리적 기업행위, 부적절한 지휘감독 등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는 만큼 교육과 훈련의 강화, 업체의 면허증이나 요원의 자격증 제도의 실시, 인허가 기준의 강화 등을 통하여 公的 規制가 강화

되어 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와 관련 美.日의 경우를 참작하여 볼 때,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인허가(licencing)와 면허증 발급 요건의 강화(공탁금, 책임보험, 신청자격 등), 그리고 교육 훈련의 실질적인 강화와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협회 활성 화, 경비공단 조성, 전문 교육기관 설립 혹은 위탁교육제도 활용, 허가갱신제도 등)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公的인 規制의 강화와 함께 사경비업체 및 경비협회에 의한 자율적 규제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경비원 자질향상 및 경비업무의 실질적인 질 향상을 위해 업체에 대한 공인(accreditation)제도나 공인 경비사제도(예를 들면 "기계경비관리자제도" 등)와 같은 자격증제도와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넷째, 경비업무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 혹은 등급화가 요구되는데, 이를 통하여 인허가의 기준, 교육훈련의 기준, 정부의 기준을 차별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일률적인 법적용보다는 현실에 적합한 개별적 법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바. 私警備의 健全育成과 警察의 役割

경비업을 적절하게 행정지도하고 이를 건전육성해 나가는 일은 민간자주방범·방재활동을 적절하게 추진하는 것이며, 특히 경비업의 경우에는 경비업무의 실시가 개개인의 안전에 직접 기여하고 있는 것이므로 더욱 경찰의 방범대책상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경비업의 건전육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경찰측이 고려하여야할 3가지 관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경비업이 공공성을 가진 안전보장산업이라는 점을 경비업자에게 인식시키는 일이다. 경찰도 경비업의 공공성을 잘 이해하고 자주방범능력을 지탱하는 안전산업으로서 민간경비가 무엇이 가능한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해 환기시키고, 경비협회를 통해 각종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갈 필요가 있다.

둘째, 경비업이 범죄를 예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범인검거의 실력을 갖추는 방범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일이다. 실효성을 갖추지 못한 업자에 대해서 행정단속을 실시하는 동시에, 경비업자의 지식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각종 연수활동, 기능경기대회 등을 경비협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실시케 하고, 오보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업노력방법 등의 구체적인 지도 등 적극적이고도 강력한 지도가 필요하다.

셋째, 경비업의 사회적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전육성을 저해하는 각종 마이너스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는 대응이 필요하다. 경비원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열악한 경비업무를 실시하여 경비업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단속을 실시하여 배제시키는 한편, 우량업자와 건전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업자 그리고 검거에 공로가 있는 경비원에 대해서는 표창하거나 보도발표 등을 통해 건전육성을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경비원의 전과조회를 제도화시킴으로써 부적격자를 입구에서부터 차단하는 등의 대응도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이러한 건전육성 방향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실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경찰조직의 업무영역을 재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민간경비의 업무가 사실상 방범업무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고려하여 지금까지 경비과의 업무로 되어 있던 것을 방범과로 이관하는 것이다. 민간경비 담당부서를 방범과로 이전하는 것은 경찰과 민간경비와의 비상체제구축이라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둘째, 일선 파출소에 의한 실질적인 지역방범활동의 필요성이다. 민생치안의 첨병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파출소가 관할구역내의 민간경비 실태를 파악하고 조언을 하거나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지역방범체제의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하여 일선파출소의 경찰관(외근 경찰)의 활동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행해지게 된다.

첫째, 평소의 순찰활동등 근무를 통해 관내의 경비업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다. 관할구역내에 있는 경비업자의 영업소, 기지국, 경비업무대상시설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결과를 경찰서 민간경비 담당부서에 보고하는 것이다. 예컨대 경비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소, 대기소 등의 시설상황, 장비기자재의 상황, 경비업자 및 책임자와 경비원의 경비업에 대한 태도, 경비원의 현장근무상황 등을 체크하고, 또한 고객에게는 경비업무용 기계장치의 보수점검상황과 이상이 있었을 경우의 대응상황 등에 대해 묻고 이를 담당부서에 보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민간경비의 건전육성과 정책방향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둘째, 경비업자에 관한 구체적인 위반정보를 수집하고 부적절한 경비업무의 실시에 관한 정보를 보고하는 일이다. 무허가로 경비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경비원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채 경비업무를 행하고 있는 업자, 결격사유가 있는 경비원을 채용하고 있는 업자 및 경비원의 비행은 경비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성을 크게 해치고 경비업의 건전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비업자에 대해 구체적인 방범정보 및 경비업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

하고 지역방범의 현황에 대해 설명하는 홍보활동을 실시하는 일이다. 예컨대 근래 발생하고 있는 강도사건의 발생상황과 범행수법은 경비업자에게는 대단히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며, 그것이 곧 사원교육이나 훈시의 유의점으로 활용될 것이므로 지역방범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것이다.

넷째, 현장근무중인 경비원을 대상으로 경비서비스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시의적절한 지도를 실시하는 일이다. 경비원의 부적절한 근무태도와 언동은 경비업에 대한 사회의 신용을 떨어뜨리고 경비업의 실효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공동주택이 전체주거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의 자체경비를 방범차원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공동주택 관리령과 공동주택관리규칙의 개정으로 공동주택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에게 방범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지만, 실질적인 지도감독의 권한은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진정 공동주택의 방범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일선 파출소 경찰관이 순찰중에 공동주택의 경비상황을 실질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주택관리사 시험과목에 경비업법 과목을 추가시키는 간접적인 방안이나, 아파트 관리소장 등 책임자에게 경비원교육을 수강토록 하는 직접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맺는 말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여 변화하는 미래를 예측하고 그에 걸맞는 정책을 수립하여 체제를 재정립시키는 작업이 사회 각부문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범사회적 추세에서 소위 범죄문제해결의 소임을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경찰, 법원, 교정, 그리고 지역사회를 망라하는 형사사법체계(Criminal Justice System)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 한국의 사경비업에 관련된 현안이 어떤 성격을 안고 있는지에 불문하고, 그 해결책은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열악한 여건속에서 이해가 상충되는 국내부문간의 전근대적이고 소비적인 자리매김 경쟁은 '세계화'라는 적극적 의미의 틀속에서 조속히 마감될 수록 유익할 것이다.

60년대 이래 미국의 형사사법계는 어느 국가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범죄문제해결를 위하여 끊임없는 연구와 실천을 지속하여 왔다. 우리의 경직된 사고의 틀로서 바라보면 혼란스럽게만 보일 수도 있는 미국의 형사사법체계를 역사적 안목에서 고찰해 보면, 수많은 실패와 성공의 정책실현 과정속에서 일관되게 제시해주는 두가지

하고 지역방범의 현황에 대해 설명하는 홍보활동을 실시하는 일이다. 예컨대 근래 발생하고 있는 강도사건의 발생상황과 범행수법은 경비업자에게는 대단히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며, 그것이 곧 사원교육이나 훈시의 유의점으로 활용될 것이므로 지역방범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것이다.

넷째, 현장근무중인 경비원을 대상으로 경비서비스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시의적절한 지도를 실시하는 일이다. 경비원의 부적절한 근무태도와 언동은 경비업에 대한 사회의 신용을 떨어뜨리고 경비업의 실효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공동주택이 전체주거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의 자체경비를 방범차원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공동주택 관리령과 공동주택관리규칙의 개정으로 공동주택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에게 방범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지만, 실질적인 지도감독의 권한은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진정 공동주택의 방범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일선 파출소 경찰관이 순찰중에 공동주택의 경비상황을 실질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주택관리사 시험과목에 경비업법 과목을 추가시키는 간접적인 방안이나, 아파트 관리소장 등 책임자에게 경비원교육을 수강토록 하는 직접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맺는 말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여 변화하는 미래를 예측하고 그에 걸맞는 정책을 수립하여 체제를 재정립시키는 작업이 사회 각부문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범사회적 추세에서 소위 범죄문제해결의 소임을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경찰, 법원, 교정, 그리고 지역사회를 망라하는 형사사법체계(Criminal Justice System)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 한국의 사경비업에 관련된 현안이 어떤 성격을 안고 있는지에 불문하고, 그 해결책은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열악한 여건속에서 이해가 상충되는 국내부문간의 전근대적이고 소비적인 자리매김 경쟁은 '세계화'라는 적극적 의미의 틀속에서 조속히 마감될 수록 유익할 것이다.

60년대 이래 미국의 형사사법계는 어느 국가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범죄문제해결를 위하여 끊임없는 연구와 실천을 지속하여 왔다. 우리의 경직된 사고의 틀로서 바라보면 혼란스럽게만 보일 수도 있는 미국의 형사사법체계를 역사적 안목에서 고찰해 보면, 수많은 실패와 성공의 정책실현 과정속에서 일관되게 제시해주는 두가지

방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司法行爲의 場所가 점차적으로 公式機關으로 부터 地域社會로 장소적 이전을 한다는 현상이요, 또 다른 하나는 司法權限의 所有가 점진적으로 '官'에서 '民'으로 이양되어 간다는 현상이다. '地域社會'라는 개념과 '民營化'라는 개념이 資本主義 메카니즘과 결합하여 營利性 民間司法機關을 탄생시켰으며, 오늘날의 民은 官에 대한 보조적 혹은 보완적 수준을 넘어서 독립적인 사법체계의 일환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정착시키기에 이른 것이다.

사법체계내에서 '地域社會'의 역할이 불가피하며 그 사회가 資本主義體制를 방치할 수 없다면, 그리고 편리하고 전문화된 방범서비스가 시대적 요구라면, 어느 사회에서든 營利性 民間司法機關이 자생되고 확산된다는 것은 극히 자명한 일이다. 더구나 세계화의 기치 속에서 UR시대를 맞이하여 경비산업시장의 완전개방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私警備 育成政策은 소극적 방어개념에서 적극적인 공격개념으로, 억제적 개념에서 지원적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멀지않아 私警備業이 海外進出戰略産業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비전(vision)아래 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범죄와 범죄대책간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철학이 변화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民間部門과 警察간의 역할이 재조정되어야 한다. 형벌체계의 역사는, 형벌수요와 공급간의 균형이 심각하게 불일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항상 民間部門의 주도하에 형벌체계의 변화가 이루어져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가의 힘은 결코 약화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총체적으로 볼 때 더욱 강화되었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사경비업의 육성이 당위론적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사법당국은 물론 업계 자신 역시 사경비업이 단순한 경찰력의 보조적 존재로서가 아닌 장기적으로 볼 때 형사사법체계내의 고유한 영역을 가진 존재로서 민간방범기능을 담당함은 물론,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첨단성장산업으로서 국익을 도모하는 새로운 영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육성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1. 국내 문헌

姜大立, "우리나라 私警備 實態에 관한 硏究", 연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경찰청, 『警務. 防犯. 警備. 通信』, 실무교양자료집 제 2권, 1993.

동아일보, "선진국의 구조-구난체계," 1994. 10. 27.

서재근, "한국 경비업무의 현대화방안에 대한 고찰", 『연세행정논총』, 제 10집, 연세대 행정대학원, 1983.

서재근, 『민간경비의 육성과 방범능력 증대방안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1991.

손주찬, 『전정증보판 상법 上』, 박영사, 1985.

이광웅, 김종언 공저, 『경비실무』, 화학사, 1990.

李相安, 『현대경찰행정학』, 형설출판사, 1990.

이윤근, "사경비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대한 고찰", 『공안행정논총』, 제 3호, 동국대학교, 1988.

———, "한국사경비 발전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89.

———, "용역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통합 및 단일법안화에 관한연구", 『행정논총』, 제20집, 동국대 행정대학원, 1992.

한국경비협회, 『경비원 신임교육교본』, 한국경비협회, 1994.

2. 일본 문헌

"機械警備業者からの警察機關への連絡等に關する運用要領", "機械警備業者からの警察機關に對する迅速かつ適切な連絡*通報の實施等について(要請)", 防犯防災新聞 昭和60년 7월 15일자.

デイビッド·H. ベイリー 著, 金重凱之/柳澤昊 譯, 新ニッポンの警察. サイマル出版會, 1991.

ホームセキュリティの進展, 警備業年鑑 1993.

加藤善次郎, 諸外國のセキュリティ事情, 警備業年鑑 1993.

警備保障新聞 제5호, 1978.3.5.

———— 제80호, (1980.4.10
『警備業關係論文集』, 全國警備業協會, 1989.
『警備業年鑑』, 警備保障新聞社, 1993.
警察廳保安部 防犯企劃課 감수, 『警備業法の解說』, 全國警備業協會, 1986.
————————————, 警備業法の解說[개정초판], 全國警備業協會, 1987.
谷安司, "警備業法諸問題," 『警察學論集』, 26卷 1號, 1973.
吉田孝雄, "航空保安檢査業務について," 『警備業年鑑』, 1993.
木村淸, "全警協の事業活動について," 『警備業年鑑』, 警備保障新聞社, 1993.
防犯訪災新聞 165호, 1988.3.1.
————제140호, 1986.9.15.
————제175호, 1988.8. 1.
施設警備の研究と實務 ———ビルメンテナンスのために———, 全國ビルメンテナンス協會, 1985.
深澤賢治, "警備業界の教育に關する諸問題," 『警備年鑑』, 1993.
———, 警備保障のすべて——會社と家庭のセキュリティ——, 東洋經濟新聞社, 1981.
全國ビルメンテナンス協會, 『施設警備の研究と實務』,1985.
衆議院 地方行政委員會 調査室 資料, 警備保障新聞 156號, 1982.5.21.
平成4年中における警備業の現況(12月末 現在), 1994.
平成5年中における防犯保安·地域警察の重點施策, 『警備業年鑑』, 1993.
平成6年"保安警察當面の重點諸問題", 『警備業年鑑』, 1993.
黑津康司, 警備業とは何か ——警備業運用の基本方針と外勤警察官の役割——, 保安と外勤, 『警備業關係論文集』, 14卷 10號, 1988.
——— , 昭和六二年中における警備業の概況と都道府縣警備業協會等の課題 ———より良き明日のために———, セキュリティ·マニュアル 昭和六二年度版, 1988.

3. 미국 자료

Bureau of Justice Statics. 1986. Crime Prevention Measures. Washingti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Bayley, David H., 1991. Forces of Order: Policing Modern Japan, Berkley, CA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Cunningham, William C, John J. Strauchs and Clifford W. Van Meter. 1990. The Hallcrest Report II: Private Security Trends 1970-2000. McLean, VA: Hallcrest Systems, Inc.

Cunningham, William C and Todd H. Taylor. 1985. The Hallcrest Report I : Private Security and Police in America. Boston: Butterworth-Heinemann.

Keneth Kirschenbaum, "False Alarms", Security Dealers, February, 1990.

National Advisory Committee on Criminal Justice Standards and Goals. 1976. Private Security: Report of the Task Force on Private Securit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National Burglar and Fire Alarm Association(NBFAA). 1989. Interview with Charles Lavin, Jr., Executive Director.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1985. Crime and Protection in America: A Study of Private Security and Law Enforcement Resources and Relationships. Washingti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1991. "Private Security: Patterns and Trends" in Research in Brief(August). Washingti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Nemeth, Charles P. 1989. Private Security and the Law. Cincinnati, OH: Anderson Publishing Co.

Private Security Advisory Counsil. 1973. Private Police in the United States :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Washingtin DC : U.S. Department of Justice.

Rand Corporation, 1971. Private Police in the United States.

Timm, Howard W. and Kenneth E. Christian. 1991. Introduction to Private Security. Belmont, CA: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U.S. Advisory Commission on Intergovernmental Relation, State and Local Relation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1981.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1982. National Industry-Occupation Matrix 1980-1990.

U.S. Department of Justice. 1982. Sourcebook of Criminal Justice Statistics, 1981.